



지방자치 특집
소속기관 협동연구

2026. 7. 1.

국회에산정책처 | 사업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안태훈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 안태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김성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2026년 6월 공통연구주제인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내용을 각 소속기관별로 기획·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6. 1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I. 서 론 / 1

-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평가 범위 및 방법 2

II.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 / 4

- 1. 지방소멸대응기금 4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4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및 운용체계 6
 - 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
-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4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요 14
 - 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15

III. 주요 쟁점 평가 / 21

- 1. 지방소멸대응정책 분석 21
 - 가. 현황 21
 - 나. 분석의견 23
 - (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재정립 필요 23
 - (2) 인구감소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28



CONTENTS

(3)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광역권 협력 방안 마련 필요	37
(4)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42
(5) 인구감소 사유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45
(6) 지방소멸 개념의 정의 및 법·정책적 기준 정비 필요	50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의 타당성 분석	62
가. 현황	62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62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64
나. 분석의견	66
(1)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66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70
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 분석	73
가. 현황	73
나. 분석의견	74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 및 자금 운용 구조 개선 필요	74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미출자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78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81
가. 현황	81
나. 분석의견	83
(1)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 불명확	83
(2)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축 필요	89
(3) 광역자치단체의 성과중심 관리체계 보완 필요	92
(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표 설정 방식 개선 필요	94



CONTENTS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00

부록 / 103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103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2025년)	108
〈부록 3〉 인구이동 현황	118
〈부록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134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성과 지표 및 목표	138

요 약

1.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노동력 기반과 경제 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산업 노동공급 축소, 소비 기반 위축, 지역 재정의 악순환 등 복합적 영향을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유지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지원해 왔으나, 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평가와 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본 평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평가 범위 및 방법

- 본 평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이후 최근 회계연도까지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금이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 활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
 - 이를 위해 기금 사업 선정 절차와 기준, 사업 집행 과정 및 사업 추진 결과가 실제로 지역의 인구감소 개선이나 정주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

II.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2022년~2023년) 추진에 따라, 지역 격차 및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도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1항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및 운용체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이지만, 동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기금의 배분 대상 및 배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연계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요

- 2025년에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을 포함한 총 536개
 - 광역지원계정에 따른 기금 투자사업은 총 98개이며, 이에는 기초지원계정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을 포함
 -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395개이며, 광역지원계정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포함하여 집계
 -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43개이며, 광역지원계정 연계사업을 포함
- 2025년에 추진된 기금 투자사업비의 총합은 1조 8,652억원임
 - 해당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 국비와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초기 기초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거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 지원 및 대규모 복합 개발로 고도화되는 특징을 보임

Ⅲ. 주요 쟁점 평가

1. 지방소멸대응정책 분석

(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재정립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 국가재원 중심의 운영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기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인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음
-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성격과 설치 방식, 관리체계 및 책임구조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구조를 준용하여 설치·운용됨
 - 양 기금은 정책목적, 재원구조 및 지원대상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제도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인구감소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인구 순이동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이동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 따라서 인구감소대응정책은 각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차별화된 정책 설계를 지향할 필요
 -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순이동 규모는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3)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광역권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인구이동이 단순히 수도권 집중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 단위 내 이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인구감소지역 중 36개 지역에서 해당 시·도 내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보다 크게 나타남
- 2025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에서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개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구감소대응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유출 억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도 고려될 필요

(4)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 인구감소지역은 서로 인접한 경우가 많아 인구이동이 다른 인구감소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확인됨
 - 태안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전국으로는 23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순유출 인구는 65명
 - 제천시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369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타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 인구는 449명
-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개별 지역 지원을 넘어 인접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

(5) 인구감소 사유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단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 인구 규모가 매우 작은 지역이나 특정 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의 경우, 순이동률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군집분석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므로, 옹진군, 울릉군 등 소규모 인구 지역과 일부 도심 특수지역은 별도의 특이 유형으로 분류하고 군집분석에서는 제외

- 군집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므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은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

(6) 지방소멸 개념의 정의 및 법·정책적 기준 정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시·도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재원이 정부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정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도’만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고령인구 등 여러 정책적 고려 요소가 반영된 행정적 분류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금이 지향하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축소·전이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내포
 - 다수의 관련부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동일하게 인식
- 따라서 지방소멸의 개념을 기금 설치 단위인 시·도 수준에서 재정의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인구 중심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기반의 국토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의 타당성 분석

(1)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지역별로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한계를 지님
 - 지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정주여건 개선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선정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선 비용효과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약 11배 수준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
 - 민간 운용사를 통한 간접 운용 방식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원을 활용한 정책펀드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 분석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 및 자금 운용 구조 개선 필요

- 2025년 12월 기준 0.95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발생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분할 출연 또는 출연 시기의 연말 조정 등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미출자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가 수시납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자금액은 636억원에 머물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자금 중 상당액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야 할 자금 2,000억원 중 1,788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자체 운용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실제 투자수요와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출연 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 일반적으로 모펀드 출자에 수시납 방식이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투자집행 일정과 연계한 단계적·수시 출연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1)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 불명확

-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2026.1.20.)의 요구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지방소멸대응정책에 따른 인구이동 실태와 정책 성과를 분석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이러한 평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 4년(2018~2021년)과 지정 이후 기간(2022~2025년)을 비교한 데 기초하고 있음
- 2022년 이후 관찰되는 인구증가율의 개선은 정책 효과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 기간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2018~2021년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중첩된 시기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확대되며 인구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시기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 비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후 4년간(2022~2025년)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준실험적 계량분석(이원고정효과 이중차분법)을 수행
-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의 2022~2025년 평균 인구증가율은 대조군 대비 +0.604%p 높게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이후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정책 효과가 인구 지표로 나타나기에 시차가 짧을 수 있음
 - 단순한 시기 간 비교에 근거한 정책 효과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정교한 접근에 기반한 검증이 요구됨

(2)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축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가 불명확하고 사업별 성과지표가 이질적으로 설정되어 기금 차원의 성과를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님
- 이에 기금 차원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구·생활여건·지역경제 등 핵심 영역별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가 기금 전체 성과로 체계적으로 연계·환류되는 성과관리체계로 보완할 필요

(3) 광역자치단체의 성과중심 관리체계 보완 필요

-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구축되어 있으나, 전략목표와 연계된 체계적 구조보다는 사업별 산출지표 나열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참여자 수·시설 활용률 등 활동·산출 중심 지표가 주를 이루고, 목표치·산정방식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결과 중심의 실질적 성과관리로 보기에는 한계
- 따라서 향후에는 프로그램 논리모형 기반의 목표-성과 연계 강화와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

(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표 설정 방식 개선 필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서 사업목표를 정량·정성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공정률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사업목표를 설정
 - 부산 동구는 시설 건설 중심 지표를 제시한 반면, 전북 남원시는 인구 유입 등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별 작성 수준 차이가 확인됨
- 이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투자계획 작성 지침을 개선하여 결과지향적 사업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 국가재원 중심의 운영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기금과는 다른 특성을 보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지역 간 이질성 고려 미흡, 정주인구 증가 효과에 대한 계량적 검증 부족 등으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광역권 단위의 협력체계 강화, 그리고 지방소멸 개념 및 정책 목표의 재정립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업 계획 및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미집행 자금의 적기 집행과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선정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0.9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되지 못한 자금이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원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할 출연 및 출연 시기 조정을 통해 자금 수요와 재원 배분 간의 정합성을 높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노동력 기반과 경제 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산업의 노동공급 축소, 소비 기반 위축 및 지방재정 악화 등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지원해 왔다.¹⁾ 그러나 기금 사업이 실제로 인구감소 흐름을 완화하거나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 평가와 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업 유형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 간 역량 차이, 인구감소의 구조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사업이 갖는 실효성과 기금 제도 자체의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예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지역인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재지정은 향후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지역의 성과 검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추세 변화, 지역별 인구구조 특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 성과지표 설정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평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제고하고,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5, p.53.)

본 평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2022년 이후 2025년까지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금이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 활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금 사업 선정 절차와 기준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기금 집행 과정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나아가 사업 추진 결과가 실제로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이나 정주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

평가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기금 운용의 전체 흐름을 포괄하도록 설정하였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가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 특성 등 정책적 지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평가의 대상은 기금 지원을 받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였으며, 정주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활력 제고 등 기금의 모든 사업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방법은 문헌검토, 정량분석, 정성분석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법령, 지침, 운영 매뉴얼, 기금배분 기준 등 관련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제도적 구조와 운영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집행 과정과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 성과지표 실적, 재정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금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정성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역량의 차이,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의 범위 및 항목]

주요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제도 및 정책 체계	제도적 적정성	재정의 지방 이전 중심 구조, 기금의 독립성·신축성, 용자·투자 기능 등 기금 기능
	정책 설계 적절성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 반영 여부, 획일적 정책 설계 문제, 맞춤형 정책 필요성
	정책 범위 및 개념	인구감소 vs 지방소멸 개념 구분, 정책 대상 설정의 적정성
	광역 협력 체계	수도권 중심 대응의 한계, 광역 단위 협력 필요성
	지역 유형화(계량분석)	전입사유·이동패턴 등 지역 유형별 정책 필요성
사업 선정의 타당성	선정 기준의 명확성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의 객관성·투명성
	효율성 평가체계	비용·편익 분석 및 지역별 효과 차이 반영 여부
	투자사업 구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 민간투자 유도 방식, 공공성·수익성 균형 여부
	거버넌스 구조	의사결정 이원화, 책임성
기금 집행의 적정성	재정 집행 효율성	미집행액(0.95조원) 발생, 집행 지연
	자금 운용 방식	수시납 출자 구조, 미출자금 정기예금 운용 등
	투자펀드 운용	모펀드·자펀드 구조, 레버리지 효과와 재정 리스크
	자금 집행 시기	일시 출연, 배정 등 집행 구조 효율성
성과분석	정책 효과성(계량분석)	인구감소 완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 방법 적정성	단순 성과 비교의 적정성, 계량분석 필요성
	성과지표 체계	성과지표 표준화, 산출지표 중심 운영 현황
	성과관리 체계	목표-성과 연계, 논리모형 기반 관리 현황
	목표 설정 방식	결과지향적 목표, 지방자치단체 간 작성 수준 편차 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지방소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의 심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인구와 생활 기반이 점차 소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²⁾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저출생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구별된다.³⁾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의 유출 억제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력 회복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1항⁴⁾은 시·도⁵⁾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2022년~2023년) 추진⁶⁾에 따라, 지역격차 및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⁷⁾을 관리·운영하는 기

2) 하혜수,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자치 재검토 -다양화와 차등화-,”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pp.1-24.

3) 최철호,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법제연구」 제6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pp.79-110.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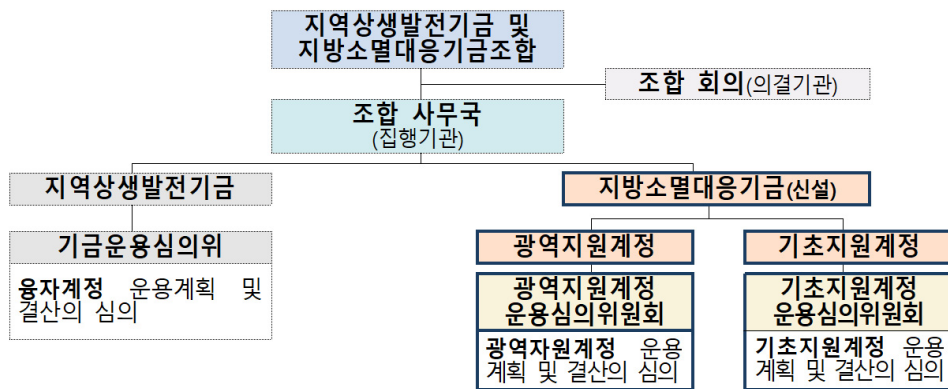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안부고시)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나머지 10%는 시·도별 인구·재정여건을 고려한 배분계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따라 관내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인구·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과 세종에는 배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세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6)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연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보도자료, 2021.11.12.

금관리조합⁸⁾이며, 공식명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다. 기금의 재원은 2031년까지⁹⁾ 연간 정부출연금 1조원¹⁰⁾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운영하는 한시재원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분기부터 시행되어 7,500억원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9.75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영한다.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 500억원으로 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및 운용체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이지만, 동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1)에 따른 정부출연금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12)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 등 기금의 배분 대상 및 배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와 광역 배분 결정 로직]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전체 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시·도’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표]에 제시된 시·도별 배분계수에 따른다. 이에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님에도 2025년에 각각 12억원, 19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았다.(부록 1) 참조)

[광역지원계정 배분 계산식(「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배분대상	배분 계산식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i \times a1i \times a2i}{\sum (Ai \times a1i \times a2i)}$ <p> A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p>										
시·도	<p>해당 시·도 배분금액 =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 0.1 × 해당 시·도 배분계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 배분계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시·도</th> <th>배분계수</th> </tr> </thead> <tbody> <tr> <td>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td> <td>0.100</td> </tr> <tr> <td>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td> <td>0.075</td> </tr> <tr> <td>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td> <td>0.050</td> </tr> <tr> <td>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td> <td>0</td> </tr> </tbody> </table>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4, p.9.

기초지원계정(매년 7,500억원)의 95%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 5%는 18개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다만 기초지원계정은 선정된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¹³⁾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액은 조합회의¹⁴⁾에서 결정된다. 2025년 기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준 최대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약 160억원, 관심지역 약 4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기초지원계정 배분 구조]

2025년 기준: 우수/양호 2등급 차등 배분 (총 7,480억)								2026년 기준: S/A등급 신설 및 추가 배분 (총 7,580억)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등급	인구감소지역 ^A			관심지역 ^B			배분총액 C=A+B	등급	인구감소지역 ^A			관심지역 ^B			배분총액 C=A+B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지역 수	금액	계	
합계	89	-	7,112	18	-	368	7,480	합계	89	-	7,208	18	-	372	7,580
우수	8	160	1,280	2	40	80	1,360	우수	8	120	960	2	30	60	1,020
양호	81	72	5,832	16	18	288	6,120	양호 S	11	88	968	-	-	-	968
								양호 A	30	80	2,400	4	24	96	2,496
								양호	40	72	2,880	12	18	216	3,096

변화 (Change) 7,480 → 7,580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해 설치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광역지원계정 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⁵⁾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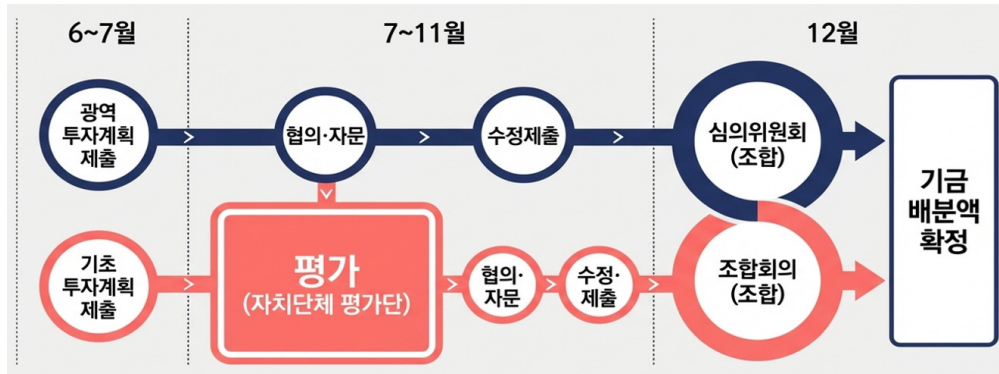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14) 지역발전상생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회의(의결기관)
 (구성) 시·도 기획실장(17명),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안부 장관 추천 지방재정전문가(2명)
 (역할) 조합규약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사업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 (실무협의회) 시·도 예산(재정)담당 과장,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과장으로 구성, 상정 안건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

-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¹⁶⁾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¹⁷⁾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이원화 로드맵]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3.6.28.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첫 논의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23.7.12.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발표
'23.8.31.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 발표 * 펀드제도(거버넌스 및 투자가이드라인)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원 방안 등
'23.9.22.	펀드 참여자 대상 투자설명회(IR) 및 투자 매칭데이 개최 * 제도 소개 및 시장 참여자간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성공적 사업추진 도모
'23.10.24.	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관] * 학술단체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
'23.12.07.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추진동향 점검
'24.1.03.	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선정
'24.1.16.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문 게시 * 「 http://www.kgrowth.or.kr > 공지사항 > 출자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24.3.26.	펀드 출범식 + 1호 프로젝트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p.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18)에 근거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중앙정부(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연계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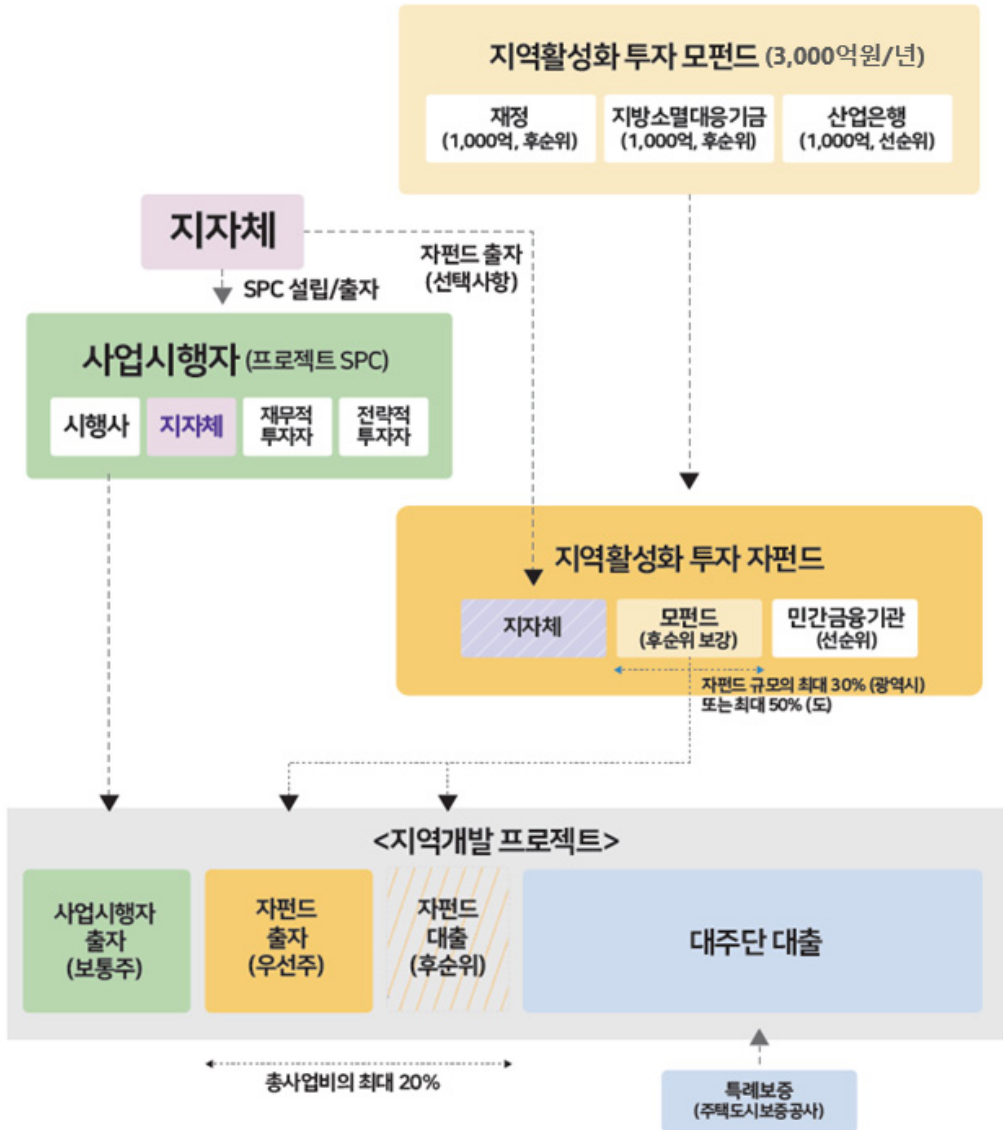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체계]

펀드 목적	지역이 발굴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본 방향	펀드 조성	프로젝트 발굴	인센티브 제공
	단발적·소규모 재정의존 ⇨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Top-Down ⇨ 지자체 Bottom-up	투자 걸림돌 ⇨ 마중물 + 규제완화
세부 구조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산은·소멸기금, 모펀드에 출자 ▪ 지자체·민간·금융기관 SPC 설립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민간 금융기관 PF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gative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 대규모 용·복합 프로젝트 등 추진 ▪ 시장 경쟁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선정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순위 출자, PF 보증 등 안정적 수익 창출 ▪ 지자체 출자, 중앙투자심사 등 투자규제 개선 ▪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해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체와 민관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3-16-3(공개), 2023.7.12, p.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매년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비수도권 소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2024, p.3.

모펀드의 투자기간(프로젝트 선정 기간)은 2년이지만, 자펀드 형태의 하위 펀드에 대한 자금 집행은 수시납(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며, 모펀드의 존속 기간은 최대 25년까지 설정될 수 있다.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에는 충북 단양과 경북 구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1호 프로젝트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이후 총 6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총사업비는 3조 6,345억원에 달한다.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승인된 8개 프로젝트 중 충북 단양, 경북 구미, 전남 여수, 전남 장성 등 4개 사업은 이미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사업 현황(2025.12. 기준)]

(단위: 억원)

프로젝트명	최초승인	재선정	자펀드 결성시한 ¹⁾	자펀드 결성일	총사업비 (모펀드투자금액)	기금 약정액
1호	인구감소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4.2.16. 2차 '24.11.27.	'25.9.29.	'25.9.26.	680(68)	23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3차 '25.1.24.	'25.8.25.	'25.8.21.	876 (39)	13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4.8.29. -	'25.4.2.	'25.2.28.	14,362 (1,436)	478
4호	관심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심사중 ²⁾ (2025.12.)	-	-	8,191 (786)	262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컴플렉스 1단계	'24.12.24. '25.10.2.	'26.2.2.	결성중	900 (90)	3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5.11.4. -	'26.3.5.	결성중	7,200 (420)	140
7호	인구감소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1.4. -	'26.3.5.	'25.12.10.	3,959 (372)	124
8호	인구감소 충남 태안, 「Seed Farm 1호」	'25.11.28. -	'26.4.1.	결성중	177 (17)	6
합계					36,345 (3,228)	1,076

주: 1)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에 3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개월내 결성('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

2)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으로 제안 철회 후 재신청

자료: 행정안전부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요

2025년에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을 포함한 총 536개이다. 사업을 계정별로 구분하면, 광역지원계정에 따른 기금 투자사업은 총 98개로, 이에는 기초지원계정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395개로, 광역지원계정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아울러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은 총 43개로, 이 역시 광역지원계정 연계사업을 포함한 수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단위: 개)

구분		계정 유형	사업 수	비고
2024	전체	-	503	광역-기초 연계사업 중복 포함
	광역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98	기초계정 연계사업 포함
	인구감소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365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관심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40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2025	전체	-	536	광역-기초 연계사업 중복 포함
	광역지원계정 기금 투자사업	광역계정	98	기초계정 연계사업 포함
	인구감소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395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관심지역 기금 투자사업	기초계정	43	광역계정 연계사업 포함

자료: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5, p.11.

2. 행정안전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기금 투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총합은 1조 8,652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한정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5개 시·도에 배분·투자된 사업비는 3,78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는 1조 3,904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관심지역 18개 시·

군·구에는 962억원이 투입되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광역단위	226,736	11,546	124,053	16,176	378,512	
기초단위	인구감소지역	747,587	132,714	365,997	144,125	1,390,422
	관심지역	37,547	6,280	32,148	20,258	96,233
합계 ¹⁾	1,011,870	150,540	522,198	180,559	1,865,167	

주: 1)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 연계사업 합산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기금관리조합의 연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초기 기초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역 간 연계 협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거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 지원 및 대규모 복합 개발로 고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2022~2023년은 기초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에 중점을 둔 단계로, 보육·의료·주거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물리적 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응급의료 기반, 장애인 지원시설 등 필수 서비스망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주거 및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귀농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창업보육시설 조성이 추진되었다. 또한 위케이션 센터와 같은 체류형 인구 유입 모델이 도입되어, 도시 인구의 유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시도가 이루어졌다.¹⁹⁾

둘째, 2024년은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간 연계 협력이 강화된 단계로,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별 특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 협력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수소, 이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 조성이 추진되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광 연계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협력 모델이 확산되었다.

1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 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3.

셋째, 2025년은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와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통합한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거점형 개발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 지원이 도입되어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고려한 정착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전국 15개 시·도(서울, 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수립되며, 지역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거점 조성 및 전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연도별로 투자 방향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면서 정책의 범위와 수단이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원계정(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투자계획)]

시·도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부산형 워케이션(Workation)2.0, 부산 브랜드샵 운영
대구	군위 GBT(Golf Business Town) 타운조성,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의료헬스어울림 행복공간 조성
인천	인천 섬 포털구축 및 고도화, 강화·옹진 6차산업경쟁력 강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광주	청년 통합플랫폼 및 윈스톱 지원체계 구축, 동구 AI 헬스케어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전	세대통합 어울림 센터조성, 어린이친화 환경 및 도시공원 조성
울산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경기	연천군 외국인 근로자 게스트하우스 조성
강원	수소기업육성 특화단지, K-Bio첨단도시, 드론 테스트 베드, 산악관광 허브 구축
충북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성산별빛마을 주거단지, 혁신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충남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주거),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설치
전북	특장차 전문인력양성, 에코캠핑 삼천리길,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아복합센터 건립
전남	전남형 만원주택건립, 청년비전센터 조성, 필수근로자 기숙사 지원
경북	K-U시티 프로젝트(전략산업-대학-기업 연계), 이웃사촌마을확산, 로컬체인사업
경남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응시설(결혼-출산-보육),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 건립
제주	카툰 빌리지(마을 체류형 관광) 조성,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지원

주: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사업은 <부록 2> 참조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각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 배분 대상인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89개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내용
부산(3)	서구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정비
	동구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빈집 정비 및 청년 창업 지원
	영도구	청학수변공원 친수공간 조성, 생활인구 연결 해안관광 순환벨트 및 커피산업 플랫폼 구축
대구(3)	서구	유스드림센터 건립, 헬스&키즈드림센터 및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남구	앞산 맘&키즈 특화공간 구축,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및 겨울시즌 특화 관광지 조성
	군위군	군위 GBT 타운 조성, 희망주택 및 식품 마더센터 구축
인천(2)	강화군	강화 로컬팝 빌리지 조성, 노인복지관 확장 및 원도심 관광 활성화
	옹진군	자주 달빛섬(자월도) 프로젝트, 덕적 바다역 현대화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경기(2)	가평군	북한강 천년벚길 조성, 가평전투 기념 관광체험관 및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구축
	연천군	연천형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숙소 조성
강원(12)	태백시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 태백 休 전지훈련센터 및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삼척시	수소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로컬 창업 빌리지 및 농촌 커뮤니티 모델 창출
	홍천군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및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횡성군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베이스볼 관광테마파크 및 미래인재 양성
	영월군	동강영월 관광거점(봉래산 명소화)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평창군	포레스트 종합관광 허브 구축, 누구나 농장(농촌체험복합단지) 및 그린바이오 주거 지원
	정선군	정선형 웰니스 의료·관광(군립병원 증개축), 웰니스 하우스 및 인재발전소 구축
	철원군	한탄강 관광 르네상스(야간 미디어아트), 숲속아지트(위케이션) 및 제대군인 정착마을 조성
	화천군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화천살이 체험형 숙박시설 및 행복주택 건립
	양구군	지역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과 유통시설 강화 및 마을 간 교통네트워크 연결
	고성군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생태계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정주여건 개선
	양양군	설악산 오색지구 체류형 관광단지(케이블카) 조성, 육아지원센터 운영
	충북(6)	제천시
보은군		지역활력타운(보은청년 all 來), 스포츠타운 및 온-누림 힐링타운 조성
옥천군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어린이놀이터 포함), 청산별곡 힐링마을(임대형 주택) 구축
영동군		일라이트 특화 산업단지 및 스마트팜 조성, 레인보우 다이닝 공간 구축
괴산군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자연특별시 희망동지(빈집 활용) 및 한지문화산업 거점 조성
단양군		단양 미라클파크(시루섬) 조성,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 연계 온(ON)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내용
충남(9)	공주시	인력공급 레벨업(지원주택), 역사문화 연계 야간관광 및 공주 미식학교 운영
	보령시	탄소중립 에너지필드(수소) 구축, 청년집적화 거점(머드림) 및 5도 힐링촌 조성
	논산시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 딸기 드림파크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금산군	신혼·청년 이룸채 조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리노베이션 및 아이조아센터 운영
	부여군	우리아이 동행마루 건립,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 및 굿뜨래스토리팜 조성
	서천군	맞춤형 농촌스테이 조성, 스포츠타운 기능 강화 및 장항 아우름 회관 건립
	청양군	청소년 복합힐링공간 '와락' 조성, 청년 세어하우스 및 탐클래스 학습 지원
	예산군	예당호 명소화(느린호수길),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 및 구도심 혁신거점 구축
	태안군	의료복합 플랫폼 구축, 만리포 워케이션 명소화 및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전북(10)	정읍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구축, 지리산 활력타운 및 인재화당 건립
	김제시	힐스타운 시암(청년보급자리), 특장차 전문인력양성 및 문화예술 거점 맛잇길 조성
	진안군	고원도시 체류형 관광기반(마이스테이) 조성, 공공임대주택 및 지질관광 활성화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귀농귀촌 보급자리 및 청년센터 구축
	장수군	국제산악레저 트레일빌리지 조성,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 및 행복주택 건립
	임실군	임실치즈 2.0(청년낙농 육성), 도농복합 공공임대주택 및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
	순창군	청년허브(기숙사 포함) 구축,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및 발효·치유메카 고도화
	고창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활력산단 근로자 전용주택 및 플로랜드 조성
	부안군	청년 로컬생태계 조성,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및 국산 밀 제빵학교 구축
전남(16)	담양군	에코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조성,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농업사관학교 운영
	곡성군	활력명당 '곡성활명수'(주거), 스마트팜 캠퍼스 및 청년하우징 타운 조성
	구례군	구례산에마을(신규주거단지), 손모아빨래방 및 촌스테이 in 구례 프로젝트
	고흥군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및 정착 복합 허브센터 건립
	보성군	청년활력마을(스마트팜+보급자리) 및 참여형 별마루 예술정원 조성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급자리 지원,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장흥군	프리즌 빌리지(호텔·스튜디오), 마음건강치유센터 및 귀촌마을 조성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건립, 푸소(FU-SO) 운영 지원 및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
	해남군	땅끝마실(캠핑카 시티투어),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및 굿모닝 힐링로드 조성
	영암군	영암형 워커피아(조선업 인력 주거), 구림 마을호텔 및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함평군	청년캠퍼스(주택·창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나산강 생태야영장 조성
	영광군	늘품빌리지(단독주택) 조성, 상사화 스테이 및 특화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장성군	365 유아 전용 거점(돌봄·교육) 및 황룡시장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인구감소지역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내용
	완도군	공공임대주택 '완토피아', 완도희망징검다리(연도교·여객선) 및 마음치유센터 조성
	진도군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 관매도 여객선 도입 및 스마트팜·드론 교육
	신안군	팔금 Book아일랜드 커뮤니티 조성, 어선구입 임대 및 바다문화시설 구축
경북(15)	안동시	은하수타운(아이행복) 조성, K-컬처 고택 만들기 및 바이오·백신 상생 프로젝트
	영주시	도심공원(스카이워크) 조성, 영농장비지원 교육센터 및 인구활력센터 구축
	영천시	다가치 라이프타운(외국인·주민 복지), K-로컬푸드센터 및 런케이션 프로젝트
	상주시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지역활력타운), 미래인재 교육플랫폼 구축
	문경시	영상·스포츠 허브(스튜디오) 조성, 문경새재 에코 키즈랜드 및 청년예술가 아지트 구축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허브 및 워라밸복합문화센터 건립, 리본(Re:born) 빌리지 조성
	청송군	진보 W-가드 하우스 및 청년빌리지(공공임대주택) 건립, 사과기반 R&D 지원
	영양군	영양누리 메모리얼 파크, 자작나무 힐링 포레스트 및 별명스테이 조성
	영덕군	축구의 성지 스포츠 인프라, 블루로드 테마로드 및 미래인재양성관 건립
	청도군	콤팩트시티(정주환경 개선), 웰니스마트 및 예술인 창작빌리지 조성
	고령군	청년활력귀농타운, 아이사랑 행복보금자리 및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성주군	별별 주거 플랫폼(아이키움 임대주택), 온세대 플랫폼 및 체류형 레저 인프라 구축
	봉화군	K-베트남 밸리(교류 거점), 듀얼라이프 모듈러 주택 및 청년 스마트팜 조성
	울진군	울진청년 start-up(창업복합문화센터) 및 월변행복타운 대지 조성,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울릉군	섬 동지 보금자리(교통정주환경 개선), 울릉다움 가족센터 건립
경남(11)	밀양시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청년행복누림센터 및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의령군	부림산단 근로자 기숙사, 갑을분교 은퇴자마을 및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함안군	제조업 근로자 주거시설, 농촌융복합 종합지원센터 및 가야놀이마당 조성
	창녕군	스마트 영산 청년 농업인 육성 거점, 청년 창업 워케이션 및 장애인복지 클러스터 조성
	고성군	고성형 근로자주택(공공임대) 건립, 청년예술정거장 조성 및 스포츠 빌리지 구축
	남해군	청년정착거점 루트-남해, 에코-푸드 공작소 및 FC 학교연계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건강 인프라), 평생학습관 및 청년가족 맞춤형주택 조성
	산청군	생초축구센터 건립, 늘비 예술창작센터 및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 판매장 구축
	함양군	오르GO 함양(산악관광 지원), 함양 누이센터 및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조성
	거창군	임신·출산·육아 거점 허브(육아드림센터), 승강기밸리 산업생태계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합천군	청년 귀농 스마트팜(임대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산지이음 프로젝트

주: 1. 괄호 내 숫자는 해당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수

2. <부록 2> 참조

자료: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3.;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4.을 바탕으로 작성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지원 대상인 관심지역(18개소)의 주요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관심지역 (18개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투자계획)]

시·도	시·군·구	주요 투자계획 및 핵심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이음 ESG센터 조성, 산만디빌리지조성·운영, 빈집연결(빈집뱅크)
	금정구	금정 청년 러스틱라이프 프로젝트, 금사공업지역원스톱기업애로지원
인천광역시	동구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역생활인프라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AI헬스케어 콤플렉스 매입·조성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유희공간리모델링(물류·유통)
	중구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빛나는 거리조성
	대덕구	도심 속 힐링공간 대청호 생태공원 활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
	동두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소요바람숲길조성, 평생교육허브조성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기반 구축, 지역콘텐츠개발
	동해시	햇살 가득한 문화채굴 복합플랫폼 조성
	속초시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 기업지원특례보증
	인제군	인제에서 살아보기, 활력마을귀둔만들기, 살맛나는 에너지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창업 지원(시제품 제작·사업화), 익산형주거사다리구축
경상북도	경주시	스마트팜 체험·운영실습장 조성, 중소기업특례보증금융지원
	김천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지역경제활력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메뉴고도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천시	위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자료: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3.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4.
 을 바탕으로 작성

1

지방소멸대응정책 분석

가.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법령 차원에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²⁰⁾ 일반적으로 지방소멸대응은 소멸위험지역²¹⁾을 중심으로 청년층 유출, 고령화의 가속화, 지역 경제기반 약화 등 인구감소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청년과 중장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며, 단순히 인구 감소 자체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공론화되었다.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 Japan Policy Council)²²⁾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는 2014년 5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이하 「마스다 보고서」)²³⁾을 공표하며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일본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지방소멸」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지방소멸’은 그

20)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병원·상점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사라지고, 교육·의료·돌봄 등 공공 서비스 제공 기반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행정안전부 제출자료)

21)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시된 ‘소멸위험지역’ 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히로야(2014)가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표기한 것이며,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조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행정구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지역은 다른 변수의 변동이 없을 경우 약 30년 후 해당 지역 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22) 일본창성회의는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족한 민간 회의체이며, 2016년부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창성회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계기로서, 부흥·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의 입장에서부터 전략을 구상해, 10년 후의 세계·아시아를 바라본 일본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을 책정하였다.

23) 日本創成會議・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2014.

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용어가 되었다.²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정책군으로 정립하거나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와 정부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이 파악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범위가 부처별 업무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여러 부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사업을 지방소멸대응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방소멸대응이 인구감소지역대응보다 상위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지방소멸대응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인구감소 문제를 포괄하는 반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상위 목표 아래 특정 지역인 인구감소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실행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대응정책은 명확한 법적 정의나 통합된 기본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감소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24)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2024, pp.7-8.

25) 행정안전부는 제도 설계 당시 ‘소멸위지역’이라는 용어가 초래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인구감소지역’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과 소멸위지역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멸위 상태에 있는 지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구변동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지역의 종합적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일부 인구증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2024, pp.66-85.)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단순히 인구 증감 여부만을 기준으로 설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소멸위지역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분석의견

(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재정립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 국가재원 중심의 운영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기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방식, 관리체계 및 책임구조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운용 방식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²⁶⁾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재정수단이다. 일반적인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며,²⁷⁾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다.²⁸⁾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설치·운용 구조, 재원 조성 방식 및 관리체계가 일반 지방기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도가 설치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금관리조합이 실질적인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원은 정부출연금이며, 행정안전부가 기금 배분과 운영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6)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 지방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비교]

구분	일반 지방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설치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조합
의결	지방의회 의결	기금관리조합 조합회의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기금관리조합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와 조례 제정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기금은 설치근거에 따라 자체기금²⁹⁾과 법정기금으로 구분되며, 법정기금은 법정의무기금³⁰⁾과 법정재량기금³¹⁾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법정의무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 설치’, ‘기금 적립’, ‘기금 조성’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의무기금에 대한 ‘설치 조례’를 마련하거나, ‘운영·관리 조례’에 기금 설치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는 시·도가 법정의무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시·도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 역시 시·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제도적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관리·운영하는 현행 체계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9)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

30) 법정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이 있다.

31) 법정재량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법정 의무금 현황]

기금명	설치 근거법 (주요 조항)	주요 내용	비고 ¹⁾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관리기금 적립	설치 혹은 운용 조례 제정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 제14조	• 매년 재해구호기금 적립	서울시 설치·운용 조례, 일부 지자체 운용·관리 조례 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함	설치 혹은 운용 조례 제정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주민지원기금 조성	설치 혹은 운용 조례 제정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운용 조례 제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함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운용 조례 제정
지방세발전기금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일부 지자체가 설치·운용 조례 제정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자활기금을 적립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운용 조례 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제주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도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해당 법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³²⁾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재원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재정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광역시·도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원구조와 사업 특성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어 현행 운용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지방기금법 제18조제1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지방기금법 제24조제1항)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6.2.)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³³⁾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

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33)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설립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기능은 국가재원의 배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운용하는 현행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법률상 기금 설치 주체인 시·도가 아닌 시·군·구에 정부출연금³⁴⁾이 직접 배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금 설치 주체와 실제 재원 운용 주체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기금의 책임성과 재정통제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출연금은 우선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가 설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시·군·구 사업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상 관리주체와 실제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기금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중앙부처 소관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대부분 기금을 설치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다.³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5조³⁵⁾는 지방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³⁶⁾은 시·도가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관리·운용 주체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³⁷⁾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34) 「공무원연금법」 제76조는 기금 설치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기금관리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³⁴⁾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기금관리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심의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행정안전부가 각각 심의, 실무집행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성과 부진이나 기금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상 기금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관리조합·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인구감소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인구 순이동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순이동 규모는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이동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대응정책은 각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과 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차별화된 정책 설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정책은 일반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이동 관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장기적 인구구조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단기간 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경제·주거·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인구 순이동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순이동자수는 1,615명/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의 연평균 $\Delta 32,251$ 명/년,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6~2019년의 연평균 $\Delta 32,852$ 명/년과 비교할 때 순유출 규모가 순유입으로 변환된 것으로, 인구이동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감소지역 연평균 인구 순이동자수 현황]

(단위: 명/년)

구분	연평균 순이동자수(유입-유출)				
	2011-2015	2016-2019(A)	2020-2021	2022-2025(B)	증가(B-A)
인구감소지역	$\Delta 15,108$	$\Delta 32,852$	$\Delta 32,251$	1,615	34,467

주: Δ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연평균 인구 순이동 규모가 2016~2019년 대비 감소된 지역은 다음 [표]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21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황성군, 강화군, 양양군, 청도군, 거창군, 태안군 등 6개 지역은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으로, 인구 유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이전 기간에 비해 순유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 기반의 약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보령시, 문경시, 완도군, 남원시, 봉화군 등 5개 지역은 2011년 이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인 인구 유출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영천시, 상주시, 창녕군, 함양군, 성주군, 영월군, 구례군, 홍천군, 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순유출로 전환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2022년) 이후 인구증가가 감소된 인구감소지역]

(단위: 명/년)

구분		연평균 순이동자수(유입-유출)				
		2011-2015	2016-2019(A)	2020-2021	2022-2025(B)	증가(B-A)
1	영천시	△300	925	500	△776	△1,701
2	상주시	△155	305	△1,504	△290	△595
3	창녕군	801	26	△434	△501	△527
4	함양군	87	189	△134	△122	△311
5	횡성군	504	498	396	284	△214
6	보령시	△339	△502	△539	△689	△186
7	담양군	△40	134	252	△42	△176
8	문경시	△113	△437	18	△596	△159
9	강화군	507	879	908	729	△151
10	완도군	△43	△307	△527	△390	△82
11	양양군	15	229	332	150	△80
12	남원시	△364	△454	△364	△511	△57
13	청도군	246	231	83	178	△53
14	성주군	154	27	△148	△26	△52
15	거창군	201	116	△11	65	△51
16	태안군	245	167	△105	119	△48
17	영월군	175	7	△121	△35	△42
18	구례군	149	23	△348	△2	△24
19	홍천군	253	16	221	△6	△22
20	단양군	△33	3	△319	△13	△16
21	봉화군	49	△132	△253	△139	△7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영천시의 인구 순유출은 주로 가족, 주택, 교육, 직업 등 이동사유(전입사유³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구이동을 보면 직업 및 자연환경 등의 사유에 의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가족, 주택 등의 사유로 인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는 순유출 구조로 변경되었다.

[전입사유별 순이동자수(영천시)]

(단위: 명, 명/년)

구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3	△788	△383	△335	△190	△222	△41	129	254
2014	126	17	△338	11	△233	△4	166	507
2015	217	370	△339	153	△161	3	218	△27
2016	292	349	△72	△258	△127	73	204	123
2017	636	828	△272	△121	△156	99	229	29
2018	1,527	922	283	△69	△106	55	320	122
2019	1,245	1,121	△368	△60	62	53	361	76
2020	155	191	△622	△65	△98	20	408	321
2021	844	436	△703	366	△140	36	537	312
2022	129	390	△468	△77	△280	△60	406	218
2023	△46	597	△572	△272	△237	20	456	△38
2024	△1,196	△175	△1,143	△420	△155	127	469	101
2025	△1,991	△433	△800	△561	△126	△101	181	△151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38)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그 밖의 사유

전입지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영천시에서 유출된 인구의 상당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상북도 내 시·군·구별 전입지를 기준으로 보면, 영천시에서 유출된 인구는 주로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들은 모두 영천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생활권 및 통근권과 같은 지역 간 공간적 연계성이 인구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역시·도 전입지별 순이동자수(영천시)]

(단위: 명)

전입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844	129	△46	△1,196	△1,991
서울	△93	△142	△52	△132	△74
부산	47	△31	39	△11	△33
대구	709	288	110	△348	△637
인천	△20	△27	△35	△17	△34
광주	3	8	9	△1	0
대전	△47	△16	△7	△52	△33
울산	205	93	76	29	21
세종	1	△12	△17	△17	△10
경기	△200	△74	△45	△133	△182
강원	△87	△20	△6	6	△79
충북	△32	△24	△16	△9	△55
충남	△4	△30	△17	△5	△54
전북	△10	18	20	5	△18
전남	19	△22	14	△1	△13
경북	290	64	△149	△489	△779
경남	62	59	21	△32	△18
제주	1	△3	9	11	7

주: △는 영천시에서 해당 지역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경상북도 전입지별 순이동자수(영천시)]

(단위: 명)

전입지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상북도	290	64	△149	△489	△779
포항시	△52	86	73	△62	△64
경주시	195	112	49	△6	△89
김천시	5	8	4	△24	△3
안동시	△14	7	△1	△18	△20
구미시	19	12	10	△21	△56
영주시	3	△11	△9	△8	7
영천시	0	0	0	0	0
상주시	4	△7	0	△1	8
문경시	△1	△11	△3	5	5
경산시	70	△140	△274	△398	△506
군위군	14	△5	0	0	0
의성군	19	9	△7	10	3
청송군	6	8	△6	△6	△7
영양군	△2	△1	0	9	△11
영덕군	6	△5	10	11	2
청도군	4	△8	16	14	△11
고령군	14	11	△1	0	△11
성주군	0	9	△9	3	△8
칠곡군	7	7	13	△7	△9
예천군	△3	△5	△1	2	△9
봉화군	△2	6	2	△2	0
울진군	△5	△3	△8	5	△4
울릉군	3	△15	△7	5	4

주: △는 영천시에서 해당 시·군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결과는 영천시의 인구 유출이 원거리 이동보다는 인접한 중핵도시로의 단거리 이동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천시가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 등 인접 도시와의 인구 유치 경쟁뿐만 아니라, 생활권 연계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구유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보령시 인구 순유출은 주로 직업, 교육 등의 사유로 이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인구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입사유별 순이동자수(보령시)]

(단위: 명, 명/년)

구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3	△430	△167	196	△293	△69	△5	138	△230
2014	△372	△73	49	△290	△210	10	130	12
2015	687	761	△28	△250	△75	△6	203	82
2016	△607	20	△34	△633	△205	7	143	95
2017	△286	55	43	△334	△133	25	125	△67
2018	△695	△376	35	△201	△265	△57	93	76
2019	△421	△84	△109	△30	△267	△60	92	37
2020	△321	△266	△86	116	△369	△94	207	171
2021	△756	△367	△152	△47	△405	△125	145	195
2022	△257	△665	249	421	△439	△36	191	22
2023	△521	△405	193	215	△477	△119	130	△58
2024	△1,113	△402	93	△282	△513	△80	77	△6
2025	△863	△284	244	△304	△473	△101	89	△34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을 바탕으로 작성

전입지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보령시에서 유출된 인구의 상당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충청남도 내 시·군·구별 전입지를 기준으로 보면, 보령시에서 유출된 인구는 주로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들은 보령시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인접한 지역으로, 생활권 및 통근권과 같은 지역 간 공간적 연계성이 인구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역시·도 전입지별 순이동자수(보령시)]

(단위: 명)

전입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756	△257	△521	△1,113	△863
서울	88	△75	△50	△7	△1
부산	△7	12	33	20	13
대구	△8	17	△18	△4	15
인천	76	79	19	△47	△5
광주	△3	7	8	△2	18
대전	△124	△92	△103	△121	△169
울산	△3	1	△5	△7	△2
세종	△154	△133	△75	△43	△23
경기	△50	215	120	△25	24
강원	△56	17	△2	9	30
충북	△48	10	△32	△18	△20
충남	△398	△346	△454	△746	△705
전북	△59	45	5	△50	△70
전남	16	△10	7	△6	22
경북	△6	△6	15	△18	△26
경남	3	△11	18	△19	35
제주	△23	13	△7	△29	1

주: △는 보령시에서 해당 지역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충청남도 전입지별 순이동자수(보령시)]

(단위: 명)

전입지	2021	2022	2023	2024	2025
충청남도	△398	△346	△454	△746	△705
천안시	△112	△111	△69	△215	△119
공주시	△23	△17	△7	△6	△16
아산시	△85	△51	△85	△49	△87
서산시	△32	△29	△29	△12	△22
논산시	3	△1	3	△8	△1
계룡시	△5	△4	△15	△6	△5
당진시	△15	△33	△43	△12	△22
금산군	△8	△1	△6	△3	△1
부여군	△21	23	3	6	1
서천군	△29	3	23	△20	△6
청양군	△4	9	△26	△14	△26
홍성군	△77	△93	△130	△349	△332
예산군	14	△19	△90	△64	△65
태안군	△4	△22	17	6	△4

주: △는 보령시에서 해당 시·군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결과는 보령시의 인구 유출도 원거리 이동보다는 인접한 중핵도시로의 단거리 이동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령시가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와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유치 경쟁에 대응하는 한편, 생활권 연계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구유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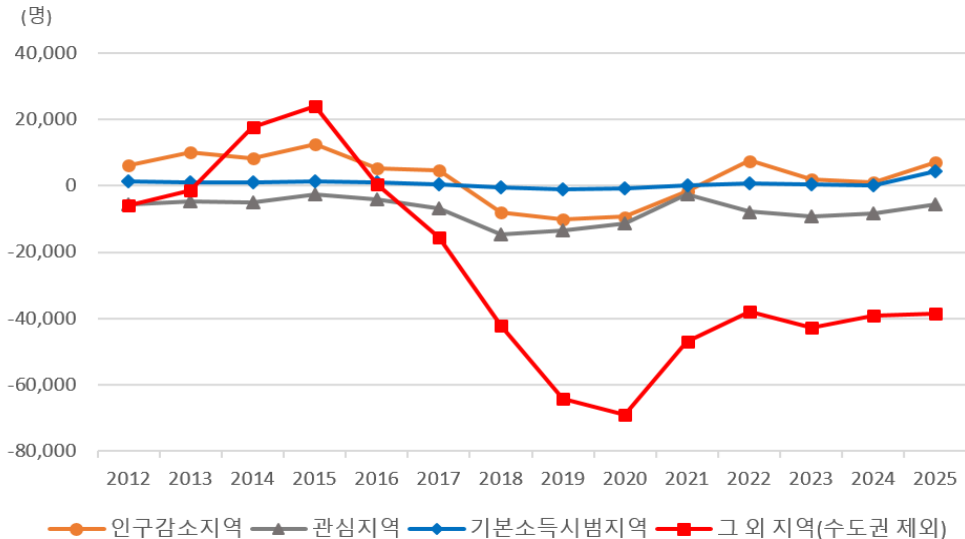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인구감소대응정책보다는 지역별 인구이동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감소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광역권 협력 방안 마련 필요

2025년 기준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인구감소지역 중 36개 지역에서 동일 시·도 내로의 순유출 규모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55개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인구감소대응정책은 수도권 유출 억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인접한 중핵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유출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과의 인구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2022년에 다시 순유입으로 반전되었다. 반면, 관심지역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수도권과의 인구 순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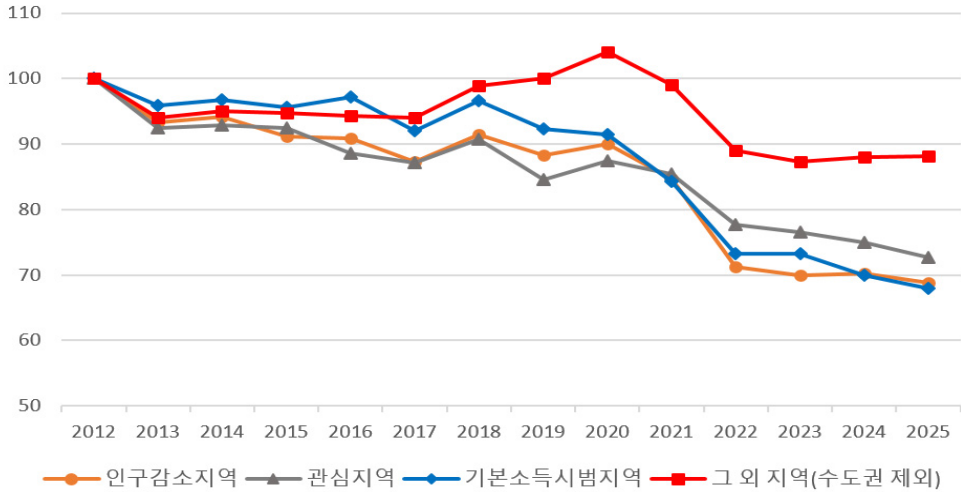
주: 1. 양(+)은 인구유입로 인한 해당 지역(전출지)의 인구증가(순유입)을 의미

2. 기본소득시범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그림]과 같이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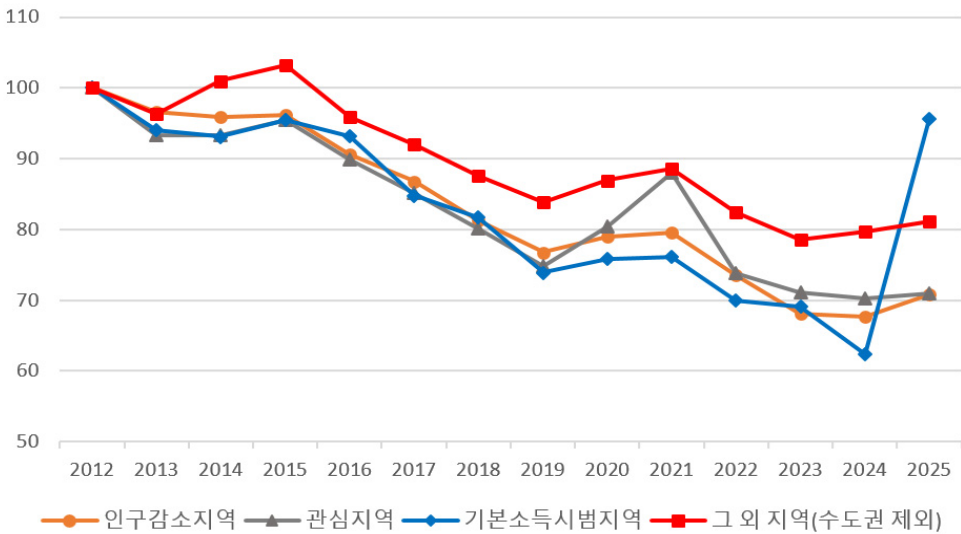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별 인구수 추이(기준년도 2012=100)]



주: 기본소득시범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지역별 인구수 추이(기준년도 2012=100)]



주: 기본소득시범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광역시·도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수도권과의 인구 순이동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인천, 강원, 충북, 충남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순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도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수도권과의 인구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산	△1,739	△1,303	△906	△912	△1,412	△1,340	△1,939
대구	△3,010	△2,603	△1,786	△2,242	△2,174	△2,293	△4,239
인천	718	1,051	1,007	1,380	1,279	1,466	347
광주	△63	△406	△336	△337	△364	△329	△446
대전	△394	△986	△1,120	△1,085	△1,294	△1,564	△2,014
경기	2,767	293	△191	961	1,007	△1,652	△2,386
강원	2,034	3,414	1,962	2,700	565	2,182	△2,151
충북	1,535	1,641	1,829	1,796	1,764	1,589	163
충남	1,108	1,855	1,978	3,512	2,109	2,347	203
전북	△789	773	△231	282	415	△95	△3,608
전남	326	1,647	651	1,121	△1,004	△173	△1,235
경북	△1,083	192	509	2,458	1,166	△1,281	△3,438
경남	△918	76	△42	216	△664	△867	△1,90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산	△2,146	△2,356	△2,168	△2,107	△1,716	△1,730	△1,350
대구	△3,170	△2,819	△1,344	△2,892	△6	△1,627	△2,350
인천	368	485	1,278	1,183	△90	974	750
광주	△401	△524	△470	△440	△283	△433	△465
대전	△2,602	△3,082	△2,109	△1,493	△1,600	△1,458	△566
경기	△3,840	△931	3,177	△1,188	△3,799	△1,657	1,778
강원	△604	1,007	2,440	3,613	△276	△411	336
충북	△107	△346	69	1,268	890	210	1,487
충남	△543	△671	715	2,306	1,672	1,429	1,622
전북	△3,516	△2,845	△1,270	△8	△65	△478	397
전남	△1,157	△1,186	△71	1,272	253	160	1,327
경북	△3,270	△4,968	△2,586	△770	△1,028	△1,463	△844
경남	△2,538	△2,412	△1,864	△1,099	△1,128	△977	△896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 [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에서는 인구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총 55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28개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상위 광역자치단체(이하 “해당 시·도”) 내부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상반된 이동 구조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순유출·입 현황(202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지역 수	비고
인구 순유입 지역	수도권으로 부터 순유입	< 해당 시·도 순유입	16 군위군, 김제시, 신안군, 안동시, 남해군, 무주군, 영양군, 장수군, 괴산군,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장흥군, 정선군, 보은군, 곡성군
		> 해당 시·도 순유입	11 옥천군, 장성군, 연천군, 영광군, 보성군, 강화군, 임실군, 청양군, 예산군, 구례군, 고창군
		해당 시·도 순유출	10 횡성군, 영동군, 가평군, 청송군, 고흥군, 영덕군, 양양군, 울진군, 강원 고성군, 제천시
	수도권으로 순유출	해당 시·도 순유입	2 대구 서구·남구
		< 해당 시·도 순유출	5 의성군, 청도군, 산청군, 강진군, 화순군
	합계		44
인구 순유출 지역	수도권으로 부터 순유입	해당 시·도 순유출	18 진도군, 남원시, 보령시, 함평군, 해남군, 함양군, 단양군, 부안군, 봉화군, 평창군, 공주시, 영월군, 태안군, 홍천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하동군
	수도권으로 순유출	< 해당 시·도 순유출	18 완도군, 부산 동구, 울릉군, 영암군, 영도구, 성주군, 양구군, 화천군, 함안군,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삼척시, 태백시, 합천군, 의령군, 경남 고성군, 부산 서구
		> 해당 시·도 순유출	7 용진군, 영주시, 논산시, 창녕군, 담양군, 철원군, 밀양시
		해당 시·도 순유입	2 고령군, 거창군
	합계		45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보다 해당 시·도로의 순유출이 더 크게 나타난 지역은 23개 지역이며, 반대로 수도권보다 해당 시·도로의 순유출이 더 적은 지역은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7개 지역 역시 해당 시·도로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수도권 유출 규모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도권보다 해당 시·도에서 더 적게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인구감소지역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순이동자수 (타 광역시·도 포함)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수(A)	해당 시·도로의 순이동자수(B)	비율 (B/A)
옹진군	△163	△243	△207	85.2
영주시	△746	△285	△239	83.9
논산시	△639	△190	△158	83.2
창녕군	△403	△109	△85	78.0
담양군	△45	△117	△80	68.4
철원군	△242	△189	△115	60.8
밀양시	△239	△159	△96	60.4

주: △는 인구유출로 인한 해당 인구감소지역(전출지)의 인구감소(순유출)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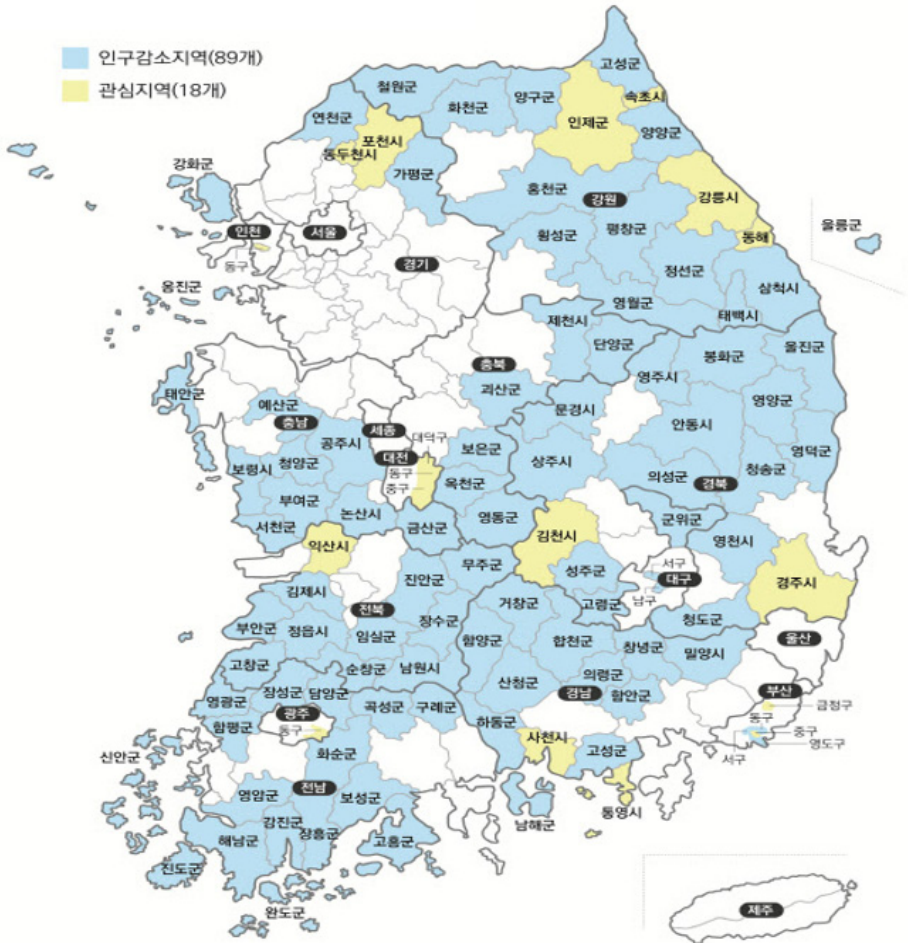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이 단순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고,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권 내 중심도시로의 이동 역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구감소대응정책은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광역 차원의 정책 연계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인구감소지역은 서로 인접한 경우가 많아, 유출 인구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단순한 개별 지역 지원을 넘어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인구이동이 비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다른 인구감소지역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면적 및 인구]

(단위: km², 만명, 명/km²)

구분	전국(A)	인구감소지역(B)		관심지역(C)	
			B/A		C/A
면적(km ²)	100,472	59,672	59.4	7,769	7.7
인구(만명)	5,112	469	9.2	251	4.9
인구밀도	508.8	79.6	15.4	323.1	63.6

자료: 국가통계포털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태안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는 23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순유출 인구는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안군에서 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순유출 인구가 전국 기준 순유출 인구의 282.6%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반면 제천시는 전국 기준으로 369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타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 인구는 449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순이동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 순이동(유입-유출)		비율 (B/A)	주요 인구 순이동 인구감소지역
	전국(A)	인구감소지역(B)		
태안군	△23	△65	282.6	예산군(△27), 공주시(△16)
함양군	△54	△99	183.3	거창군(△72), 남해군(△7)
담양군	△45	△70	155.6	순창군(△18), 곡성군(△18)
단양군	△182	△243	133.5	제천시(△220), 안동시(△6)
제천시	369	449	121.7	영월군(226), 단양군(220)
봉화군	△73	△79	108.2	안동시(△49), 영주시(△12)
영월군	△258	△270	104.7	제천시(△226), 정선군(△69)

주: 1. △는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를 의미

2. 괄호 내 숫자는 순이동자수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또한 거창군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는 6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113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이는 타 인구 감소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 인구가 전국 기준 순유출 규모의 1,88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순이동 현황 II (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 순이동(유입-유출)		비율 (B/A)	주요 인구 순이동 인구감소지역
	전국(A)	인구감소지역(B)		
거창군	△6	113	△1,883.3	함양군(72), 합천군(41)
화순군	3	△47	△1,566.7	영광군(△16), 담양군(△15)
임실군	5	△40	△800.0	순창군(△22), 김제시(△20)
강진군	5	△17	△340.0	장흥군(△49), 완도군(24)
청송군	44	△148	△336.4	영양군(△61), 안동시(△43)
영동군	53	△89	△167.9	옥천군(△159), 보은군(△13)
고창군	160	△205	△128.1	영광군(△88), 정읍시(△79)

주: 1. △는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를 의미

2. 괄호 내 숫자는 순이동자수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이동이 인구이동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단순한 개별 지역 지원을 넘어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³⁹⁾

39) 행정안전부는 최근 1년간('24.12. 대비 '25.12.)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증가한 16개 지역*의 전입 인구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88.6%였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11.4%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다.

* ① 인구감소지역 지정('21년) 이후 4년간 총인구가 증가한 지역(7개) 및 ② 최근 1년간('24.12. 대비 '25.12.) 인구가 1% 이상 증가한 지역(14개) 중 중복 제외(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옥천, 충남 예산·청양, 전북 순창·김제·장수, 전남 신안·영광·장성·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5) 인구감소 사유를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정책 마련 필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간에도 인구이동 구조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단일한 특성을 지닌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정책은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지방자치단체별 전입사유별 이동자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전출 신고 시 신고자가 선택한 전입사유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입사유는 단일 선택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이동의 복합적인 원인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초 통계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입사유별 순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입사유에 따라 서로 다른 인구이동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표]에 따르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등 생활 기반과 관련된 사유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자리 여건, 가족 생활 기반, 주거 여건 등이 인구감소와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자연환경 사유에서는 다른 전입사유와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자연환경 사유에서는 순유입 지역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순유출 지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인구이동과 일정 부분 관련될 가능성을 보인다. 다만 자연환경 사유에는 귀농·귀촌, 은퇴 이후 이동 등 다양한 이동 배경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 유입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입사유별 연평균(2016~2025) 인구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감소지역 수]

(단위: 개)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체
순유입	28	24	22	21	17	85	53	30
	7					80		
순유출	61	65	67	68	72	4	36	59
	82					9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부록 3> 참조)

또한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가족 관련 이동에서 순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된다. 가족 사유는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전입사유별 연평균 인구 순이동 규모(2016~2025)]

(단위: 명/년)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순증가 소계	4,260	1,613	3,439	3,990	645	14,651	3,518
순감소 소계	△14,529	△13,162	△9,465	△8,336	△2,712	△441	△2,417
합계	△10,269	△11,549	△6,026	△4,346	△2,067	14,210	1,101

주: △(음수)는 인구순유출을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인구이동의 양상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동일한 인구 감소 구조를 가진 단일 집단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인구이동 구조를 가진 지역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을 기준으로 군집분석⁴⁰⁾을 실시하였다.

본 군집분석에서는 지역 간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하여 ‘전입사유별 순이동자수’ 대신 ‘전입사유별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순이동률)’를 활용하였다.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규모는 수천 명 수준에서 수십만 명 수준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순이동자수만으로는 지역 간 비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 대비 이동 지표

40)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데이터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군집)을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다. 쉽게 말해, “비슷한 것끼리 묶고, 다른 것과는 떨어뜨리는” 분석이다.

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규모 차이에 따른 영향을 일정 부분 보정하고 인구이동의 상대적 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인구 규모가 매우 작은 지역이나 특정 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의 경우 순이동률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군집분석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옹진군, 울릉군 등 소규모 인구 지역과 일부 도심 특수지역은 별도의 특이 유형으로 분류하고 군집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특이유형 인구감소지역 순이동률¹⁾ 개요]

(단위: 개(n, 인구감소지역 수), %)

명칭	n	순이동률 평균값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소규모인구 이상치형	2	30.1	△18.0	△13.3	△4.6	△1.7	4.5	△2.3	△5.3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도심 교육 유입형	2	△3.4	△5.9	△1.7	3.1	△0.4	△0.7	0.04	△8.9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도심 재개발형	1	△1.4	△5.3	8.5	△1.0	0.1	△0.9	△2.3	△2.2
	부산 동구								
도심 쇠퇴형	2	△8.2	△3.8	△3.4	△0.6	△0.9	△0.6	△1.1	△18.6
	부산 영도구, 대구 서구								

주: △(음수)는 인구순유출을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부록 3> 참조)

군집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순이동률 중심값을 살펴보면, 전입사유별 인구 순이동률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군집별 전입사유별 순이동을 평균값]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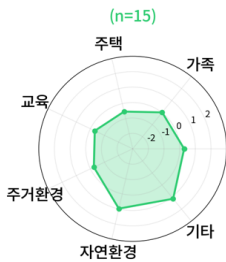
군집명	지역수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G1: 자연환경 및 기타 유입형	15	△0.17	△2.33	△3.43	△2.38	△0.71	6.25	2.42	△0.35
G2: 주택 유입형	23	△4.05	△0.25	0.58	△1.68	△0.43	2.57	0.64	△2.63
G3: 자연환경 유입형	11	△2.51	△3.91	△4.84	△2.60	△1.07	3.05	△0.99	△12.88
G4: 주거환경 유입형	8	△0.11	△4.82	△2.52	△2.48	1.44	3.85	1.55	△3.09
G5: 교육 유입형	7	△3.03	△7.21	△2.94	4.91	△0.20	3.69	0.85	△3.94
G6: 직업 유입형	8	5.19	△0.37	△4.43	△2.68	△1.11	3.82	△0.71	△0.30
G7: 직업 및 주택 유입형	10	0.23	△2.01	1.50	△1.40	△0.82	6.90	△1.04	3.36

주: △(음수)는 인구순유출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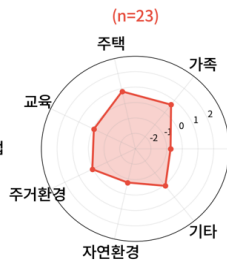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부록 3> 참조)

[군집별 전입사유 프로파일(표준화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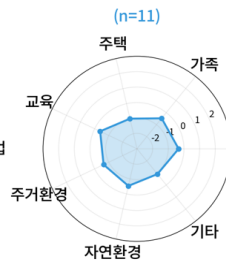
G1: 자연환경 및 기타 유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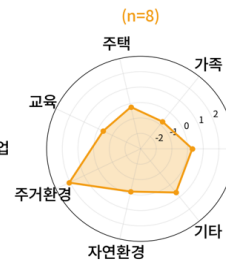
G2: 주택 유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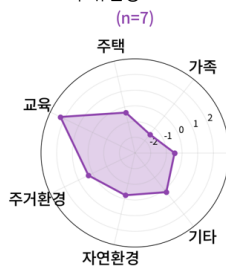
G3: 자연환경 유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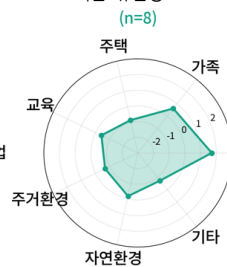
G4: 주거환경 유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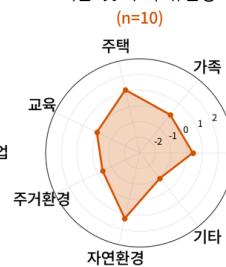
G5: 교육 유입형



G6: 직업 유입형



G7: 직업 및 주택 유입형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인구감소지역 군집 유형 및 특성 요약]

군집명	군집 특성 요약	포함 지역
G1: 자연환경 및 기타 유입형	자연환경·기타 유입(+), 직업·주택·교육은 소폭 유출. 전반적으로 유출이 가장 완만	진도군, 단양군, 함평군, 함양군, 무주군, 합천군, 보은군, 곡성군, 장수군, 하동군, 군위군, 진안군, 산청군, 순창군, 괴산군
G2: 주택 유입형	직업 사유 유출이 두드러짐. 주택·기타는 소폭 유입. 소도시 포함 다수	논산시, 상주시, 제천시, 영주시, 보령시, 남원시, 화순군, 정읍시, 김제시, 영광군, 거창군, 고령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밀양시, 보성군, 부안군, 고흥군, 금산군, 남해군, 옥천군, 담양군
G3: 자연환경 유입형	가족·주택 사유 유출이 7개 군집 중 가장 큼. 합계 순유출도 최대. 자연환경만 유입	철원군, 태백시, 양구군, 완도군, 함안군, 해남군, 화천군, 강진군, 장흥군, 봉화군, 경남 고성군
G4: 주거환경 유입형	가족 유출 두드러짐. 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는 유입(+). 직업은 거의 중립	영덕군, 성주군, 문경시, 창녕군, 영천시, 청송군, 의령군, 임실군
G5: 교육 유입형	교육 사유 순유입(+)이 유일한 특징. 가족 유출이 7개 군집 중 최대. 직업·주택도 유출	삼척시, 안동시, 공주시, 영월군, 영동군, 청양군, 고창군
G6: 직업 유입형	직업 사유 순유입(+)이 7개 군집 중 가장 큼. 주택 유출이 두드러짐. 합계는 거의 중립	영암군, 연천군, 정선군, 울진군, 의성군, 태안군, 영양군, 신안군
G7: 직업 및 주택 유입형	자연환경 유입이 7개 군집 중 최대. 주택도 유입(+). 합계 순유입으로 유일하게 인구 증가	장성군, 홍천군, 양양군, 평창군, 가평군, 강원 고성군, 강화군, 횡성군, 청도군, 구례군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부록 3> 참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내부에서도 인구이동 구조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이동 구조는 지역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입사유별 이동 구조를 살펴보면 가족 관련 사유에서 순유출이 나타나는 경향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가 개인 단

위 이동뿐 아니라 가족 단위 생활 기반 이동과도 일정 부분 관련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단독 인구 유입 정책뿐 아니라 가족 단위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은 동일한 인구 감소 구조를 가진 단일 집단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인구이동 구조를 가진 지역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감소지역 정책은 지역 유형별 특성과 인구이동 구조를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지방소멸 개념의 정의 및 법·정책적 기준 정비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시·도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재원이 정부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정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금이 지향하는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 ‘인구감소지역지원’으로 축소·전이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개념을 기금 설치 단위인 시·도 수준에서 재정의하고, 단순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1항41)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42)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3조43)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와 제5조44)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4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설치해야 하는 기금이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지방소멸의 구체적 위험과 현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공론화된 개념이다. 이후 ‘지방소멸’은 일본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는 핵심 분석 틀로 활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념적 틀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⁴⁵⁾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지역재생잠재력지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K-지방소멸지수(산업연구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⁴⁶⁾

그러나 ‘지방소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스다 히로야(2015)⁴⁷⁾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이윽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그 지역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소멸된 지역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⁸⁾ 또한 ‘소멸 가능성’과 관련하여, 마스다 히로야(2015: 30)는 ‘소멸 가능성’을 측정할

4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③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45)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2024, pp.7-9.

46)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2016, pp. 3~17.

송미령·성주인·심재현·서형주,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9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허문구 외,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4-01, 2022.

47)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2015, pp.30-31.

48) 다만, 이정환(2017: 218)은 「마스다 보고서」(2014: 30-31)에서 제시하는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공급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정환,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지방소멸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 21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pp.194-223.)

수 있는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소멸’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소멸하는 ‘지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⁴⁹⁾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⁵⁰⁾에 따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하는 ‘지방’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1992년 이후 폐지된 시·군·구는 모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 통합되거나 행정적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실질적인 의미의 ‘소멸’이라기보다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행정구역 재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지 직전 인구 규모는 약 2.3만 명에서 18.4만 명에 이르러, 인구 감소 그 자체가 행정구역 폐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 이후 폐지(소멸)된 시·군·자치구]

(단위: 년, 명)

구분		폐지 연도	폐지 연도 인구	폐지 사유
경기도	오정구	2016	184,073	부천시 일반구 폐지
경기도	용진군	1995	13,773	인천시 이관
전북특별자치도	옥구군	1995	65,075	군산시 통합
전라남도	승주군	1995	73,071	순천시 통합
경상북도	군위군	2023	23,340	대구시 편입
경상북도	금릉군	1995	69,461	김천시 통합
경상북도	선산군	1995	64,588	구미시 통합
경상북도	영풍군	1995	55,197	영주시 통합
경상남도	진양군	1995	74,046	진주시 통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49) 기존 연구들은 ‘지방소멸’에서의 지방의 단위를 마을부터 국가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김현호·이제연·김도형,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p.19-51.)

5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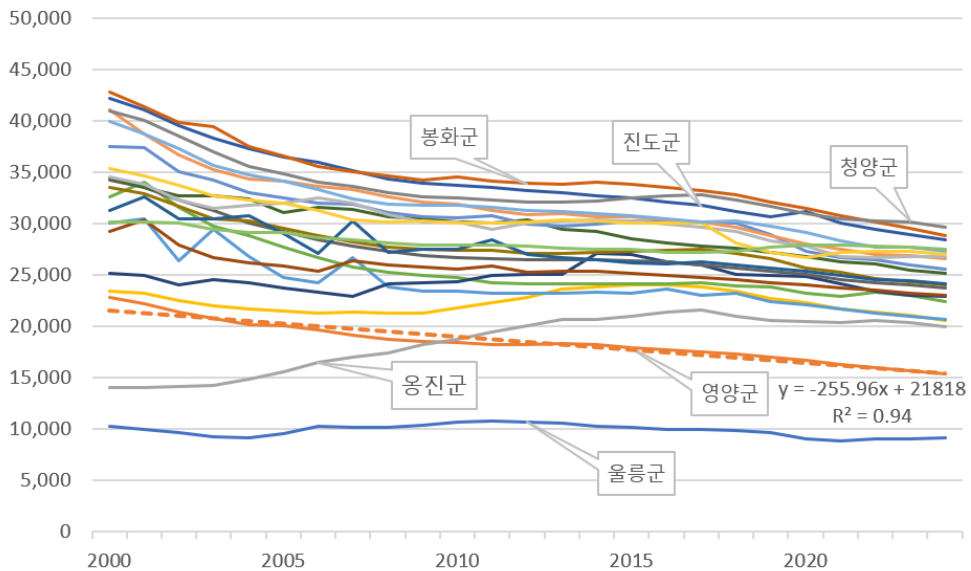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인구수 3만명 이하인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추이를 [그림]에서 살펴보면, 울릉군과 영양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증장기적으로 약 2만명 내외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울릉군은 2000년 이후 약 1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영양군은 2000년대 초반 약 2만명 수준에서 연평균 약 250명씩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약 1만 5천명의 인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영양군과 울릉군도 인구 감소 사유로 행정적 '소멸'에 이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나머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만으로 장래에 소멸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4년 기준 인구수 3만명 이하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 추이]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양군의 인구는 [표]와 같이 2040년 기준 14,619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2000년 당시 인천광역시 울진군의 인구가 14,008명⁵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행정적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구 규모 감소만을 근거로 영양군이 2040년에 소멸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0년 대비 2040년까지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하면, 경상북도 전체 51) 1995년 울진군 인구는 12,624명이었다.(국가통계포털(2010년 행정구역 기준 인구 추이(1975-2010))

는 △7.9%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영양군은 △7.6% 감소에 그쳐 감소 폭이 오히려 더 작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지방소멸'의 위험은 영양군 개별 지역보다 경상북도 전체 차원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상북도 및 영양군 장래인구추계]

구분	인구변동요인별	2020(A)	2025	2030	2035	2040(B)	(B-A)/A
경상북도	인구(천명)	2,652	2,596	2,552	2,504	2,441	△7.9
	출생아수(명)	13,076	11,348	12,706	12,672	11,189	△14.4
	사망자수(명)	22,333	25,208	28,093	31,050	34,706	55.4
	순이동자수(명)	851	1,080	3,656	4,551	5,816	583.4
	조출생률(인구천명당)	5	4	5	5	5	△7.1
	조사망률(인구천명당)	8	10	11	12	14	68.8
영양군	인구(명)	15,823	15,480	15,228	14,939	14,619	△7.6
	출생아수(명)	48	42	44	45	39	△18.8
	사망자수(명)	236	253	272	289	299	26.7
	순이동자수(명)	△8	119	116	132	141	△1,862.5
	조출생률(인구천명당)	3	3	3	3	3	△12.1
	조사망률(인구천명당)	15	16	18	19	20	37.1

자료: 경상북도, 「2022년 경상북도 시군장래인구추계 결과」, 2022. <https://buly.kr/NkzWNk> 검색일 2025.12.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인구수 8,696명에 불과한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414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수 2~3만명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약 514명에서 689명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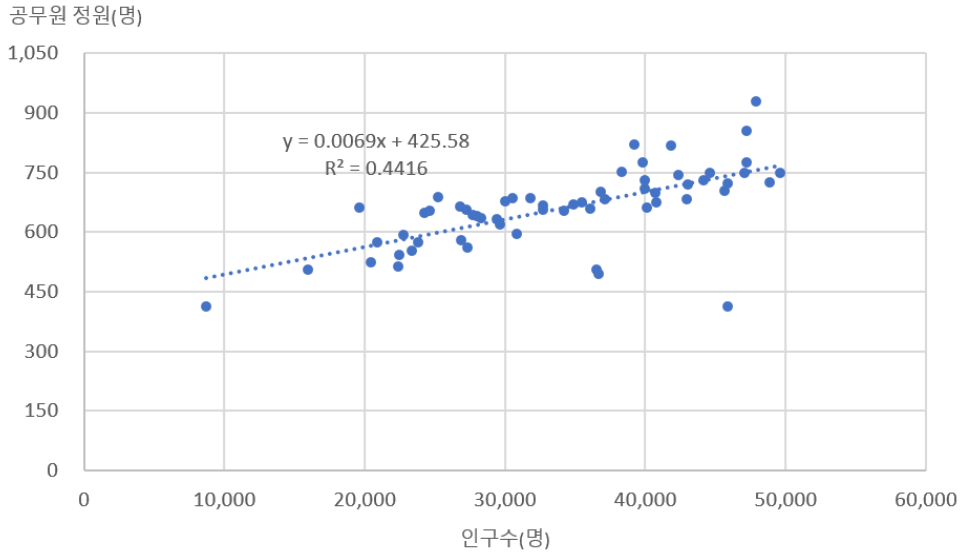
한편, 다수의 도서로 구성된 울진군의 경우 인구수는 19,636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행정 인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구 감소가 곧바로 지역의 행정적·사회적 소멸로 귀결된다는 단선적 가정은 현실과 차이를 보인다. 즉, 지역의 존속 여부는 단순한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지리적 특성, 대체 불가능한 기능,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역소멸을 판단하는 접근은 충분히 뒷받침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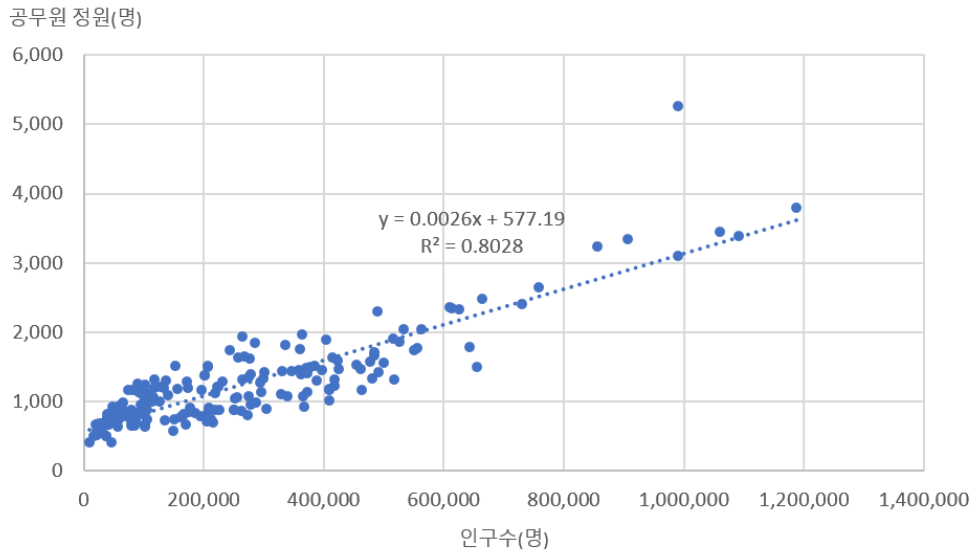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적 의미에서의 ‘지방소멸’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없으며, 현행 제도와 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그러한 형태의 소멸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지방소멸 방지’에 앞서 지방소멸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어떠한 현상과 위험을 정책적으로 대응 대상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개념적·정책적 정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무원 정원(인구 5만 명이하)]



자료: 행정안전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무원 정원]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도’만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 고려 요소가 반영된 행정적 분류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소멸위험지역⁵²⁾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의 구조적 원인(청년 유출, 고령화, 경제기반 약화 등)에 대응하여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및 중장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의미하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도 연계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해당 사업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파악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의 범위도 상이하다. 다수의 관련부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대응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⁵³⁾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방식이 지방소멸과 동일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⁵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⁵⁵⁾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 비중,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규모, 인구감소율과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이동 추세, 재정여건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초지방

52)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시된 ‘소멸위험지역’ 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히로야(2014)가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표기한 것이며,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행정구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지역은 다른 변수의 변동이 없을 경우 약 30년 후 해당 지역 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2025, p.255.

5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치단체이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도’만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 고려 요소가 반영된 행정적 분류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앙부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을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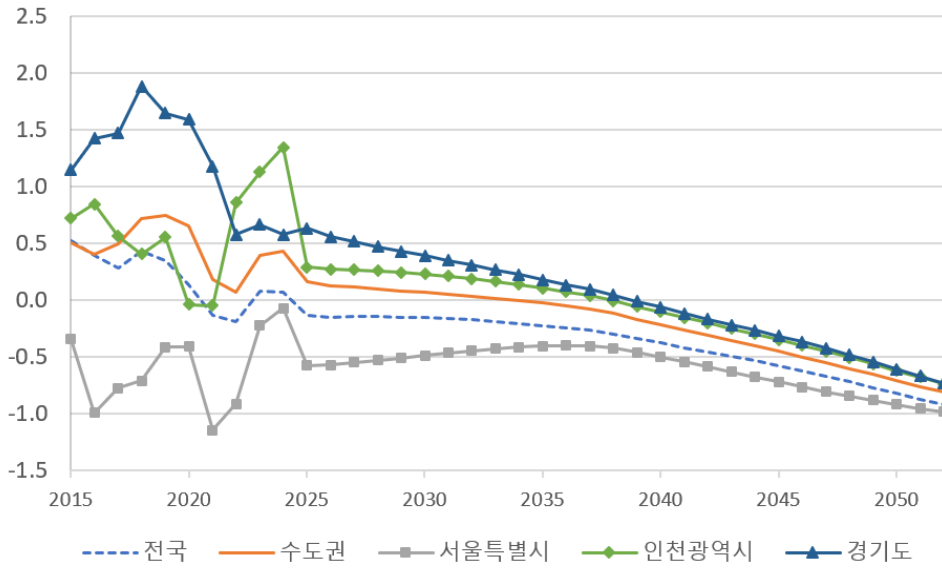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모든 시·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실제 배분은 시·군·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지향하는 ‘시·도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 기능이 약화되고,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정책적 초점이 전환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초래한다.

이러한 제도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소멸 개념을 기금 설치 주체인 시·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감소 현상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찰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소멸’은 광역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인구 유지 능력을 상실하는 구조적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규모·재정력·경제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을 동일 개념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은 법적·개념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 [그림]들과 같이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시점에서는 지방소멸 판단 기준을 상대적 인구 감소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적 인구 규모의 지속적 축소 여부와 그 추세의 구조적 고착성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순한 상대 비교는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 감소의 절대적 속도와 규모는 해당 지역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6)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2025, p.255.

[수도권 장래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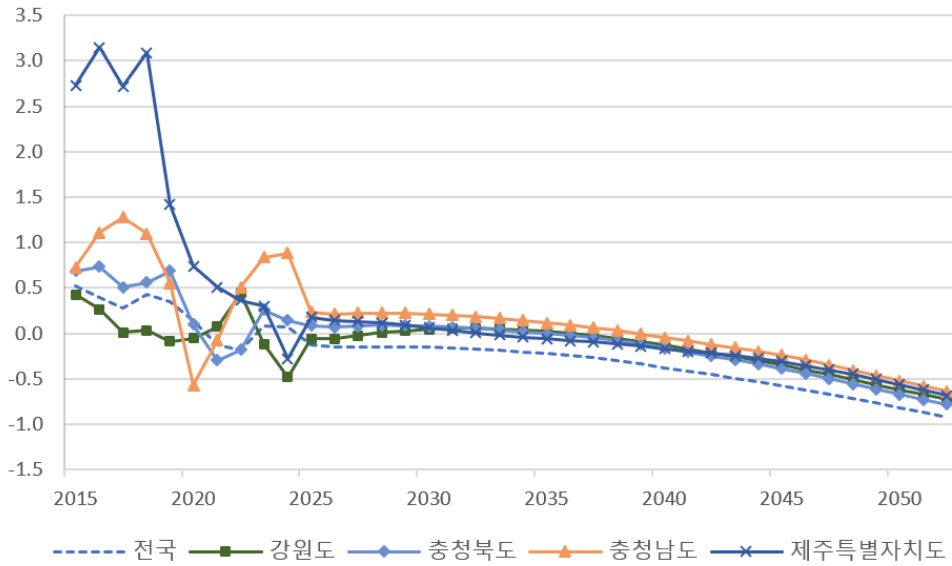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년대비 인구수 증가율이 전국 기준보다 높은 광역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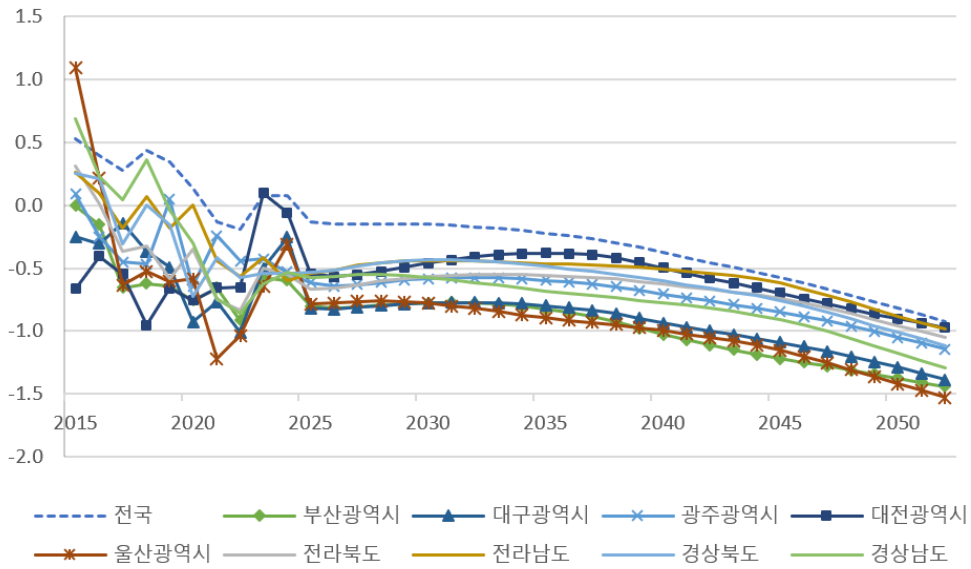


주: 수도권 및 세종시 제외

자료: 국가통계포털(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년대비 인구수 증가율이 전국 기준보다 낮은 광역시·도]

(단위: %)



주: 수도권 제외

자료: 국가통계포털(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셋째,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 중심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기반의 국토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학교·병원·상점과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축소·소멸되고, 교육·의료·돌봄 등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과정 또는 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방소멸의 주요 징후로서 인프라 상실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적정 제공 수준이나 인프라 접근성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기준의 부재는 지방소멸대응정책이 과학적·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단순한 인구 규모 확대라는 정량적 목표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정책은 ‘상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인프라가 얼마나 감소할 경우를 위기로 간주할 것인지에

57)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대한 정량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위기 담론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성과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농업 기계화 및 산업 구조 전환과 같은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라는 자연스러운 변화까지 지역 시스템의 붕괴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된 지역에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이 반복되며, 이는 시대적·구조적 변화와 괴리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주민의 실질적 후생 증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유지 및 재정 확보 논리에 의해 ‘소멸 위기’ 담론이 과도하게 소비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소멸대응정책은 정주민구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접근에서 탈피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보장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소방,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최저 서비스 기준(minimum service standards)’⁵⁸⁾을 거리 및 시간 기반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민구를 유지해야만 인프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정주·저밀도 대응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구 감소와 지역 수렴 현상을 구조적이고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집약하는 ‘압축적 국토 관리 전략’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연차륙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8) 정부는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 46)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방침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역별 인구 밀도, 기존 인프라 공급 수준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가. 현황

(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은 연차별 기금 배분의 합리성과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단계 절차를 통해 수립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6월까지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와 구조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투자계획(안)을 작성·제출한다. 이 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서 기금 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는 독립된 평가단이 제출된 투자계획(안)에 대해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포함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한다. 평가단은 계획의 전략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계획의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중앙-지방 간 정책 조율을 통해 계획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투자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다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최종 투자계획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배분액을 확정해 통보하며,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운용계획은 조합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고 조합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도별 집행체계가 완결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절차('25년도 기금)]



- ① 투자계획(안) 작성·제출(지자체→심의위원회, ~6월)
 - 지자체가 인구감소 실태 및 여건 분석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기금 투자계획(안) 수립 후 심의위원회에 제출
 - ② 투자계획(안) 평가 및 결과제출(평가단→심의위원회, 7~10월)
 - 투자계획(안)을 평가단에서 서면·대면 등 평가 후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 ③ 투자계획(안)에 대한 협의·자문(심의위원회↔지자체, ~11월)
 - 심의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투자계획(안)에 대해 협의·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지자체에 송부
 - ④ 투자계획 수정·제출(지자체→심의위원회, ~11월)
 -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투자계획(안)을 수정하고 최종 투자계획을 수립 후 심의위원회에 제출
 - ⑤ 지역별 배분안 안내(조합, ~12월)
 - 지자체 조합은 최종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합회의 의결
- *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조합장이 수립하여 조합회의 의결로 확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 선정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전문적 심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정책 펀드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되었다.

사업 선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사전 협의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펀드 운용사 또는 민간 시행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인허가 진행 상황, 사업성 검토, 개발금융 및 특례보증 연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다.

둘째, 자펀드 출자 신청 단계이다. 자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운용사(매년 공고를 통해 선정) 앞으로 출자 심사를 신청한다. 이 때 민간투자자 모집 계획, SPC 설립(또는 설립 계획), 총사업비의 20% 이내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승인 단계이다. 운용사 내부 독립 위원회가 운용역량, 수익성, 지역활성화 효과, 리스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출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모펀드 출자자(정부·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사업 선정 기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도권 사업, 사행성·혐오시설, 위험물 관련 사업 등은 제외되나, 그 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본 선정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처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 없이 지방자치단체·민간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펀드가 후순위로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창의적이고 대규모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1)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지역별로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지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정주여건 개선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재정 유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선정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⁵⁹⁾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가 요구되는 지역⁶⁰⁾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⁶¹⁾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수단으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개선 자체가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의 정착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5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방식은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별 투자 규모와 기대 효과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은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 분석 결과, 정주여건 개선의 정책 목표로 볼 수 있는 정주민구 1인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13억원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민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도 1인당 약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민구가 성과지표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업비	정주민구 1인당 사업비
정선군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주민구 증가	21명	28,500	1,357
		일자리 창출	4명		
		이용객 수 증가	2.5% 증		
		의료서비스 만족도	85점		
진안군	진안군 행복주택 건립	정주민구 증가	27명('28)	3,000	111
부안군	부안밀 제빵학교· 베이커리타운 조성	교육생 중 정주민구수	21명('26) ¹⁾	1,700	81
		생활인구수	7천명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정주민구(근로자수)	10명('27)	500	50
		방문객수	2만명('27)		
성주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확대	+70호	-	-
강화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유입	70명('28)	-	-
경남 고성군	종합목표	정주민구	48,005명(2024) → 48,000명(2028)	-	-
	종합목표	귀농·귀촌 인구	연 1,000명 확보 (904명(2024) → 1,000명(2028))	-	-

주: 1) 부안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71쪽은 '교육생 중 정주민구수' 최종목표를 21명('26)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9쪽은 '28년 5명, '29년 7명으로 제시
 자료: 지역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한편, 다음 [표]에 따르면 정주민구 증가는 지역 내 소비 확대, 지방세수 증가, 생산유발 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이전지출, 의료·돌봄, 교육·보육 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증가 시 연간 정량적 주요 효과]

편익 항목		비용 항목	
효과 영역	측정 지표	효과 영역	측정 지표
① 직접 소비효과	지역내 소비지출	① 사회보장 이전지출	기초생계·주거·의료급여
② 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기여	②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원 지급
③ 지방세수 효과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③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재가돌봄, 방문요양 등
④ 지방교부세 효과	기준재정수요 증가	④ 의료·보건 서비스	공공보건의료, 방문간호, 의료급여
⑤ 사회서비스 존속 효과	학교·의료·대중교통	⑤ 교육·보육 서비스	소규모 학교 운영, 방과후, 보육
⑥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 내 고용유발	⑥ 귀촌·이주 정착 지원 등	이주지원금, 주거·창업 보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재정효과는 유입 인구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일부 유형에서는 순 재정효과가 음(-)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순 재정효과가 양(+)의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와 소비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인한다. 반면, 아동·청소년 및 고령 인구는 교육·보육, 의료·돌봄, 사회보장 지출 등 공공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순 재정효과가 낮거나 음(-)의 값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인구는 의료 및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시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 등 주요 경제지표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이는 동일한 인구 유입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정주민구

의 편익으로 볼 수 있는 지역별 1인당 소비지출 수준은 다음 [표]와 같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별 산업구조, 재정자립도, 소비기반 등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정 투입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정책 효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자원배분 및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2024년 기준)]

(단위: 천원)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지역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제천시	14,633	강화군	6,419	영양군	2,933
홍천군	10,533	울진군	4,301	순창군	2,732
삼척시	9,435	옹진군	2,967	신안군	1,786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PoplDcrsForm.do>(검색일: 2026.3.18.)

이처럼 인구 유입에 따른 재정효과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유입 인구의 구조적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른 재정 유입 및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자비용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선 비용효과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약 11배 수준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해 정책펀드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된 정책금융 수단으로,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통해 최소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으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펀드는 펀드 방식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일환으로,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활성화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⁶²⁾

2025년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 규모는 총 6,000억원이며, 현재까지 8개 프로젝트에 3,228억원의 투자가 결정되었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약 3조 6,345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모펀드 투자비율은 약 8.9%이며, 레버리지 효과는 약 11.3배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모펀드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의 사업투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 제도 설계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민간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민간을 통한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해 공공성과 정책 타겟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62) 박진경·양원탁,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재정연구원, 2024,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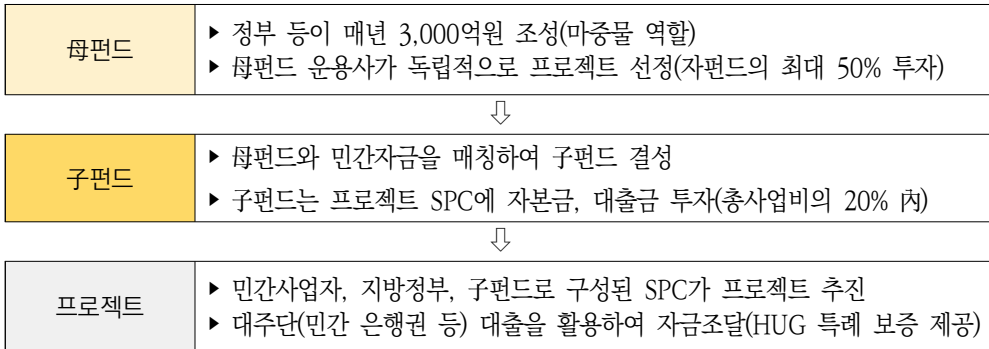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총사업비 및 모펀드 투자금액]

(단위: 억원,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합계
총사업비(A)	4,816	8,191	23,338	36,345
모펀드 소진금액(B)	457	786	1,985	3,228
2024	68	786	1,565	2,419
2025	389	0	420	809
비율	14.2	24.3	61.5	100.0
레버리지 배수(A/B)	10.5	10.4	11.8	1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 설계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사업 관련 정보는 사업 주체가 관리하며, 모펀드 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가 자펀드 출자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⁶³⁾은 투자자의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운용 개입을 제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출자기관은 개별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펀드 구조상 출자자는 특정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모든 출자자가 동일 사업에 출자 비율에 따라 참여하게 되므로,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기획예산처는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위원회 및 운용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 운용사의 수익성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자금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방식은 제도 설계와 사후 관리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민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와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정책목표와 투자 의사결정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투자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10년간(2022~2031년) 9.75조원 규모로 출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 및 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2021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예산에는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500억 원만 편성·집행되었으며 이후 매년 1조원씩 편성·집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기금관리조합이며, 2025년 사업시행주체 이월액은 1,007.7억원이다. 한편, 사업시행주체는 기금관리조합이지만, 실제 출연금 집행주체는 기금을 배분받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다.

[연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시행주체 이월액]	불용액
2022	750,000	-	-	750,000	750,000 [750,000]	-	-
2023	1,000,000	-	-	1,000,000	1,000,000 [1,000,000]	-	-
2024	1,000,000	-	-	1,000,000	1,000,000 [878,724]	- [121,276 ¹⁾]	-
2025	1,000,000	-	-	1,000,000	1,000,000 [884,984]	- [115,016 ¹⁾]	-
2026	1,000,000	-	-	-	-	-	-

주: 1) (기초지원계정 이월액) 기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분할지급 도입에 따른 미배분 및 운영비 잔액 등 (2024) 239억원 (2025) 219억원

(광역지원계정 미출자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액 1천억 중 사업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출자되지 않은 미집행 잔액 (2024) 974억원, (2025) 931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나. 분석의견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 및 자금 운용 구조 개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적시 집행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분할 출연, 출연 시기의 조정, 실제 집행 수요와 연계한 단계적 출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집행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가 설치 주체이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다.⁶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⁶⁵⁾으로 구성되며, 2023~2025년 동안 매년 1월 정부출연금 1조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계좌의 월별 입금액, 지출액 및 잔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23년에는 1월 입금된 기금 중 9,967억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다. 반면 2024년에는 1조원이 입금된 이후 2월에 6,284억원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으며, 2025년에는 2월 기준 4,948억원만 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지 않은 자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여유자금 형태로 누적되면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 제6항및제2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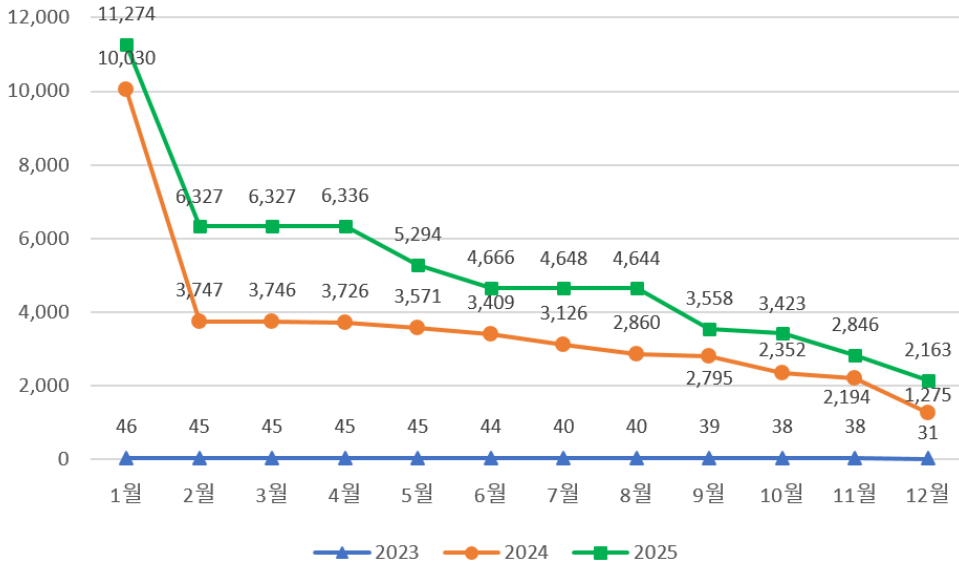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월별 잔액 내역]

(단위: 억원)



(단위: 백만원)

연도	월	입금	출금	잔액	연도	월	입금	출금	잔액	
2022	9	750,001	748,038	1,963	2024	5	2	15,485	357,149	
	10	1	3	1,961		6	192	16,431	340,910	
	11	1	30	1,932		7	2	28,307	312,606	
	12	1	684	1,249		8	2	26,577	286,031	
2023	1	1,000,008	996,700	4,557		9	288	6,834	279,485	
	2	2	32	4,527		10	2,008	46,278	235,214	
	3	2	30	4,498		11	1	15,815	219,401	
	4	2	20	4,479		12	597	92,528	127,470	
	5	2	10	4,471		2025	1	1,000,004	121	1,127,352
	6	21	52	4,440			2	115	494,797	632,670
	7	1	435	4,006			3	5	25	632,651
	8	1	22	3,985			4	1,025	35	633,641
	9	1	98	3,889	5		5	104,213	529,433	
	10	1	93	3,798	6		1,164	63,994	466,602	
	11	1	45	3,754	7		5	1,827	464,781	
	12	1	695	3,060	8		5	414	464,372	
2024	1	1,000,001	25	1,003,037	9		1,593	110,123	355,841	
	2	47	628,413	374,671	10		5	13,547	342,299	
	3	2	23	374,649	11		2,410	60,141	284,568	
	4	2	2,018	372,633	12		2,092	70,408	216,253	

주: 월별 입금액은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의 집행 부진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미집행액 총액은 2025년 말 기준 0.95조원이다. 기금사업의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배분금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금액	집행률		
광역지원계정	735,365	708,041	96.3	27,324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2,664,800	1,782,313	66.9	882,487
	관심지역	137,800	96,841	70.3	40,959
합계	3,537,965	2,587,194	73.1	950,771	

주: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은 3.75조원이며, 0.2조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투자되었고, 120.35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비용으로 지출됨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의 미시행 사업(2025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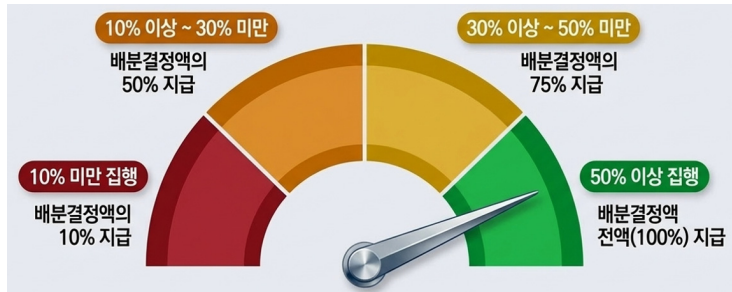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미시행 사업(집행률 0%)		구분	미시행 사업(집행률 0%)	
	사업수	배분액(A)		사업수	배분액(A)
2022	1	300	2024	24	45,480
2023	9	19,925	2025	85	140,08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금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4년 2월부터 집행률을 반영한 배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투자계획에 기반한 기금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분할 배분 기준]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러나 2025년 12월 기준 약 0.95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구조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집행되지 않은 대규모 자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것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분할 출연, 출연 시기의 조정, 실제 사업 집행 수요와 연계한 단계적 출연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⁶⁾ 현재와 같이 연초에 대규모 자금을 일괄 출연하는 방식은 상당 규모의 미집행 여유자금을 발생시켜 자금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출연 시기와 규모를 실제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 적체를 최소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적시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실제 사업 준비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자금 교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66) 지방소멸대응기금 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자금으므로, 교부금의 성격도 갖고 있다.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미출자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모펀드 출자가 수시납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자금액은 636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미출자 상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해 정기예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자금 활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82조(67)는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⁶⁸⁾ 이에 따라 실시되는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63조(69)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프로젝트 공정률에 따라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납입하는 수시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계획된 출자금 전액이 즉시 집행되지 않고 상당 규모의 자금이 일정 기간 유후자금으로 남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67)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등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69)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소멸대응기금),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이 모펀드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6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한 금액 역시 62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모펀드가 사업 추진 일정 및 프로젝트 공정률에 연계하여 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금은 실제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운용 대기자금으로 보유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관리주체는 수시납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집행 자금에 대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 및 자펀드 출자액('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출자기관 모펀드 출자액	모펀드별 자펀드 출자액
'24년 모펀드	420	414
'25년 모펀드	216	211
합계	636	625

자료: 기획예산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실출자금액('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

프로젝트명		자펀드 결성일	모펀드 실출자금액		
			2024	2025	합계
1호	인구감소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5.9.26.	0	0	0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5.8.21.	0	39	39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5.2.28.	0	214	214
4호	관심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0	0	0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결성 중 ¹⁾	0	0	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결성중	0	0	0
7호	인구감소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2.10.	0	372	372
8호	인구감소충남 태안, 「Seed Farm 1호」	결성중	0	0	0
합계(A)			0	625	625
펀드 누적 조성액(B)			3,000	6,000	6,000
실투자비율(A/B)			0.0%	10.4%	10.4%

주: 1) '26.4.9일 자펀드 결성 완료

자료: 기획예산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2,000억원 출자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 실제 출자액은 212억원에 불과하여 1,788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러한 미출자 자금을 수시 입출금 필요성, 원금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기예금(이자율 2.60~3.74%)에 예치하고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 모펀드 운용사는 미투자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여,⁷⁰⁾ 2024년 모펀드 5.4억원('25년말 기준)의 미투자금을 통해 2025년 말 약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펀드 운용사의 미투자금 및 운용수익('25년말 기준)]

구분	모펀드 미투자금	미투자금 운용수익
'24년 모펀드	5.4억원	2.6억원
'25년 모펀드	5.2억원	3백만원 ¹⁾
합계	10.6억원	2.6억원

주: 1) '25.12.19일 최초 설정 이후 '25년말까지 발생한 수익
자료: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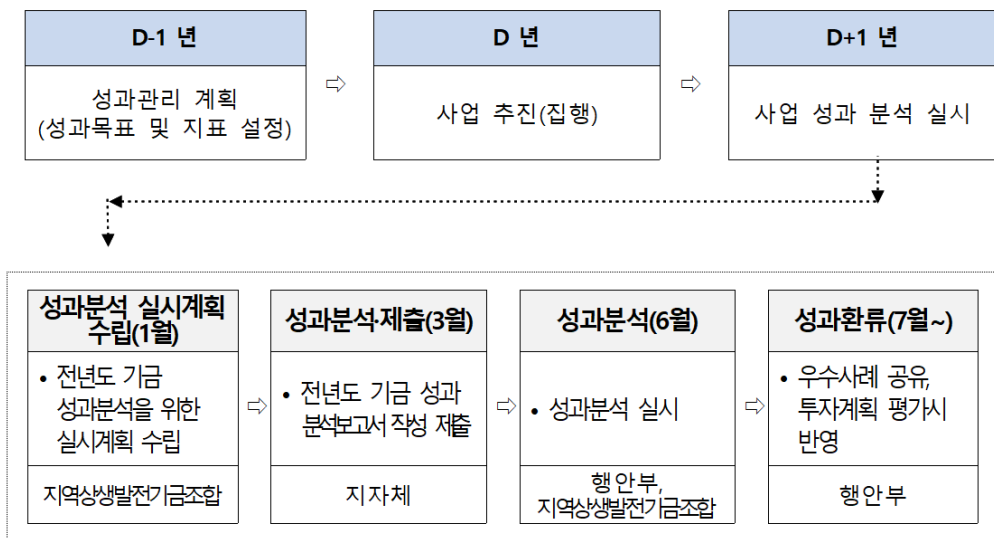
70) 모펀드 미투자금은 여유자금 확보, 단수 조정 등의 사유로 자펀드에 투자되지 않은 유보금으로,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됨

* 기업신용등급 AA 이상 금융기관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등

가.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71)는 기금관리조합이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7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73)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절차]



주: '22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은 사업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간소화하여 추진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23, p.3.

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7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 공개 <<https://ebook.lofa.or.kr/home/list.php?code=2015>>

7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며, 연도별 성과분석 기관은 지방행정연구원('22),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23),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24)이다.

성과분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세부계획」에 따른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평가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된다. 성과분석방법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항목]

영역	항목	
	2024	2025
1.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20)	1-1. 계획수립의 합리성	1-1. 계획의 합리성
	1-2. 사업구성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1-2. 자원배분의 적절성
2. 사업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및 효율성 (30)	2-1. 사업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1. 사업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2. 사업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2. 사업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3. 사업성과 및 성과달성 노력 등 (50)	3-1.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3-1.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3-2.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도	3-2.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도
	3-3. 환류 노력의 충실성	3-3. 환류, 사후관리의 충실성
	3-4. 정책효과성	3-4. 사업효과 측정
가점 (+5)	우수사례 발굴 추진(중앙부처 수상 경력, 수범사례 언론보도 등)	가점-1. 중앙부처 수상 경력, 수범 사례 언론보도
		가점-2. 성과분석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는 지자체

자료: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4, p.21.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5, p.15.

나. 분석의견

(1)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 불명확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후 4년 간(2022~2025),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가 0.604%p로 산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이후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정책 효과가 인구 지표로 나타나기에 시차가 짧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2026.1.20.)의 요구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지방소멸대응정책에 따른 인구이동 실태와 정책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⁷⁴⁾ 이러한 평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 4년(2018~2021년)과 지정 이후 기간(2022~2025년)을 비교한 데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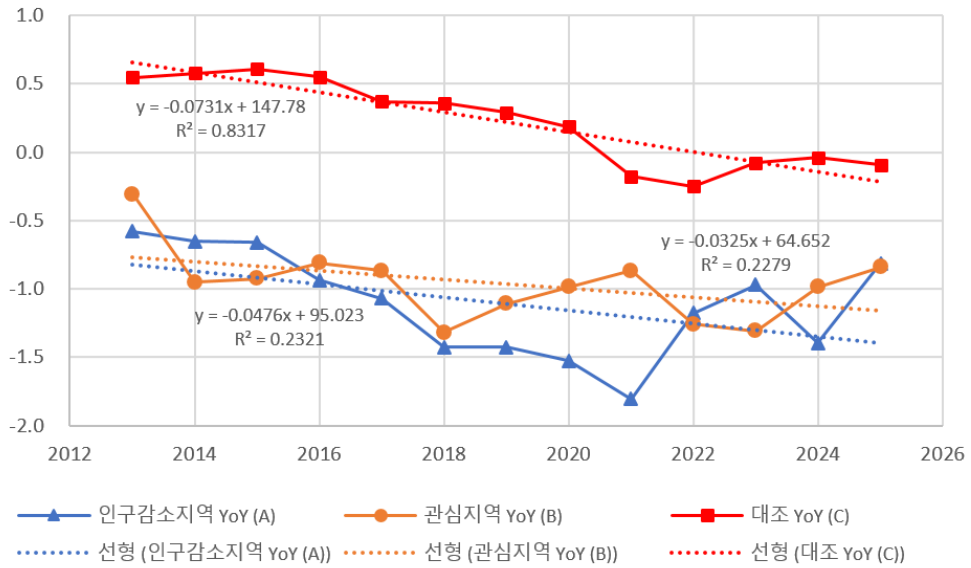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시기 비교는 분석 기간 설정 측면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2018~2021년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중첩된 시기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확대되며 인구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시기이다. 특히 2018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심지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일부 반등이 관찰되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며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이후 관찰되는 인구증가율의 개선은 정책 효과 외에 이전 기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시기 간 비교에 근거한 정책 효과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정교한 접근에 기반한 검증이 요구된다.

7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증가세를 보인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전입 사례 중 지역 간 이동은 11%에 불과해 '제로섬 게임'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발 전입(27%)보다는 인접 광역시 및 도시 지역에서의 전입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은퇴 준비층)와 20대(청년층)의 유입이 두드러진 반면, 20대와 60대 이상(고령층)의 유출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퇴자 정착, 결혼·출산·육아, 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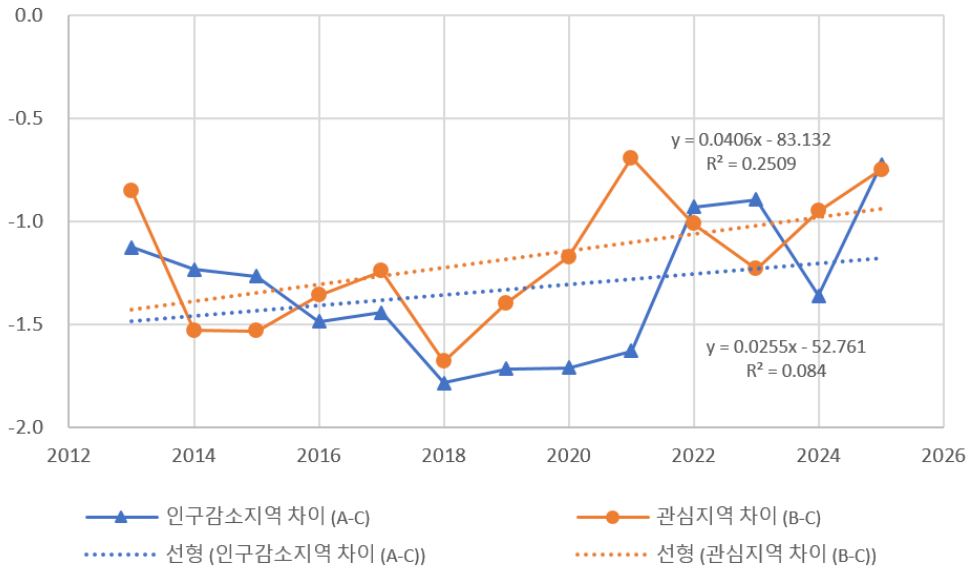
(단위: %)



주: YoY(Year-over-Year)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을 바탕으로 작성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차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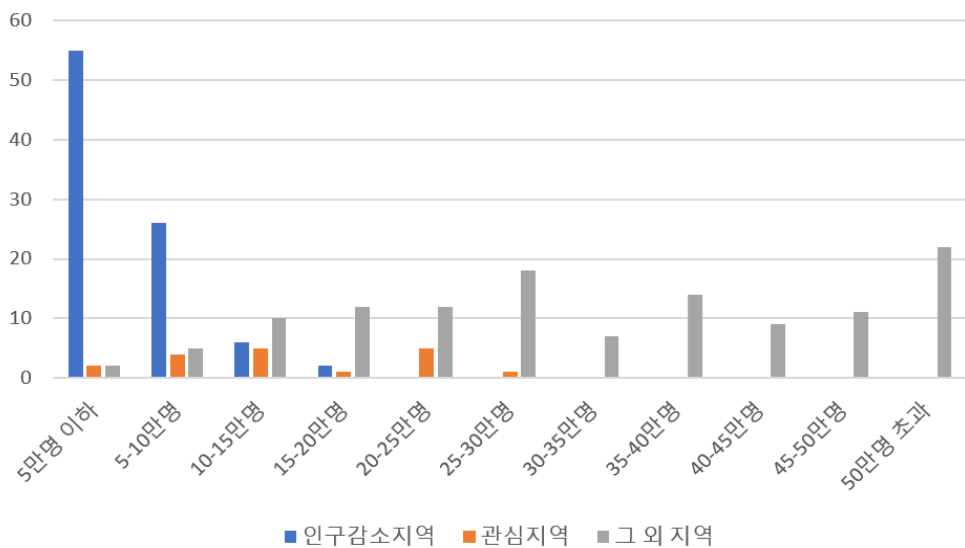
주: YoY(Year-over-Year)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을 바탕으로 작성

이에 본 절에서는 단순 비교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기간(2022~2025년)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준실험적 계량분석을 수행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인구감소대응정책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계량분석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증가를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고정효과 이중차분법(Two-Way Fixed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TWFE DID)을 활용하였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규모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분석 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규모에 따른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기준 인구 5만~20만명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TWFE DID 분석을 수행하였다.⁷⁵⁾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및 그 외 지역(시, 군, 구)의 2025년 인구수 현황]

(단위: 개)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작성

75) 본 연구는 2013~2025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준실험적 분석 결과, 정책효과는 식별 가정과 비교집단 구성에 따라 상당한 민감성을 보였으며, 평행추세 가정 위반과 지역별 효과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표본 규모 확대는 검정력을 높이는 반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검정력과 비교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인구 5만~20만명 규모의 기초자치단체(61개, 61클러스터)를 주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분석 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일반지역 122개⁷⁶⁾로 구분된다.

[분석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pop_growth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당해연도 인구 - 전년도 인구) / 전년도 인구 × 100
표본 조건	population	202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5만명 이상 20만명 이하인 시·군·구만 포함 (71개)
처치 변수	treat_group	0=일반지역(대조군), 1=관심지역(처치군), 2=인구감소지역(처치군)
	is_decrease	인구감소지역 여부 (1=인구감소지역, 0=기타)
	is_interest	관심지역 여부 (1=관심지역, 0=기타)
DID 변수	post	정책 시행 이후 기간 여부: 2022년 이후=1, 2021년 이하=0
	did_decrease	is_decrease × post 교차항 - 인구감소지역 TWFE DID 핵심 변수
	did_interest	is_interest × post 교차항 - 관심지역 TWFE DID 핵심 변수
보조 변수	event_time	정책 기준 시점 대비 상대 연도 (2022=0 기준)

2025년 주민등록인구 5만~20만명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는 총 71개로, 인구감소지역 34개·관심지역 10개·일반지역 27개이다.

[분석 대상 지역 구성]

구분	지역 수	분석 역할	비고
인구감소지역	34개	처치군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2025년 인구 5~20만 해당
관심지역	10개	-	전체 관심지역 18개 중 2025년 인구 5~20만 해당
일반지역	27개	대조군	비지정 지역 중 2025년 인구 5~20만 해당
합계	71개	-	관측수: 923 (지역×연도, 2013~2025)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작성

76)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비지정 지역, 비교 집단(대조군)으로 활용

TWFE DID 적용에 앞서 전처치 기간(2013~2021년) 동안 처치·통제집단 간 추세의 유사성을 Event Study 기반 Wald 검정으로 검증하였다. 기준연도(2021년)를 제외한 전처치 8개 연도(2013~2020년)의 계수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일반지역 간 비교에서 $\chi^2(8)=2.749(p=0.949)$ 으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평행추세 가정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통제하는 TWFE DID 모형을 적용하였다.

[사전 평행추세 검정 결과(Event Study 기반 Wald 검정)]

비교 집단	Wald $\chi^2(8)$	p값	판단
인구감소지역 vs 일반지역	2.749	0.949	평행추세 가정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음

주: 1. 귀무가설: 정책 시행 이전 기간(2013~2020년) 동안,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인구증가율 추세 차이가 모든 연도에서 동시에 0이다

2. p-value가 유의수준(예: 0.05) 이상인 경우, 평행추세 가정을 기각하지 못함

3. 결과는 평행추세 가정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위배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표본 규모에 따른 검정력(statistical power) 한계로 인해 실제 추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감지되지 않을 수 있음(귀무가설 기각 불가 \neq 귀무가설 참)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을 바탕으로 작성

TWFE DID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추정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2022~2025년 평균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대조군 대비 +0.604%p 높게 추정되었다. 처치군(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대조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 추정 결과 (TWFE DID)]

구분	방법론	ATT(%p)	클러스터 SE	p값	해석
인구감소지역	TWFE DID	+0.604	0.570	0.29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주: 1. ATT(+)는 처치집단이 비교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임을 의미함

2. 평행추세 가정은 충족되었으나, 처치 내생성 등 추가 제약이 존재

3. 2025년 인구 5~20만 명 지역 한정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을 바탕으로 작성

종합하면, 2012~2025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분석기간: 2013~2025년)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이 단기간 내 인구 감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하였다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정책 효과의 부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정책 시행 이후에도 기존 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이후의 관측기간이 2022~2025년으로 약 4년에 불과하여 정책 효과가 실제 인구 변화로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주민등록인구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증가, 정주여건 개선 등 정책 효과가 발현되는 중간 경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확충, 지역 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인구 지표만을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지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고용, 생활인구,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의 한계]

한계	내용
관측 기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이후 4년(2022~2025)으로, 정책 효과가 인구 지표로 나타나기에 시차가 짧을 수 있음
종속변수	단기 인구 지표에 한정되어 투자·고용·정주여건 등 정책 효과의 중간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움
정책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재정지원이 목적인 경우, 인구 지표만으로 효과 평가는 불완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축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가 불명확하고 사업별 성과지표가 이질적으로 설정되어 기금 차원의 성과를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기금 차원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구·생활여건·지역경제 등 핵심 영역별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가 기금 전체 성과로 체계적으로 연계·환류되는 성과관리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복합적 정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계획」⁷⁷⁾은 ‘비전·전략 수립의 적절성’과 ‘사업 효과성’ 등을 주요 성과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정주인구(생활인구) 확보 가능성, 생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정책 투입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기금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투자계획 평가계획」의 성과 관련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주요내용
계획수립 적절성	비전·전략 수립의 적절성	· 기본방향 및 전략 도출과정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사업구상 등 체계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효과성	· 정주인구(생활인구)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활력지원단),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투자계획 평가계획」, 2025, p.13.

77)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활력지원단),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투자계획 평가계획」, 2025.

둘째, 개별 사업 단위에서 설정된 성과지표의 이질성 및 한계는 기금 전체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사업별로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설정 기준과 측정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여 사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특히 일부 성과지표들은 다음 [표]와 같이 시설 조성 규모나 참여 인원 수 등 산출(output)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구 유지·유입이나 지역 활력 제고와 같은 정책 효과(outcome)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성과 관련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평가 지표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기금사업별로 설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달성 정도	(광주: 2024): ‘참여 청년인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 ‘드림청년 만족도’ 등 (울산: 2024):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충북: 2024): 공정률 등 (제주: 2024): ‘카툰빌리지 유희공간 조성’, ‘마을 숙소 체류객’, ‘마을공동체 체험객’ 등 (강원 평창군: 2024): 사전철차이행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5.6., p.15-62.

이로 인해 개별 사업 성과를 단순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기금 차원의 정책 성과를 일반화하거나 인구감소대응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본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서도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완화 효과가 성과평가의 핵심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⁷⁸⁾

셋째, 기금 사업의 성과를 상위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환류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⁷⁹⁾

7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2025.6., p.166.

79)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2023, p.22.

목표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성과를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 p.13.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주요 계획 및 평가 문서 전반에서 성과지표가 분절적으로 제시되거나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기금 성과를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성과지표의 부재 또는 부적정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학습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차원에서 정책 목적을 명확히 반영하는 성과목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정책 영역별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 성과지표는 기금 차원의 공통 성과지표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기금 전체의 정책 성과로 누적·환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 체계의 정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개선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광역자치단체의 성과중심 관리체계 보완 필요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상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구축되어 있으나, 전략목표와 연계된 체계적 구조보다는 사업별 산출지표 나열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 수·시설 활용률 등 활동·산출 중심 지표가 주를 이루고, 목표치·산정방식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결과 중심의 실질적 성과관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논리모형 기반의 목표-성과 연계 강화와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통해 투자계획서에 ① 운영 및 관리체계, ② 기금사업 성과관리 체계, ③ 사후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투자계획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황(내·외부 조직체계, 참여주체, 조례 및 지침, 주민참여 방안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성과관리 책임자·부서·과정 및 환류체계 등 성과관리의 구축과 운영 내용을 구체화하며, 사업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 운영주체, 추가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는 다음 [표]와 같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사업 단위별 개별 성과지표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즉, 전략목표-성과목표-세부지표로 이어지는 체계적 성과관리 구조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의 실적지표를 제시하는 ‘사업 실적관리형’ 구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광역시·도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상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현황]

구분	성과관리 체계	성과항목 유형	사업 수
부산	구축	사업 성과	4
대구	구축	사업 성과	6
대전	구축	성과지표 및 목표 없음	1
인천	구축	사업 성과	4
울산	구축	사업 성과	2
광주	구축	성과지표	3
경기	구축	성과지표 및 목표 없음	1
강원	구축	사업 성과	1
충북	구축	사업 성과	1
충남	구축	사업 성과	4
전북	구축	사업 성과	1
전남	구축	사업 성과	3
경북	구축	사업 성과	1
경남	구축	기초지자체 사업 성과	1
제주	구축	사업 성과	3

자료: 광역시·도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과항목의 유형을 보면,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시설 활용률,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 구축 여부 등과 같이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산출(output) 또는 활동(activity) 중심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집행 실적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인구 유입 증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과 같은 중장기적 정책 성과(outcome) 또는 파급효과(impact)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지표 체계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라기보다는 ‘산출 중심 관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목표치나 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성과지표가 존재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사후 점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한다. 특히 목표값이 설정되지 않거나, 기준연도 및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형식적 구축과 실질적 운영 간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성과지표 및 목표 자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성과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략적 관리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광역단위 기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 간 성과 연계 구조나 종합 성과지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기금 전체의 정책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구축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에서는 일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산출 중심의 단편적 지표 설정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 및 영향 수준의 지표가 부족하고, 목표치 및 측정방법의 명확성이 미흡하며, 광역 단위 전략성과의 연계 구조도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한 사업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정책목표와 연계된 결과 중심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한 목표-투입-산출-성과 간 인과구조의 명확화, 정량적 목표치 설정, 그리고 광역·기초 간 성과연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목표 설정 방식 개선 필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서 사업목표를 정량·정성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률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동구는 시설 건설 중심 지표를 제시한 반면, 전북 남원시는 인구 유입 등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작성 수준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투자계획 작성 지침을 개선하여 결과지향적 사업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목표를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목표와 관련한 투자계획서 작성 기준]

3. 사업 목표

【기술 방향과 평가의 주안점】

- 연차별 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참고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 목표 선정
- 단순 실적지표(예: 예산 집행률)가 아닌 사업의 성과에 해당하는 목표 선정
- 사업 목표의 현실성(달성 가능성), 측정 방법의 객관성 및 측정 가능성 등 고려
- 필요한 경우 사업 목표의 내용이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추가 설명 포함 가능
- 제출한 사업목표는 추후 성과분석 지표와 연동

〈작성 예시〉

구분	사업 목표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량					
정성					

사업 목표	지표의 적절성	측정방법의 객관성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기술 방향과 평가의 주안점】

- 연차별 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참고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 목표 선정
- 단순 실적지표(예: 예산 집행률)가 아닌 사업의 성과에 해당하는 목표 선정
- 사업 목표의 현실성(달성 가능성), 측정 방법의 객관성 및 측정 가능성 등 고려
- 필요한 경우 사업 목표의 내용이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추가 설명 포함 가능
- 제출한 사업목표는 추후 성과분석 지표와 연동

자료: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투자계획 작성 안내서」, 2023, p.9.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5년 투자계획 작성 안내서」, 2024.1, p.17.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 2025.1, p.19.

그러나 해당 지침은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제 투자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는 사업목표가 곧 성과지표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목표를 ‘결과지향적 성과목표(outcome-oriented performance goal)’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공정률이나 집행 실적과 같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를 중심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⁸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동구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성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목표는 공정률, 시공일정 준수율, 시공품질검사 통과율, 무재해 일수, 주차장 설치율, 연간 이용자 수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부분 시설 건설 과정이나 운영 실적을 측정하는 산출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역 주민 복지시설 공급사업인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즉 사업 추진 과정의 관리지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이 실제로 지역 인구 유입이나 지역 활력 제고에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80) <부록 5> 참조

[2026년 부산 동구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성사업' 목표]

3. 사업 목표

○ 정량적 목표 및 정성적 목표

구분	사업 목표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량	공정률	공정률	20%	70%	100%
	시공일정준수율	계획일정 대비 지연일	±10일이내	±5 이내	±0일 이내
	시공품질검사 통과율	감리 및 품질검사 승인율	80%	90%	95%
	무재해 일수	무재해 지속일수	100일	300일	450일
	주차장 설치율	실제설치/계획면수	10%	70%	100%
	연간 이용자수(단기)	운영일지	-	-	3,000명이상
	프로그램 참여율(중기)	운영일지	-	-	80%
정성	주거환경개선	설문조사	만족70%	80%	90%
	건축디자인품질	설계구현용역	적합률80%	90%	95%
	안전성 확보	상주감리 점검보고서	지적3건 이하	1건 이하	0건 유지
	사회적가치(장기)	지역업체이용, 주민고용	20%	30%	40%

○ 지표분석(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사업 목표	지표의 적절성	측정방법의 객관성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공정률	○	계산가능	○
시공일정 준수율	○	일수 산정가능	○
시공 품질검사 통과율	○	검사비율계산	○
연간 이용자수	○	운영일지	○
프로그램 참여율	○	운영일지	○
주거환경개선	○	누적일수계산	○
건축디자인품질	○	설문점수계산	○
안전성 확보	○	전문가평가	○
사회적가치	○	업체고용율 계산	○

자료: 부산광역시 동구,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025.12, p.23.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표를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조성, 가공체험센터 구축, 스마트 APC 구축, 부지 매입 등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동시에 단지 내 입주 농업인 수를 기준으로 한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와 직

접적으로 연계되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주민 대상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효과와 지역 주민 체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26년 전북 남원시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기반조성 사업' 목표]

3. 사업 목표						
○ 정량적 목표 및 정성적 목표						
구분	사업 목표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량	기반시설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정공정 달성률	기본계획 및 착공	기반시설 착공	준공	-
	가공체험 센터	예정공정 달성률	-	-	설계 및 착공	준공 및 운영
	스마트 APC	예정공정표	-	-	설계 및 착공	완료 및 운영
	부지 매입	부지 매입율	매입완료 (100%)	-	-	-
	인구 유입	단지 내 입주 농업인 수	-	20명	50명	150명
정성	시설 이용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	-	-	≥85점
	주민대상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	-	-	≥85점
○ 지표분석(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사업 목표	지표의 적절성	측정방법의 객관성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기반시설 조성	핵심 인프라 구축 일정 점검 측면에서 적절	설계용역완료, 착·준공 시기 등으로 지표 확인	건축 규모 고려 추진 목표로 적절			
가공체험 센터	인프라 구축 일정 점검 측면에서 적절	설계용역완료, 착·준공 시기 등으로 지표 확인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목표로 적절			
스마트 APC	인프라 구축 일정 점검 측면에서 적절	설계용역완료, 착·준공 시기 등으로 지표 확인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목표로 적절			
부지 매입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에서 적절	객관적(필수적) 자료 확인(소유권확인) 가능	목적 달성의 제반조건으로서의 적절			
인구 유입	지역소멸대응 효과 검증 가능	객관적 통계(인구동태서)로 인구유입 지표 확인	주제 관련 성과 확산 목표로 적절			
시설 이용 만족도	가공체험센터 이용객 관련 정성지표	객관적 자료(설문조사 결과서)로 지표 확인	정성적 성과측정 목표로 적절			
주민대상 만족도	생산능가 및 이용객의 시설활용 관련 정성지표	객관적 자료(설문조사 결과서)로 지표 확인	정성적 성과측정 목표로 적절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025.12, p.18.

이와 같이 동일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투자계획서에서는 사업목표 설정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시설 구축 실적과 같은 산출지표 중심으로 목

표를 설정하는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입 등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안)에 대해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포함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자문 절차를 통해 투자계획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투자계획서 작성 수준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투자계획서 작성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결과지향적 사업목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단순한 시설 구축이나 단기적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기금이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 활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 국가재원 중심의 운영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기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별 인구이동 구조와 감소 요인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의 정밀성과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소멸 개념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간의 불명확한 구분은 정책 대상 설정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측면에서도 한계가 확인된다.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역활성화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확인된다. 약 0.95조원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모펀드 출자가 수시납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자금이 정기예금 형태로 운용되는 사례는 자금 활용의 비효율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출자 시기와 방식이 사업 추진 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과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인구 감소 추세 비교에 기반한 평가는 외생적 요인과 기저효과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준실험

적 계량분석 결과에서도 인구감소 완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는 정책 효과의 부재를 의미한다기보다, 정책 시행 이후의 관측기간이 짧고 인구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성과지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금 전체 차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비교·환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체계 역시 산출 중심 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사업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 간 인과적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소멸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별 인구이동 구조와 감소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강화하고, 광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른 재정 및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 집행 측면에서는 미집행 자금의 적기 집행과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거버넌스와 투자 가이드라인이 정책 목적에 맞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지표를 도입하고 논리모형 기반의 목표-성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성과의 측정과 환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 요약]

구분	현행 문제점	구조적 원인	개선방안(대응 전략)
제도 및 정책 체계	정책 대상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제한되어 정책 목적의 왜곡 발생	‘지방소멸’ 개념과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 간 불명확한 구분	지방소멸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책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
	지역 간 이질성 반영 미흡으로 정책 정밀성 및 효과성 저하	획일적 재정지원 방식 및 지역별 인구이동 구조 분석 부족	지역별 인구이동 구조 및 감소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강화
	수도권 유출 억제 중심의 단편적 대응	광역 단위 인구이동에 대한 고려 부족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
사업 선정의 타당성	타당성 분석 기준 부재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판단 곤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한 계량화 체계 미흡 및 지역 간 경제구조 차이 미반영	재정·경제 효과 계량화 및 평가체계 구축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공공성 저하 및 실효성 제약	의사결정 구조 이원화, 민간 중심 운영 구조	투자펀드 거버넌스 점검을 통한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
사업 집행의 적정성	대규모 미집행액 발생 및 자금 운용 비효율	출연·출자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 간 불일치	미집행액 관리 강화 및 출연 시기 조정 등 자금 운용 효율화
	유휴자금의 비효율적 운용 (정기예금 등)	자금 운용 전략 부재 및 단기 유동성 중심 운용	자금 운용 다변화 및 투자 전략 도입
성과 분석	정책 효과 검증의 실증적 근거 부족	단순 시기 비교 중심 평가 및 외생적 요인 통제 미흡	준실험적 계량분석 등 반사실적 접근 기반 성과평가 체계 구축
	인구감소 완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미확인	정책 시행 기간의 단기성 및 평가 방법론 한계	중장기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다층적 성과지표 활용
	성과지표의 비표준화 및 사업 간 이질성	기금 차원의 통합 성과관리 체계 부재	표준화된 성과지표 도입 및 기금 단위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부 록 -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부록 표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광역지원계정)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배분 금액	배분 금액	배분 금액	출자 ¹⁾ 금액	출자 후 배분액	배분 금액	출자 금액	출자 후 배분액
전남	378	504	508	204	304	508	204	304
경북	363	484	449	180	269	449	180	269
강원	258	344	346	139	207	346	139	207
전북	240	320	322	129	193	322	129	193
경남	223	297	299	120	179	299	120	179
충남	179	239	241	97	144	241	97	144
충북	119	159	160	64	96	160	64	96
부산	26	34	35	14	21	35	14	21
대구	24	32	53	21	32	53	21	32
광주	14	19	19	8	11	19	8	11
제주	14	19	19	8	11	19	8	11
인천	12	16	15	6	9	15	6	9
대전	9	12	12	5	7	12	5	7
울산	9	12	12	5	7	12	5	7
경기	4	5	4	1	3	4	1	3
합계	1,872	2,496	2,494	1,000	1,494	2,494	1,000	1,494

주: 1) 출자 금액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한 출자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부록 표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초지원계정-인구감소지역)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부산	동구	48	64	64	72
	서구	60	80	64	72
	영도구	54	72	64	72
대구	군위군	-	-	64	72
	남구	54	80	64	72
	서구	60	80	64	72
인천	강화군	48	64	64	72
	옹진군	48	64	64	72
경기	가평군	60	80	64	72
	연천군	48	64	64	72
강원	고성군	60	80	64	72
	삼척시	60	80	64	72
	양구군	60	80	64	72
	양양군	48	64	64	72
	영월군	60	80	80	72
	정선군	72	96	80	72
	철원군	60	80	80	72
	태백시	60	80	144	72
	평창군	72	96	112	72
	홍천군	60	80	64	72
	화천군	60	80	112	72
	횡성군	60	80	64	160
충북	괴산군	72	96	80	72
	단양군	48	64	64	160
	보은군	60	80	80	72
	영동군	54	72	112	72
	옥천군	72	96	64	72
	제천시	48	64	64	72
충남	공주시	48	64	64	72
	금산군	90	120	80	72
	논산시	60	80	64	72
	보령시	54	72	64	160
	부여군	72	96	144	72
	서천군	60	80	112	72
	예산군	48	64	64	72
	청양군	72	96	80	72
	태안군	54	72	80	72
전북	고창군	60	80	64	72
	김제시	60	80	80	72
	남원시	60	80	112	160
	무주군	72	96	64	72

구분		2022	2023	2024	2025
	부안군	60	80	64	72
	순창군	72	96	80	72
	임실군	60	80	64	72
	장수군	60	80	144	72
	정읍시	60	80	64	72
	진안군	60	80	64	72
전남	강진군	48	64	112	72
	고흥군	60	80	64	160
	곡성군	72	96	112	72
	구례군	60	80	80	72
	담양군	48	64	64	72
	보성군	72	96	80	72
	신안군	90	120	80	160
	영광군	60	80	80	72
	영암군	54	72	64	72
	완도군	60	80	80	72
	장성군	54	72	80	72
	장흥군	60	80	80	72
	진도군	48	64	64	72
	함평군	54	72	80	72
	해남군	54	72	112	72
	화순군	48	64	64	72
경북	고령군	60	80	64	72
	군위군	54	72	-	-
	문경시	60	80	64	72
	봉화군	48	64	112	72
	상주시	54	72	112	72
	성주군	54	72	112	72
	안동시	48	64	80	72
	영덕군	54	72	64	72
	영양군	54	72	112	72
	영주시	60	80	64	72
	영천시	72	96	64	72
	울릉군	60	80	80	72
	울진군	60	80	64	72
	의성군	90	120	144	72
	청도군	60	80	112	160
	청송군	54	72	80	72
경남	거창군	60	80	80	72
	고성군	60	80	80	72
	남해군	60	80	64	72
	밀양시	72	96	112	72
	산청군	72	96	64	72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의령군	54	72	80	72
	창녕군	54	72	64	72
	하동군	54	72	80	160
	함안군	60	72	64	72
	함양군	90	120	80	72
	합천군	60	80	64	72

자료: 행정안전부

[부록 표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초지원계정-관심지역)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부산	금정구	14	18	16	18
	중구	15	20	20	18
인천	동구	14	18	16	18
광주	동구	23	30	20	18
대전	대덕구	12	16	16	18
	동구	15	20	16	18
	중구	15	20	20	18
경기	동두천시	14	18	28	18
	포천시	15	20	16	40
강원	강릉시	15	20	20	18
	동해시	15	20	16	18
	속초시	18	24	20	18
	인제군	18	24	36	18
전북	익산시	18	24	28	18
경북	경주시	15	20	16	18
	김천시	15	20	28	40
경남	사천시	15	20	16	18
	통영시	12	16	16	18

자료: 행정안전부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2025년)

[부록 표 4]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시·도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합계
부산광역시	1. 부산형 위케이션 활성화	1,124	2,074
	2. 부산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300	
	3.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650	
대구광역시	1. 군위 GBT타운 조성(삼국유사 테마파크)	1,000	3,181
	2. 지방벤처 경쟁력 강화·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	1,021	
	3. 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100	
	4. 행복공간 조성 프로젝트(K-Health AI서비스)	590	
	5.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220	
	6.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250	
인천광역시	1. 인천 섬 포털 구축	180	953
	2. 원도심 강화 와글와글	100	
	3. 강화·옹진 6차산업 경쟁력 강화	283	
	4. 〈자월-덕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390	
광주광역시	1. 미취업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1,024	1,121
	2. 외지청년 광주 3일 살기	97	
대전광역시	1. 도심 속 힐링공간, 대청호 생태관광 활성화	249	747
	2.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249	
	3.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249	
울산광역시	1.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확대	247	747
	2.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500	
경기도	1. 지역 생활인구 유입 지원	293	293
강원특별자치도	1.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1,500	
	2.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1,231	
	3.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1,300	
	4. 화천 복합 힐링타운 조성	1,500	
	5. 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구축	1,300	
	6. 해안 야생화 특화 지역경제육성	940	
	7. 특수목적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600	
	8. 지역균형 건강증진·재활사업	1,700	

	9.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1,100	20,737
	10.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1,500	
	11.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	1,400	
	12. 동강영월 활력타운 조성	500	
	13.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1,500	
	14.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생활인구 확대	900	
	15. 강원남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600	
	16.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2,120	
	17. 목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560	
	18. 근로자·기업 복합지원센터 조성	400	
	19.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86	
충청북도	1. 보은청년 all來(지역활력타운 조성)	2,500	9,579
	2. 가치자람플랫폼 기능 개선	300	
	3. 지역응급의료기관 노후 의료장비 교체	2,505	
	4. 단양강 레이크파크 수상 공연장 조성	741	
	5. 재외동포(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	500	
	6. 청년인구 유입 도시기반시설 확충	400	
	7.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	2,333	
	8. 지역혁신 공모사업 기금 연계 지원	300	
충청남도	1. 농촌주거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여건 개선	7,228	14,429
	2. 유희공간 리모델링 업무공간 조성	1,350	
	3.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설치·운영	1,500	
	4.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411	
	5.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광역계정 출자	3,940	
전북특별자치도	1. 지역활력타운 조성	2,000	
	2.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 공간 조성	600	
	3.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600	
	4. 지방소멸지역 혁신기술창업기업 지원	547	
	5. 임신·출산 필수 의료 인프라 조성	5,736	
	6.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	1,400	
	7. 농어촌 하수도 정비	2,000	
	8.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385	
	9.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600	
	10.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1,550	
	11.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250	
	12. 지역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	1,000	

	13.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500	
	14. 농촌희망 활동가 육성지원	115	19,283
전라남도	1.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	12,000	
	2. 청년비전센터 건립	7,511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2,000	
	4. 간호사·근로자 기숙사 조성	4,520	
	5.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1,000	
	6. 지역활력타운 조성	500	
	7. 청년창업 사업고도화 지원	1,230	
	8.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600	
	9.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1,050	30,411
경상북도	1. 지역활력타운 조성(일자리·주거·생활여건)	10,000	
	2.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4,000	
	3. 생활문화·체육·취창업지원센터 조성	3,000	
	4. 생활인구 개념 확장 기반 조성	1,000	
	5. 유희자원 활용 체류·정주인구 확보	1,800	
	6.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1,500	
	7. 주민주도 살기좋은 마을 조성	1,800	
	8.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운영	400	
	9.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구상	342	
	10. 경북 로컬제인지업	1,500	
	11.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1,000	
	12. 도내 고교 인재 창업교육	500	26,842
경상남도	1. 지역교육시스템 구축	6,000	
	2. 청년·외국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	7,000	
	3. 인구증대 프로그램	1,000	
	4. 수소기업 지원센터 구축	2,970	
	5. 전학생 유치 농어촌 학교 지원	30	
	6. 경남형 빈집활용사업 "경남별장" 운영 지원	200	
	7. 생활인구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705	17,905
제주특별자치도	1.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1,120	1,120
광역지원계정 합계			149,425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4.을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5] 2025년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주요사업(인구감소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부산광역시	서구	1. 의료 실증 연구 지원사업 (의료R&D 연구기업 지원센터 조성)	7,200
	동구	1. 빈집 Light Up 2. 청년창업자육성·로컬콘텐츠 3. 기업지원특례보증	7,200
	영도구	1. 생활인구 연결 해안관광 순환벨트 2. 커피산업기반플랫폼구축	7,200
대구광역시	서구	1. 서구 평생학습·복합 생활거점 조성 2. 청년1인가구맞춤형프로그램	7,200
	남구	1. 앞산 맘&키즈 공간 조성 2. 관광지·문화예술활성화 3. 남구일자리활성화	7,200
	군위군	1. 군위 GBT타운 연계 파크골프장·타운하우스 조성 2. 로컬푸드직매장운영	7,2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 농촌형 공유지 개발 2. 미래농업기반마련 3. 관광자원활용문화행사	7,200
	옹진군	1. 선착장 시설개선 2. 덕적서포리해수욕장해수풀조성 3. 임대형스마트팜	7,200
경기도	가평군	1. 전투기념관·트리워크 공원 조성 2. 어린이복합수경시설·놀이터 3. 어린이놀이체험시설	7,200
	연천군	1. 노후·빈집 정비 및 먹거리촌 조성 2. 국립연천현충원주변기반시설 3. 전곡읍지역거점공원	7,2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 태백 休 전지훈련센터 조성 2. 스포츠센터건립	7,200
	삼척시	1.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2. 로컬창업빌리지이사부문화예술촌 3. 반려동물테마파크	7,200
	홍천군	1.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 2. 청년·일자리지원	7,200
	횡성군	1.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16,000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영월군	1. 동강영월 활력타운 조성 2. 지역활력타운조성	7,200
	평창군	1.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2. 청옥산산악관광허브	7,200
	정선군	1.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생활인구 확대	7,200
	철원군	1.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7,200
	화천군	1.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스태이 화천)	7,200
	양구군	1. 지역균형·주민중심 건강증진·재활 2. 해양심층수기반산업생태계	7,200
	고성군	1. 강원남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2. 강릉스마트위케이션시범도시	7,200
	양양군	1. 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구축 2. 목호논골담길청년특화지구	7,200
충청 북도	제천시	1. 지역응급의료기관 노후 의료장비 교체 2. 단양강레이크파크수상공연장	7,200
	보은군	1. 보은청년 all來(지역활력타운) 2. 인구감소지역학습·멘토링	7,200
	옥천군	1. 지역혁신 공모사업 기금 연계 2. 청년인구유입도시기반시설	7,200
	영동군	1. 지역혁신 공모사업(퍼플푸드혁신밸리) 2. 가치자람플랫폼기능개선	7,200
	괴산군	1. 재외동포(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 2. 농촌생활여건개선	7,200
	단양군	1.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 2. 체류인구증대인프라	16,000
충청 남도	공주시	1. 농촌주거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여건 개선 2. 지역활력타운공모사업	7,200
	보령시	1. 유희공간 리모델링 업무공간 조성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출자	16,000
	논산시	1.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2. 정주여건개선	7,200
	금산군	1. 정주여건 개선(농촌재구조화) 2. 지역특화체험프로그램	7,200
	부여군	1. 지역활력타운 조성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7,200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서천군	1. 노후 농촌주거 개선 2. 일자리·체류인구확대	7,200
	청양군	1. 농산업 직업훈련 및 체험 인프라 2. 정주여건개선	7,200
	예산군	1. 유휴공간 활용 업무공간 2. 농촌형위케이션	7,200
	태안군	1. 농촌주거공간 재구조화 2. 어촌생활인구유입	7,200
전북 특별 자치 도	정읍시	1. 지역활력타운 조성 2. 농어촌하수도정비	7,200
	남원시	1.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아복합센터 건립 2. 농촌유학가족체류형거주시설	16,000
	김제시	1.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 농어촌상수도물복지확대	7,200
	완주군	1. 지역활력타운 조성 2. 전북청년마을만들기	7,200
	진안군	1.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2. 농촌사회서비스활성화	7,200
	무주군	1. 농촌희망 활동가 육성 2. 지역품은대학중고교연계인재육성	7,200
	장수군	1. 지역활력타운 조성 2. 특장전문인력양성거점공간	7,200
	임실군	1.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2. 혁신기술창업기업지원	7,200
	순창군	1.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 2. 생활인구확대기반조성	7,200
	고창군	1.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2. 지역활력타운	7,200
	부안군	1.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2. 지역활성화펀드	7,200
전라 남도	고흥군	1.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 2. 청년비전센터건립	16,000
	보성군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2. 청년공동체활성화	7,200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장흥군	1.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2. 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	7,200
	강진군	1. 간호사·근로자 기숙사 조성 2. 지역활력타운	7,200
	해남군	1. 청년창업 사업고도화 2. 청년비전센터	7,200
	영암군	1.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 2. 지역활성화	7,200
	무안군	1. 청년비전센터 건립 2. 청년공공임대주택	7,200
	함평군	1. 공공산후조리원 2. 지역활력타운	7,200
	영광군	1. 청년창업 지원 2. 청년공동체활성화	7,200
	장성군	1. 전남형 만원주택 2. 청년마을만들기	7,200
	완도군	1. 청년 공공임대주택(30세대) 2. 청년창업사업고도화	7,200
	진도군	1. 전남형 만원주택 2. 청년공동체활성화	7,200
	신안군	1. 전남형 만원주택 2. 청년마을만들기	16,000
	곡성군	1. 청년 공공임대주택(100세대) 2. 간호사기숙사	7,200
	구례군	1. 지역활력타운 2. 청년창업지원	7,200
경상 북도	안동시	1. 지역활력타운(일자리·주거·생활여건) 2. K-U시티프젝트	7,200
	영주시	1. 지역활력타운 2. 경북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	7,200
	영천시	1. 생활문화·체육·취창업센터 조성 2. 경북살이청년실험실	7,200
	상주시	1. 유희자원 활용 체류·정주인구 확보 2. 경북로컬제인지업	7,200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문경시	1. 주민주도 살기좋은 마을 조성 2. 생활인구개념확장	7,200
	의성군	1. 지역활력타운 2. 고교인재창업교육	7,200
	청송군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구상 2. 지역특화프로그램	7,200
	영양군	1. 지역활력타운 2. K-U시티프로젝트	7,200
	영덕군	1.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2. 지역활성화	7,200
	청도군	1. 지역활력타운 2. 일자리·주거지원	16,000
	고령군	1.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2. 로컬제인지업	7,200
	성주군	1. 유희자원 활용 정주인구 확보 2. 지역프로그램	7,200
	봉화군	1. 지역활력타운 2. 인구유입기반조성	7,200
	울진군	1. K-U시티 프로젝트 2. 지역활성화	7,200
	울릉군	1. 지역활력타운 2. 생활인구확대	7,200
경상 남도	밀양시	1. 지역교육시스템 구축 2. 수소기업지원센터	7,200
	의령군	1. 청년·외국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 2. 경남형빈집활용(경남별장)	7,200
	함안군	1. 인구증대 프로그램 2. 생활인구확대	7,200
	창녕군	1. 전학생 유치 농어촌 학교 지원 2. 생활인구확대관광	7,200
	고성군	1. 지역교육시스템 구축 2. 수소기업지원	7,200
	남해군	1. 청년·외국인 주거·일자리 2. 관광산업활성화	7,200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하동군	1. 경남형 빈집활용(경남별장) 2. 인구증대	16,000
	산청군	1. 수소기업 지원센터 2. 지역교육시스템	7,200
	함양군	1.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2. 관광생활인구	7,200
	거창군	1. 지역교육시스템 2. 전학생유치	7,200
	합천군	1. 청년·외국인 주거·일자리 2. 경남별장	7,200
인구감소지역 합계 (89개 시·군·구)			640,800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4.을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6] 2025년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주요사업(관심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투자계획 주요사업	예산	합계
부산광역시	중구	1. 세대이음 ESG센터 조성 2. 산만디빌리지 조성·운영 3. 빈집연결(빈집뱅크)	1,800	1,800
	금정구	1. 금정 청년 러스티라이프 프로젝트 2. 금사공업지역원스톱기업애로지원 3. 신중년인생2막역량강화	1,800	1,800
인천광역시	동구	1. 노후 주거환경 개선 2. 지역생활인프라 조성	1,800	1,800
광주광역시	동구	1. AI헬스케어 컴플렉스 매입·조성	1,800	1,800
대전광역시	동구	1.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2. 유희공간리모델링(물류·유통)	1,800	1,800
	중구	1.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2. 빛나는거리 조성	1,800	1,800
	대덕구	1. 도심 속 힐링공간 대청호 생태공원 활성화	1,800	1,800
경기도	포천시	1.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	4,000	4,000
	동두천시	1.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 소요바람숲길 조성 3. 평생교육허브 조성	1,800	1,8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기반 구축 2. 지역콘텐츠개발 3. 북부권장난감도서관	1,800	1,800
	동해시	1. 햇살 가득한 문화채굴 복합플랫폼 조성	1,800	1,800
	속초시	1.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 2. 기업지원특례보증	1,800	1,800
	인제군	1. 인제에서 살아보기 2. 활력마을귀둔만들기 3. 살맛나는에너지복지	1,800	1,8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 창업 지원(시제품 제작·사업화) 2. 익산형주거사다리구축 3. 기업지원특례보증	1,800	1,800
경상북도	경주시	1. 스마트팜 체험·운영실습장 조성 2. 중소기업특례보증금융지원	1,800	1,800
	김천시	1. 복합스포츠허브센터 건립 2. 지역경제활력지원	4,000	4,000
경상남도	통영시	1. 메뉴고도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1,800	1,800
	사천시	1. 위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1,800	1,800
관심지역 합계 (18개 시·군·구)				35,200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요약」, 2024.을 바탕으로 작성

〈부록 3〉 인구이동 현황

[부록 표 7] 인구감소지역별 연도별 인구 순이동 현황

(단위: 명, 명/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합계	△26,346	3,930	3,872	△15,635	14,293	1,615
부산 서구	△962	1,216	△247	△77	△430	116
부산 동구	△151	△64	1,932	△1,237	△1,417	△197
영도구	△569	△1,079	△575	△1,756	△1,129	△1,135
대구 서구	△4,538	△3,022	5,481	105	1,854	1,105
대구 남구	△1,858	△187	△1,432	△1,890	139	△843
군위군	87	771	34	△168	376	253
강화군	1,225	858	△85	1,112	1,030	729
용진군	3	413	△47	△213	△163	△3
연천군	△280	△188	△139	△341	1,859	298
가평군	582	576	717	682	42	504
태백시	△1,014	△800	△415	△445	△451	△528
삼척시	△1,066	574	△392	△395	△754	△242
홍천군	△106	228	△135	△54	△62	△6
횡성군	541	611	279	204	40	284
영월군	△57	305	△10	△178	△258	△35
평창군	△146	497	73	93	△187	119
정선군	△347	△290	△389	△331	1,767	189
철원군	△1,010	△796	△602	△727	△242	△592
화천군	△492	△706	△338	△23	△425	△373
양구군	△438	△269	△250	△343	△107	△242
강원 고성군	830	301	273	△85	64	138
양양군	229	304	128	53	113	150
제천시	△476	431	△57	△806	369	△16
보은군	△10	165	△25	△21	452	143
옥천군	287	74	△73	△137	1,950	454
영동군	△957	△141	△155	△46	53	△72
괴산군	△667	△523	92	141	2,503	553
단양군	△298	△129	238	20	△182	△13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공주시	△234	512	460	179	△315	209
보령시	△756	△257	△521	△1,113	△863	△689
논산시	△741	△583	△1,111	△866	△639	△800
금산군	△161	271	657	150	△113	241
부여군	△458	△302	△352	△568	△231	△363
서천군	△306	98	△80	△167	△186	△84
청양군	0	256	334	△35	794	337
예산군	△255	1,558	1,819	1,217	901	1,374
태안군	△132	481	33	△16	△23	119
정읍시	△655	△288	△380	△421	158	△233
남원시	△540	△638	△435	△405	△567	△511
김제시	△312	1,464	801	63	1,956	1,071
진안군	△74	△94	212	△18	415	129
무주군	6	104	92	55	54	76
장수군	△141	△78	△97	△79	544	73
임실군	△250	131	△187	△42	5	△23
순창군	△541	277	388	357	1,230	563
고창군	△380	△206	148	△71	160	8
부안군	△518	△19	△209	△454	△149	△208
담양군	450	158	33	△314	△45	△42
곡성군	△108	57	247	43	1,097	361
구례군	△107	△203	7	54	135	△2
고흥군	△144	289	193	63	296	210
보성군	△313	△226	△127	△88	380	△15
화순군	690	158	△270	△28	3	△34
장흥군	△734	△294	△148	△135	203	△94
강진군	△305	△50	△53	△93	5	△48
해남군	△675	△382	△442	△634	△79	△384
영암군	△187	151	390	△463	△889	△203
함평군	△193	39	181	△105	△102	3
영광군	△658	650	△23	702	1,750	770
장성군	△494	403	△199	△120	1,295	345
완도군	△682	△334	△378	△465	△381	△390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진도군	△699	△128	△139	△103	△186	△139
신안군	△46	238	749	672	4,305	1,491
안동시	△698	△900	△444	1,434	679	192
영주시	△181	△44	404	△473	△746	△215
영천시	844	129	△46	△1,196	△1,991	△776
상주시	△403	510	10	△885	△794	△290
문경시	337	305	△858	△746	△1,084	△596
의성군	△62	561	774	△508	199	257
청송군	△139	145	28	6	44	56
영양군	△46	△26	△113	△55	901	177
영덕군	△407	22	△95	△304	56	△80
청도군	276	423	271	△123	140	178
고령군	△316	155	108	283	△62	121
성주군	△39	210	27	△122	△218	△26
봉화군	△220	△116	△88	△280	△73	△139
울진군	△304	△314	81	△88	284	△9
울릉군	△92	208	128	103	△316	31
밀양시	△155	553	138	△226	△239	57
의령군	△13	212	△146	72	△115	6
함안군	△997	△390	△624	△685	△577	△569
창녕군	△401	△818	△529	△252	△403	△501
경남 고성군	△166	689	△303	△782	△235	△158
남해군	25	57	△126	△269	1,611	318
하동군	△731	△331	△274	△195	△180	△245
산청군	68	322	230	65	28	161
함양군	△161	30	△223	△242	△54	△122
거창군	190	△27	205	88	△6	65
합천군	△244	22	△137	△144	△278	△134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8] 인구감소지역별 연평균 인구 순이동 현황

(단위: 명/년)

구분	연평균 순이동(유입-유출)				
	2011-2015	2016-2019(A)	2020-2021	2022-2025(B)	증가(B-A)
합계	△15,108	△32,852	△32,251	1,615	34,467
부산 서구	△1,712	△1,405	△189	116	1,521
부산 동구	△1,672	△542	540	△197	346
영도구	△3,158	△2,530	△1,524	△1,135	1,396
대구 서구	△3,787	△7,138	△4,071	1,105	8,242
대구 남구	△2,084	△2,760	△1,235	△843	1,918
군위군	98	193	△105	253	60
강화군	507	879	908	729	△151
웅진군	468	△25	2	△3	23
연천군	131	△370	△194	298	668
가평군	765	381	466	504	123
태백시	△657	△770	△983	△528	242
삼척시	△111	△626	△1,392	△242	384
홍천군	253	16	221	△6	△22
횡성군	504	498	396	284	△214
영월군	175	7	△121	△35	△42
평창군	126	△120	△141	119	239
정선군	△250	△248	△250	189	437
철원군	△71	△753	△910	△592	161
화천군	456	△536	△252	△373	163
양구군	415	△351	△451	△242	108
강원 고성군	102	△527	282	138	665
양양군	15	229	332	150	△80
제천시	△242	△73	△789	△16	57
보은군	120	△46	△59	143	188
옥천군	△91	8	106	454	445
영동군	331	△136	△883	△72	64
괴산군	721	484	△16	553	70
단양군	△33	3	△319	△13	△16
공주시	△1,329	△709	△754	209	918
보령시	△339	△502	△539	△689	△186

구분	연평균 순이동(유입-유출)				
	2011-2015	2016-2019(A)	2020-2021	2022-2025(B)	증가(B-A)
논산시	△366	△819	△1,064	△800	19
금산군	△109	△290	△262	241	531
부여군	△293	△476	△566	△363	113
서천군	△254	△489	△347	△84	406
청양군	196	151	△193	337	186
예산군	△359	△486	△352	1,374	1,860
태안군	245	167	△105	119	△48
정읍시	△881	△712	△894	△233	479
남원시	△364	△454	△364	△511	△57
김제시	△737	△572	△478	1,071	1,643
진안군	△178	52	△104	129	77
무주군	27	△3	7	76	79
장수군	94	△35	△162	73	107
임실군	90	△108	△797	△23	85
순창군	216	△293	△447	563	856
고창군	196	△661	△413	8	669
부안군	△318	△455	△567	△208	248
담양군	△40	134	252	△42	△176
곡성군	△30	△180	△293	361	541
구례군	149	23	△348	△2	△24
고흥군	△324	△110	△172	210	320
보성군	△460	△571	△377	△15	555
화순군	△594	△468	432	△34	434
장흥군	498	△910	△609	△94	817
강진군	△477	△634	△335	△48	587
해남군	△551	△1,166	△833	△384	782
영암군	△522	△750	△393	△203	547
함평군	△154	△212	△323	3	215
영광군	△76	△417	△663	770	1,187
장성군	40	7	△756	345	338
완도군	△43	△307	△527	△390	△82
진도군	△80	△157	42	△139	18
신안군	△149	△405	△474	1,491	1,896

구분	연평균 순이동(유입-유출)				
	2011-2015	2016-2019(A)	2020-2021	2022-2025(B)	증가(B-A)
안동시	180	△1,896	△514	192	2,088
영주시	△593	△665	△724	△215	450
영천시	△300	925	500	△776	△1,701
상주시	△155	305	△1,504	△290	△595
문경시	△113	△437	18	△596	△159
의성군	△291	173	△124	257	83
청송군	114	△6	△94	56	62
영양군	40	△56	△70	177	232
영덕군	△144	△89	△523	△80	9
청도군	246	231	83	178	△53
고령군	82	△355	△504	121	476
성주군	154	27	△148	△26	△52
봉화군	49	△132	△253	△139	△7
울진군	96	△365	△261	△9	356
울릉군	△95	△100	△303	31	131
밀양시	△35	△5	△36	57	62
의령군	△90	△40	△26	6	46
함안군	471	△601	△1,030	△569	32
창녕군	801	26	△434	△501	△527
경남 고성군	△170	△315	△293	△158	157
남해군	△197	27	△21	318	292
하동군	91	△495	△1,013	△245	250
산청군	320	158	△23	161	4
함양군	87	189	△134	△122	△311
거창군	201	116	△11	65	△51
합천군	97	△399	△413	△134	265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9] 관심지역별 연도별 인구 순이동 현황

(단위: 명, 명/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합 계	△3,894	△14,572	△19,969	△11,602	△7,259	△13,351
부산 중구	145	△305	△710	△708	△575	△575
금정구	△2,684	△5,078	△4,379	△4,331	△1,995	△3,946
대구 동구	△183	△1,815	787	△846	△1,482	△839
인천 동구	1,284	2,896	1,745	△602	△877	791
광주 동구	811	△1,058	△1,268	1,689	1,000	91
대전 중구	△3,921	△1,825	△2,728	2,793	1,626	△34
대덕구	△825	△1,688	△2,465	△1,161	△2,222	△1,884
동두천시	541	△893	△2,387	△1,143	296	△1,032
포천시	2,915	△1,122	△2,407	△1,003	△81	△1,153
강릉시	1,152	△278	△819	△511	△323	△483
동해시	△12	△63	△366	△490	△808	△432
속초시	610	457	△358	△721	△894	△379
인제군	608	169	△98	△413	△596	△235
익산시	△2,642	△2,350	△1,953	△558	431	△1,108
경주시	210	△344	△674	△1,274	860	△358
김천시	462	38	△1,006	△1,244	△768	△745
통영시	△2,069	△1,642	△1,381	△1,304	△1,037	△1,341
사천시	△296	329	498	225	186	310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10] 인구감소지역별 수도권 및 소속 광역시·도로의 인구 순이동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순이동자수 (타 광역시·도 포함)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수(A)	해당 시·도로의 순이동자수(B)	비율 (B/A)
하동군	△180	0	△57	-
군위군	376	24	357	1,487.5
김제시	1,956	152	1,590	1,046.1
완도군	△381	△20	△197	985.0
부산 동구	△1,417	△147	△1,300	884.4
울릉군	△316	△19	△153	805.3
영암군	△889	△80	△641	801.3
영도구	△1,129	△123	△905	735.8
의성군	199	△12	△73	608.3
청도군	140	△15	△90	600.0
신안군	4,305	546	3,161	578.9
안동시	679	103	567	550.5
성주군	△218	△39	△178	456.4
산청군	28	△11	△47	427.3
남해군	1,611	200	817	408.5
양구군	△107	△22	△87	395.5
화천군	△425	△101	△364	360.4
무주군	54	15	54	360.0
함안군	△577	△92	△316	343.5
상주시	△794	△108	△338	313.0
영천시	△1,991	△290	△779	268.6
문경시	△1,084	△149	△399	267.8
삼척시	△754	△153	△399	260.8
태백시	△451	△109	△267	245.0
영양군	901	160	346	216.3
장수군	544	146	315	215.8
괴산군	2,503	654	1,405	214.8
합천군	△278	△84	△178	211.9
의령군	△115	△39	△79	202.6
강진군	5	△13	△24	184.6
정읍시	158	98	176	179.6

구분	전체 순이동자수 (타 광역시·도 포함)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수(A)	해당 시·도로의 순이동자수(B)	비율 (B/A)
화순군	3	△86	△126	146.5
순창군	1,230	273	396	145.1
진안군	415	137	188	137.2
장흥군	203	49	65	132.7
정선군	1,767	662	861	130.1
경남 고성군	△235	△49	△63	128.6
보은군	452	148	186	125.7
부산 서구	△430	△207	△239	115.5
곡성군	1,097	163	180	110.4
옥천군	1,950	292	291	99.7
장성군	1,295	71	65	91.5
웅진군	△163	△243	△207	85.2
영주시	△746	△285	△239	83.9
논산시	△639	△190	△158	83.2
창녕군	△403	△109	△85	78.0
연천군	1,859	1,589	1,111	69.9
담양군	△45	△117	△80	68.4
영광군	1,750	370	227	61.4
철원군	△242	△189	△115	60.8
밀양시	△239	△159	△96	60.4
보성군	380	81	46	56.8
강화군	1,030	993	422	42.5
임실군	5	47	17	36.2
청양군	794	443	115	26.0
예산군	901	543	45	8.3
구례군	135	97	7	7.2
고창군	160	110	3	2.7
제천시	369	266	△1	△0.4
서천군	△186	115	△4	△3.5
강원 고성군	64	37	△5	△13.5
고령군	△62	△28	9	△32.1
고흥군	296	214	△72	△33.6
양양군	113	164	△58	△35.4

구분	전체 순이동자수 (타 광역시·도 포함)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수(A)	해당 시·도로의 순이동자수(B)	비율 (B/A)
울진군	284	102	△44	△43.1
금산군	△113	68	△32	△47.1
대구 남구	139	△565	380	△67.3
부여군	△231	164	△155	△94.5
홍천군	△62	331	△319	△96.4
태안군	△23	350	△340	△97.1
횡성군	40	338	△338	△100.0
영월군	△258	191	△192	△100.5
거창군	△6	△89	99	△111.2
공주시	△315	111	△133	△119.8
가평군	42	70	△109	△155.7
평창군	△187	208	△356	△171.2
봉화군	△73	52	△93	△178.8
부안군	△149	78	△160	△205.1
청송군	44	36	△79	△219.4
단양군	△182	99	△237	△239.4
함양군	△54	15	△55	△366.7
해남군	△79	24	△113	△470.8
함평군	△102	25	△136	△544.0
대구 서구	1,854	△403	2,382	△591.1
영동군	53	28	△169	△603.6
영덕군	56	4	△67	△1,675.0
보령시	△863	18	△705	△3,916.7
남원시	△567	8	△318	△3,975.0
진도군	△186	3	△136	△4,533.3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11]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순이동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 순이동(유입-유출)		비율(B/A)
	전국(A)	인구감소지역(B)	
부산 서구	△430	185	△43
부산 동구	△1,417	△25	2
영도구	△1,129	△276	24
대구 서구	1,854	△77	△4
대구 남구	139	△47	△34
군위군	376	46	12
강화군	1,030	42	4
옹진군	△163	35	△21
연천군	1,859	83	4
가평군	42	14	33
태백시	△451	△119	26
삼척시	△754	△157	21
홍천군	△62	41	△66
횡성군	40	13	33
영월군	△258	△270	105
평창군	△187	△83	44
정선군	1,767	372	21
철원군	△242	△51	21
화천군	△425	△12	3
양구군	△107	△25	23.4
강원 고성군	64	44	68.8
양양군	113	23	20.4
제천시	369	449	121.7
보은군	452	△40	△8.8
옥천군	1,950	262	13.4
영동군	53	△89	△167.9
괴산군	2,503	79	3.2
단양군	△182	△243	133.5
공주시	△315	△5	1.6
보령시	△863	△91	10.5
논산시	△639	64	△10.0
금산군	△113	△34	30.1
부여군	△231	△122	52.8

구분	인구 순이동(유입-유출)		비율(B/A)
	전국(A)	인구감소지역(B)	
서천군	△186	26	△14.0
청양군	794	90	11.3
예산군	901	163	18.1
태안군	△23	△65	282.6
정읍시	158	△2	△1.3
남원시	△567	△195	34.4
김제시	1,956	244	12.5
진안군	415	△11	△2.7
무주군	54	△1	△1.9
장수군	544	68	12.5
임실군	5	△40	△800.0
순창군	1,230	197	16.0
고창군	160	△205	△128.1
부안군	△149	△128	85.9
담양군	△45	△70	155.6
곡성군	1,097	81	7.4
구례군	135	△41	△30.4
고흥군	296	17	5.7
보성군	380	6	1.6
화순군	3	△47	△1,566.7
장흥군	203	29	14.3
강진군	5	△17	△340.0
해남군	△79	20	△25.3
영암군	△889	△57	6.4
함평군	△102	△93	91.2
영광군	1,750	244	13.9
장성군	1,295	62	4.8
완도군	△381	△151	39.6
진도군	△186	△51	27.4
신안군	4,305	86	2.0
안동시	679	403	59.4
영주시	△746	△201	26.9
영천시	△1,991	△210	10.5
상주시	△794	△53	6.7
문경시	△1,084	△209	19.3

구분	인구 순이동(유입-유출)		비율(B/A)
	전국(A)	인구감소지역(B)	
의성군	199	33	16.6
청송군	44	△148	△336.4
영양군	901	237	26.3
영덕군	56	20	35.7
청도군	140	44	31.4
고령군	△62	17	△27.4
성주군	△218	55	△25.2
봉화군	△73	△79	108.2
울진군	284	48	16.9
울릉군	△316	△62	19.6
밀양시	△239	△20	8.4
의령군	△115	△11	9.6
함안군	△577	△25	4.3
창녕군	△403	△83	20.6
경남 고성군	△235	41	△17.4
남해군	1,611	176	10.9
하동군	△180	△36	20.0
산청군	28	△6	△21.4
함양군	△54	△99	183.3
거창군	△6	113	△1,883.3
합천군	△278	△90	32.4

주: △는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표 12] 인구감소지역의 전입사유별 연평균 순이동자수(2016~2025)

(단위: 명/년)

시도	시군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인천	강화군	△40.2	97.9	467.0	△41.5	△83.7	418.2	7.0	824.7
경기	가평군	175.5	△182.8	255.6	7.5	△104.7	348.7	△52.5	447.3
충북	괴산군	233.6	△291.9	△104.7	67.8	△41.9	370.5	178.1	411.5
강원	횡성군	△39.1	△97.3	111.0	115.9	1.9	350.0	△50.7	391.7
전남	신안군	322.1	201.9	△258.7	△168.6	△17.3	201.5	58.6	339.5
충남	예산군	△55.6	86.8	168.5	△104.0	△70.3	164.3	95.2	284.9
강원	양양군	74.3	16.6	64.3	△58.1	△5.1	154.9	△29.2	217.7
충북	옥천군	△177.6	122.6	132.6	△117.5	△24.4	166.1	104.1	205.9
경북	청도군	△60.9	△39.3	5.3	△46.8	△25.9	369.0	△21.4	180.0
경북	영천시	422.6	△473.7	△153.7	△136.3	32.2	357.1	111.3	159.5
대구	군위군	129.6	△29.5	△68.9	△51.9	△34.1	186.5	25.8	157.5
충남	청양군	37.6	△169.5	△140.1	196.6	9.4	170.9	52.0	156.9
경북	의성군	230.4	26.7	△111.5	△149.1	△60.2	224.0	△13.1	147.2
경남	남해군	△119.3	△12.5	△13.6	77.5	△16.4	193.3	24.9	133.9
경남	산청군	△24.6	△44.9	△19.5	△111.7	△18.3	248.2	93.8	123.0
전북	김제시	△94.1	160.5	△42.5	△104.2	△27.8	195.7	16.5	104.1
충남	태안군	146.7	△108.4	△145.6	7.2	△81.0	239.6	34.9	93.4
전남	담양군	△51.3	△104.0	75.0	△51.8	△42.0	197.2	64.0	87.1
경남	거창군	△210.8	△1.8	△12.4	148.2	△23.4	160.7	9.7	70.2
전북	진안군	△37.5	1.3	△69.0	△79.6	△5.9	176.1	66.3	51.7
강원	홍천군	△145.5	73.1	40.5	△145.3	△65.5	405.6	△114.5	48.4
경북	영양군	60.3	10.3	△64.8	△53.1	△4.3	87.7	△1.6	34.5
전북	무주군	△10.5	10.8	△47.0	△69.8	△17.1	145.7	18.7	30.8
충북	보은군	△11.1	1.8	△77.3	△84.2	△27.3	159.7	65.5	27.1
전북	순창군	△9.2	△70.4	△144.3	△61.8	△2.3	188.1	118.7	18.8
전남	곡성군	△9.2	△102.1	△102.5	48.7	△27.0	133.0	72.9	13.8
경남	밀양시	△325.3	61.5	205.6	△305.6	△1.3	269.2	109.2	13.3
전남	영광군	62.7	7.2	△72.0	△89.9	△41.4	133.5	8.6	8.7
전남	고흥군	△169.0	103.1	7.6	△197.8	△28.7	221.1	69.6	5.9
경북	청송군	92.6	△78.3	△97.0	△38.2	6.4	60.9	54.9	1.3
경남	함양군	△62.9	28.9	△85.4	△114.1	△16.1	197.7	51.7	△0.2
전남	장성군	48.4	△98.7	△13.6	△83.0	△47.3	221.1	△37.3	△10.4

시도	시군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인천	옹진군	563.3	△333.0	△197.4	△71.4	△17.4	90.4	△45.3	△10.8
전북	장수군	6.9	△2.6	△98.2	△91.4	△18.7	110.7	76.1	△17.2
경남	의령군	△13.9	△144.4	12.3	△88.7	59.9	130.1	25.9	△18.8
강원	평창군	61.4	△130.6	8.4	△132.8	△23.6	299.5	△110.9	△28.6
경북	성주군	82.1	△123.8	△33.7	△169.3	38.3	127.3	49.9	△29.2
강원	영월군	41.5	△321.0	△109.7	154.3	△17.8	233.8	△16.8	△35.7
전남	구례군	△105.3	△65.9	△39.3	△56.4	△7.7	219.9	△6.5	△61.2
경기	연천군	266.1	△81.8	△140.3	△101.2	△58.0	143.8	△96.3	△67.7
충북	단양군	△17.4	△49.0	△118.7	△49.8	△18.8	146.5	39.2	△68.0
충남	금산군	△156.8	△180.1	32.0	27.9	△55.0	175.1	85.0	△71.9
강원	정선군	186.5	18.2	△165.4	△119.5	△41.8	136.6	△88.0	△73.4
경북	울릉군	273.6	△165.2	△144.5	△49.1	△21.7	38.7	△19.9	△88.1
강원	고성군	97.7	△236.3	12.2	△79.7	△41.7	182.8	△34.1	△99.1
전남	진도군	16.0	△61.3	△83.3	△125.1	△28.1	93.6	78.3	△109.9
전남	화순군	△391.9	△41.7	323.2	△86.4	△62.0	193.2	△48.8	△114.4
전남	함평군	21.3	△179.2	△132.0	△48.9	△14.4	143.7	61.5	△148.0
경북	봉화군	△0.5	△48.8	△134.2	△74.6	△30.4	155.2	△25.7	△159.0
경북	영덕군	△129.2	△106.6	△128.4	△96.3	150.9	91.7	45.7	△172.2
부산	동구	△119.2	△440.4	716.4	△85.7	5.9	△75.7	△188.9	△187.6
충북	제천시	△681.5	△371.3	189.0	521.9	△51.1	147.5	52.4	△193.1
경북	고령군	△141.7	△148.9	147.2	△92.8	△45.8	95.2	△7.6	△194.4
경북	울진군	171.1	△83.8	△239.1	△72.9	△68.3	87.4	3.7	△201.9
전북	임실군	△11.0	△212.6	△142.6	△92.1	10.0	135.6	100.7	△212.0
경남	고성군	△175.4	△78.5	△138.4	△48.2	△42.5	269.8	△34.2	△247.4
충북	영동군	△227.5	△303.7	△82.7	72.4	18.2	188.7	74.7	△259.9
경남	창녕군	△120.5	△344.9	△109.3	△51.2	86.6	217.1	45.7	△276.5
경북	상주시	△482.1	△69.6	43.8	75.6	33.1	197.3	△92.7	△294.6
경남	합천군	△149.8	△154.8	△170.6	△108.5	1.3	236.1	50.4	△295.9
충남	서천군	△237.0	30.2	△48.2	△194.9	△27.8	129.5	49.6	△298.6
전남	보성군	△114.1	△121.6	△60.8	△144.1	△22.7	115.9	37.7	△309.7
강원	양구군	30.1	△160.9	△189.1	6.2	△34.8	49.5	△28.2	△327.2
전남	강진군	△72.5	△168.6	△75.6	△92.3	△28.1	114.2	△16.9	△339.8
전북	고창군	△304.7	△413.8	△184.8	175.8	△24.2	216.8	190.9	△344.0
충남	공주시	△636.8	△336.5	△50.3	449.3	△64.4	249.2	38.7	△350.8

시도	시군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전북	부안군	△275.0	△80.7	△26.0	△217.7	△8.7	122.9	106.6	△378.6
전남	완도군	△40.1	8.2	△171.2	△229.7	△34.5	71.2	12.0	△384.1
경북	문경시	△272.2	△220.7	△162.4	△99.1	60.4	257.1	27.3	△409.6
강원	화천군	35.7	△201.8	△211.0	△40.9	△49.0	85.9	△32.9	△414.0
충남	부여군	△488.7	59.7	△109.8	△127.7	6.9	106.1	104.8	△448.7
전북	남원시	△425.3	161.0	△15.8	△332.8	△5.3	177.5	△18.1	△458.8
전남	영암군	370.0	△194.8	△357.5	△184.3	△77.0	114.6	△130.6	△459.6
경북	영주시	△557.5	72.2	△132.2	△44.8	12.8	68.1	84.7	△496.7
경남	하동군	△241.4	△221.0	△212.2	△155.1	△40.8	282.5	89.5	△498.5
전남	장흥군	△151.3	△207.0	△138.2	△133.4	△16.8	162.7	△39.3	△523.3
부산	서구	△357.5	△560.0	174.7	431.0	△63.1	△49.7	△128.9	△553.5
전북	정읍시	△617.0	205.1	△40.3	△287.0	△64.8	104.0	143.6	△556.4
충남	보령시	△277.4	47.6	△107.9	△354.6	△64.0	129.2	43.1	△584.0
강원	삼척시	△250.9	△779.6	△237.0	685.4	△23.8	97.2	△116.6	△625.3
경남	함안군	△190.0	△71.6	△363.4	△94.3	△64.1	119.3	△10.0	△674.1
강원	태백시	△256.7	△188.1	△157.1	△31.5	△34.8	37.3	△84.6	△715.5
강원	철원군	△249.1	△100.1	△113.0	△168.0	△31.7	46.1	△104.1	△719.9
경북	안동시	△269.9	△669.9	△439.9	383.9	△19.0	127.9	102.7	△784.2
전남	해남군	△182.2	△171.4	△198.4	△298.0	△59.2	118.4	4.1	△786.7
충남	논산시	△760.7	△16.9	246.5	△343.3	110.2	141.4	△237.3	△860.1
대구	남구	△452.4	△859.3	△691.6	274.3	△16.2	△123.9	181.1	△1,688.0
부산	영도구	△671.4	△344.9	△619.4	62.0	△131.9	2.8	△68.0	△1,770.8
대구	서구	△1,599.0	△687.9	△99.5	△305.9	△79.2	△191.2	△264.8	△3,227.5

자료: 국가통계포털(시군구/전입사유별 이동자수)를 바탕으로 작성

〈부록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부록 표 13]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25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배분액 합계(A)('22-'25)	집행액(B)	집행률(B/A)
부산 본청	10,091	10,073	99.8
부산 서구	27,600	19,830	71.8
부산 동구	24,800	9,996	40.3
부산 영도구	26,200	16,143	61.6
부산 중구	7,300	3,835	52.5
부산 금정구	6,600	5,496	83.2
대구 본청	11,925	11,625	97.48
대구 서구	27,600	21,109	76.48
대구 남구	27,000	14,416	53.39
군위군	26,200	19,651	75
인천 본청	4,669	4,630	99.16
강화군	24,800	21,100	85.07
옹진군	24,800	15,657	63.13
인천 동구	6,600	6,092	92.3
광주 본청	5,516	5,483	99.4
광주 동구	9,100	8,523	93.7
대전 본청	3,677	3,677	100
대전 동구	6,900	3,107	45
대전 중구	5,180	551	10.64
대전 대덕구	6,200	4,490	72.41
울산 본청	3,677	3,015	81.99
경기 본청	1,437	1,437	100
연천군	24,800	14,299	57.66
가평군	27,600	10,241	37.1
동두천시	7,800	6,378	81.76
포천시	9,100	6,449	70.87
강원 본청	101,618	101,618	100
태백시	35,600	19,124	53.71
삼척시	27,600	24,847	90
홍천군	27,600	15,698	56.88
횡성군	36,400	23,649	64.97

구분	배분액 합계(A)('22-'25)	집행액(B)	집행률(B/A)
영월군	29,200	27,966	95.77
평창군	35,200	18,826	53.48
정선군	32,000	26,539	82.93
철원군	29,200	21,354	73.13
화천군	25,920	14,828	57.21
양구군	27,600	19,039	68.98
고성군	27,600	16,344	59.21
양양군	24,800	24,495	98.77
강릉시	7,300	7,062	96.74
동해시	6,900	4,170	60.43
속초시	8,000	5,498	68.72
인제군	9,150	7,743	84.62
총북 본청	46,960	46,890	99.85
제천시	24,800	16,372	66
보은군	29,200	27,143	92.95
옥천군	30,400	13,220	43.5
영동군	31,000	24,063	77.62
괴산군	32,000	16,196	50.61
단양군	31,800	15,711	49.41
총남 본청	70,707	69,036	97.63
공주시	24,800	17,614	71.02
보령시	35,000	21,541	61.54
논산시	27,600	14,393	52.14
금산군	36,200	27,403	75.69
부여군	38,400	24,244	63.13
서천군	30,600	12,230	39.97
청양군	32,000	16,746	52.33
예산군	23,000	15,497	67.38
태안군	27,800	16,814	60.5
전북 본청	94,495	94,026	99.5
정읍시	27,600	18,184	65.88
남원시	41,200	34,944	84.81
김제시	29,200	20,979	71.85
진안군	27,600	16,197	58.68
무주군	30,400	26,550	87.33

구분	배분액 합계(A)('22-'25)	집행액(B)	집행률(B/A)
장수군	35,600	30,867	86.7
임실군	27,600	22,948	83.14
순창군	32,000	29,201	91.25
고창군	27,600	25,095	90.92
부안군	27,600	20,766	75.24
익산시	8,800	8,698	98.83
전남 본청	149,007	126,608	84.97
담양군	24,800	17,954	72.39
곡성군	35,200	25,327	71.95
구례군	29,200	19,656	67.31
고흥군	36,400	31,737	87.19
보성군	32,000	20,075	62.73
화순군	24,800	21,437	86.44
장흥군	29,200	18,690	64
강진군	29,600	15,681	53
해남군	31,000	16,930	54.61
영암군	26,200	18,569	70.87
함평군	27,800	15,850	57.01
영광군	29,200	17,587	60.23
장성군	27,800	14,705	52.9
완도군	29,200	19,236	65.88
진도군	24,800	15,493	62.47
신안군	45,000	37,803	84
경북 본청	138,332	138,277	99.96
안동시	24,600	10,164	41.32
영주시	27,600	18,177	65.86
영천시	26,800	12,072	45.04
상주시	31,000	22,057	71.15
문경시	27,600	22,034	79.83
의성군	42,600	35,549	83.44
청송군	27,800	18,215	65.52
영양군	31,000	17,090	55.13
영덕군	26,200	19,978	76.25
청도군	41,200	23,379	56.74
고령군	27,600	23,529	85.25

구분	배분액 합계(A)('22-'25)	집행액(B)	집행률(B/A)
성주군	31,000	22,462	72.46
봉화군	29,600	20,402	68.92
울진군	27,600	15,015	54.4
울릉군	29,200	13,769	47.15
경주시	6,900	4,802	69.6
김천시	10,300	5,225	50.73
경남 본청	87,736	86,850	98.99
밀양시	35,200	27,993	79.52
의령군	27,800	19,739	71
함안군	26,800	13,506	50.39
창녕군	26,200	18,217	69.53
고성군	29,200	16,352	56
남해군	27,600	16,036	58.1
하동군	36,600	28,940	79.07
산청군	30,400	18,751	61.68
함양군	36,200	20,751	57.32
거창군	29,200	18,017	61.7
합천군	27,600	23,323	84.5
통영시	4,400	3,657	83.11
사천시	6,900	5,066	73.42
제주 본청	5,516	4,796	86.95

주: 1. 배분액합계(A)는 실제 배분액 기준으로 '25년 말 기준 미배분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대전 중구,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경남 통영시)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성과 지표 및 목표

[부록 표 14] 광역지원계정 성과관리 현황

구분	성과 관리 방식	성과 관리 대상 사업	성과지표
부산	개별 사업 성과관리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 2.0	위성센터 구축 및 운영 여부 지역프로그램운영참여자수 기업홍보및얼라이언스추진횟수 참여기업및인력수등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365 열린시간제 보육 사업	주말·공휴일 보육 아동 충족률 부모대상만족도조사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LEVEL UP) 사업	참여도 확산
		빈집드림플러스 사업	진행 상황
대구	개별 사업 성과관리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 및 화본마을 재생	시설 활용률과 프로그램 만족도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대구시, 지역대학, 청년단체, 지역기업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내용 조정 및 추가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
		커넥티드 의료헬스 어울림 행복공간 조성 프로젝트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 및 육성(경제 활력)
		서구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지원	민간 위탁기관이 사업 기획, 실행, 성과점검
		인구감소 위기대응 센터 운영	통합 운영관리 및 성과분석
인천	개별 사업 성과관리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적기 추진
		강화옹진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수(%) 이용자만족도(%)
		강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창업 10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옹진군)	지원대상 수(개소, 누적) 사업대상자만족도조사
광주	성과지표 설정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지원 청년인원 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드림청년·드림터 만족도
대전	개별 사업 성과관리	꿈틀대덕! 숲마루 조성	사전 행정절차 진척률 예산집행률 사업공정률등
		중구 어르신 문화즐김공간 조성	예산 집행률 사업공정률

구분	성과 관리 방식	성과 관리 대상 사업	성과지표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예산 집행률 사업공정률
경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초성리역 폐역사 복합공간플랫폼 조성(연천)	목표설정→이행관리→성과평가 →환류 및 개선 (예산집행률및계획대비이행률,문제발생시대응및보완조치마련,정성·정량성과분석,미흡사항보완·조정등)
강원	개별 사업 성과관리	기초지자체 사업	예산 집행률 전문기업유치 입주기업만족도
충북	개별 사업 성과관리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참여자수, 만족도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 지원	사전기획, 원료 선정 보고서 건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청년농 육성(지원실적), 소멸지역 정착률(주민등본)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귀농귀촌 거주 만족도 조사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방문객수, 방문객 만족도
		초강천 빙벽장 야간경관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만족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창업공간 조성 공정률, 방문객수
		체류형 마을 스테이 온정 조성사업	귀촌가구 유치수, 부대시설 이용률, 주거환경 만족도
		단양 이음터 조성사업	단지조성 공정률
충남	개별 사업 성과관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예산집행률 사업공정률 운영기준수립여부
		지역활력타운 조성(탁구유학 활력거점 조성)	연간 유소년 탁구 캠프 수 연간생활인구수 유소년탁구캠프참여자만족도 지역스포츠도시이미지제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예산 집행률 사업공정률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설치·운영	방문자수 전시및체험만족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
		충남귀어플러스센터 건립	기획설계 추진율 타당성조사

구분	성과 관리 방식	성과 관리 대상 사업	성과지표
			대안검토의충실도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Y:LOCAL)	청년창업 네트워크 형성수 예비·초기청년창업지원자
		청년 한옥 플랫폼 '공주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	연도말 기준 공정률/전체공정률 x 100%
		김 산지가공 집적화센터 및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김산지가공 집적화센터 건립 창업인큐베이팅시스템운영
전북	개별 사업 성과관리	지역활력타운 조성	분양률, 전입률, 만족도(설문 및 인터뷰) 등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 개소수 및 프로그램 참여율
		특장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교육 참여자 수, 교육 횟수, 이용자수, 만족도 조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산모 이용실적, 만족도 평가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생활인구 수, 만족도 조사 등
		반할주택 건립	사업 추진율, 입주율, 만족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선정 기업수, 고용주 및 근로자 만족도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수, 사업만족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생생마을 관리소 구축 갯수, 농촌 일자리 창출 명수 등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성 개소수, 이용자 만족도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조성 개소수
		청년, 농촌정책 발굴 지원단 사업	참여 청년수, 정책 제안수, 만족도 조사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개소수, 설계 추진 시군 수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공정률, 휴양림 이용실적, 설문조사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힐링타운 조성	방문객 수
		그린리턴,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정률, 청년농 선발인수, 사업만족도
		전북 청년 한달살이 지원사업	참여 시군 및 참여 인원수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참여시군 및 운영프로그램 갯수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유학생 모집인원, 사업 공정률		

구분	성과 관리 방식	성과 관리 대상 사업	성과지표
경북	개별 사업 성과관리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별 집행율, 단계,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상시 관리
경남	기초지자체 소관 사업 성과관리	저출생 극복	사업공정률, 이용자 만족도(준공후)
		청년유출 대응	로컬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육성 지원기업 수 수소산업인프라조성공정률 경남형청년마을지원개소수 로컬유학입주(이용)인원수 대학생활관조성공정률 청년주택조성공정률 커뮤니티시설운영만족도
		생활인구 확대	빈집 및 마을공동창고 활용 체류시설 조성 개소수
		인구정책추진체계	지방소멸대응정책지원 만족도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록 표 15] 인구감소지역별 주요 성과 지표 및 목표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부산	동구	정주인구	인구감소율 1%(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 1.31%)		
		생활인구	2022년 대비 5% 증가		
		관광생활인구	2022년 대비 5% 증가		
	서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사업추진 현황		
	영도구	거주인구	인구감소율 2% (최근10년 연평균 감소율 2.32%)		
		생활인구	2022년 대비 22% 증가(최근 3년 평균 방문인구 4% 증대)		
이슈인구		발생건수 0건('22년 4건) 감소율0%(현행연평균 0.78% 감소)			
대구	남구	시설 구축률	100%		
		생활인구	15,000명 이상		
		이용자 만족도	8점 이상/10점 만점		
		연간 거주자 수	6명 이상		
		사업 참여 학교 수	24개 교 이상		
	서구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 공정률	26년 60%, 27년 준공 목표		
		어울림 건강숲(체육시설) 조성률	26년 준공 목표		
		서구 일자리 지원 기업, 참여 인원 수	130명 참여, 20개 기업 지원 목표		
	군위군	타운하우스 주민 인구수	108명		
		연간 이용객 수	59.8만명		
연간 방문자 수		15,000명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2회			
인천	강화군	시설 공정률	100%		
		방문객 증가	1,818.4만명		
		원도심 축제 방문객 만족도	4.2 이상		
		정주인구 유입	70명		
	옹진군	만족도	NLL평화의 길 이용객 설문조사 "만족" 비율 2028년:70% 2029년:80% 2030년:80%		
		경기	가평군	사업 공정률(%)	100%
				관광지 수익률(%)	34%
이용자 만족도(점)	80점				
청년 창업자 수(명)	5명				
청년기업 및 청년취업자 수(명)	10명				
연천군	사업 공정률	('26년) 30%, ('27년) 100%(준공)			
	프로그램사업 참여 청년수(명)	('26년) 100명, ('27년) 100명, ('28년) 100명			
강	태백시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최종) 분양계약 기준 100% 달성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지역 삼척시	입주기업 유치	(최종) 기업 유치 10개소 달성
	고용창출	(최종) 230명 신규 고용 달성
	입주기업 만족도	(최종) 기업 만족도 90% 달성
	인구유입 증가	(최종) 190명 인구 유입
	입주자 만족도	(최종) 설문조사 만족도 85% 달성
	공사 진행률(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최종) 100%
	기업 유치 건수	(최종) 15개
	입주기업 만족도	(최종) 80%
	Open-Lab 장비구축	(최종) 18건
	공동활용 장비가동율	(최종) 100%
	지식재산권	(최종) 8건
	기업지원	(최종) 8건
	신규고용인원	(최종) 8명
	입주기업 만족도	(최종) 80%
	전문인력양성 교육참여 인원	(최종) 146명
	장비 신규 구축 수량	(최종) 3
	전용공간 확보율	(최종) 63%
	네트워크 활동 건수	(최종) 6건
	공정률(삼척번개시장 관광지 재생)	(최종) 100%
	상인 입주율	(최종) 100%
	생활인구 증가	(최종) 2,000명
	이용자 만족도	(최종) 3.5점
	테마파크 조성 공정률	(최종) 100%
	숙박시설 건립 공정률	(최종) 100%
	숙박동 이용자수	(최종) 2,000명
	치유프로그램 참가자 수	(최종) 160명
	문화축제 참가자 수	(최종) 2,000명
	이용자 만족도	(최종) 3.5점
	정라문화예술공간조성 공정률	(최종) 100%
	관광 활성화(생활인구)	(최종) 2,000명
	지역문화 활성화 행사 개최 수	(최종) 2회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최종) 120명
	관광활성화 정책기여도	(최종) 50%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기여도	(최종) 50%
	스마트물류(위치·안전) 공인시험	(최종) 4대
	AI 예지보전(칠러·압축기) 고장건수	(최종) 15건 이하
	삼척시 관내 기업유치	(최종) 1개
	실무지식 교육 참가자수	(최종) 30명
	사업역량강화 교육 참가자수	(최종) 30명
	교육 참가자 만족도	(최종) 우수 이상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수	(최종) 90명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홍천군	대상자 만족도	(최종) 긍정평가 70% 이상
	장비활용률	(최종) 80%
	기업유치	(최종) 15개
	행복주택 입주율	(최종) 100%
	식품참여기업 만족도	(최종) 85%
	입주자 만족도	(최종) 85%
	기업만족도	(최종) 85%
횡성군	횡성 베이스볼파크 방문자수 증가	(최종) 10,000명
	생활인구 수 증가	(최종) 10,000명
	걷기대회 참여자수	(최종) 5,000명
	방문객수	(최종) 15,000명
	지역 소비액	(최종) 3억
	생산가능인구 수 증가	(최종) 500명
	모빌리티 관련 업종 종사자수 증가	(최종) 200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최종) 20개소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최종) 80점 이상
	참여 수강생 수	(최종) 180명
	참여자 만족도	(최종) 80점 이상
	청일면 농촌유학생 증가	(최종) 10명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수 증가	(최종) 15명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수	(최종) 1,500명
	참여자 종합만족도	(최종) 4점 이상(5점기준)
	한우리' 참여 가족수	(최종) 16가족
	횡성유학 가족수	(최종) 7가족
영월군	청년 순 이동률(%)	-4
	유휴시설 및 빈집개선(개소)	3
	로컬창업 사업체(개소)	10
	창업 지속률(%)	100%
	생활인구 유입(백만명)	260
	재방문율(%)	28
	일자리 창출(명)*	41
	유료관광객 수(만명)*	13.8
	합계출산율 상승(%)	0.89
	청년 순 이동률(%)	-4
외국인근로자 지원	40명	
평창군	공정률	60%
	인구변화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연간 100명 증가 '26년도귀농·귀촌인구순유입20%증가
	산악관광 생활인구	5만명/년+일자리 창출 20명/년
정선군 (우수)	정주인구 증가	21명
	일자리 창출	4명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충북		이용객 수 증가	2.50%
		의료서비스 만족도	70점
		교육생 수 증가 (전년대비)	5% 증
		교육만족도	75점
	철원군	공정률	(최종) 100%
		일자리창출	(최종) 34
		만족도	(최종) 80
	화천군	공정률	(최종) 100%
		임대율	(최종) 100%
		관내 산모 이용률	(최종) 75%
		이용 산모 만족도	(최종) 95%
	양구군	생활인구	(최종) 30,000
		기업유치	(최종) 20개사
	고성군	① 주택건립 공사 공정률	100%
		② 입주율	80%
		③ 생활인구 유입수	320명
		④ 주민 정주여건 만족도	80점
		② 레지던시/체류예술가 수	20명
		⑤ 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 매출 성장률	3%
	양양군	사업지구 조성률	75%
		센터 이용객 만족도	96%
		시설 이용자 수	2,766명
	제천시	주택단지 분양율	20명
		스마트팜 분양율	10명
귀농귀촌 거주 만족도		70점	
입주가구		6가구	
농촌유학 참가학생		6명	
프로그램 참가자수		50명	
프로그램 이수율		80%	
이주 재외동포		20명	
지역내 취업		10명	
재외동포 거주 만족도		70점	
방문객		90만명	
방문객 만족도		4.5	
방문객		110만명	
보은군		사업별 정량적 인구 성과목표 설정	26년부터 생활인구 연 20,000명 증가
옥천군	종합평가지수	인구유입지표(40%) + 경제활성화(30%) + 주민체감도(30%)로 구성	
영동군	산업단지 분양률	사업 4년차(2029년) 90%	
	앵커기업 유치	사업 4년차(2029년) 2개소	
	고용창출	사업 4년차(2029년) 94명	
	입주기업 만족도	사업 4년차(2029년) 90점/100점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충남	과산군	일라이트 표준화 시스템구축률	사업 2년차(2028년) 100%
		일라이트 표준화 연구개발 진행도	사업 4년차(2029년) 5개
		스마트팜 입주자 수	12명
		입주자 자립도	사업 4년차(2029년) 100%
		영동군 관광객 수	사업 3년차(2028년) 130만명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방문객 이용만족도	사업 3년차(2028년) 100%
		영동군 신규 근로자 관내 정착률	사업 3년차(2028년) 80%
		유원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업지원 학생수	사업 3년차(2028년) 45명
		신규 근로자 정착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사업 3년차(2028년) 80%
		유원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업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사업 3년차(2028년) 80%
	과산군	사업 공정률	30%
		사업예산 집행률	65%
		사업 정량목표	생활인구 35만, 프로그램 150회, 일자리 20명
		시설안전점검 및 운영 현황	점검 2회, 점검이행률 100%
단양군	사업별 정량적 인구 성과목표 설정	29년까지 전입인구수 72명, 생활인구 65만명	
충남	공주시	숙박 방문객 수	생활인구 증가('26년:82만명)
		야간 방문객 수	생활인구 증가('26년:652만명)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직전년도 인기관광지 순위	공주 금강수변 인지도 향상('29년:10위 이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방문만족도 향상('29년:3.5점 이상)
		공정률/전체공정률*100%(연도말 기준)	공주미식문화공간 공정률('26년:100%)
		창업인구수	청년 미식산업 (예비)창업인구('29년:13명)
		공정률/전체공정률*100%(연도말 기준)	공주알밤명품화센터 장비 구축율('26년:100%)
		알밤명인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밤산업 관련 취창업 연계('29년:40명)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알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29년:80점)
		공정률/전체공정률*100%(연도말 기준)	주말농장 공정률('26년:100%)
		전체 시설수/미임대시설수*100%(임대계약 후 기준)	주말농장 공실률('26년:0%)
		임대계약자 집계	주말농장 분양자 수('26년:12명)
		방문자 만족도 설문조사	체류만족도('26년:80점)
	숙박 방문객 수	생활인구 증가('26년:82만명)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보령시	야간 방문객 수(웅진,중학,금학,옥룡,신관 일대 방문자)	생활인구 증가('26년:652만명)
	생산량	연간 수소 생산량 약 180톤 확보를 통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공정률	공원 2개소 공사 완공
	교육 참여자 수	청년센터 거점으로 체계적인 창업지원 플랫폼 제공
논산시	공정률	청년센터 공사 완공
	목표조성 개소 / 목표	수상광장 및 계류장 설치, 플로팅 정원(수상정원) 설치
	분석결과 통보 건수, 만족도	시료분석 건수 12,000건, 분석및생산서비스만족도80점이상
	공정율 이용자만족도	어린이 스포츠시설 설치 기간 내 준공, 만족도80%
	프로그램 등록 인원, 이용자만족도	연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800명, 만족도80%이상
	참여 인원, 이용자만족도	교육 참여자 수 100명, 만족도80%이상
금산군	참여자 수, 참여자만족도	사업 참여자 수 30,000명, 만족도80%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소 수	최종 88호 공급
	정주만족도	정주 만족도 최종 7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생활인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최종 7.5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청년정착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최종 7.5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최종 8.5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폐교 방지 및 교육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최종 7.5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부여군	체류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최종 7.5점을 목표로 점진적 증진
	시설 조성 진척율(%)	0.2
	참여자 수	320명
서천군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80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달성률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계획 프로그램 대비 실제 운영 달성률 100% 이상 달성
	실시설계 완료 및 집행률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발주 및 착공(2026년 기금 집행률 100%달성)
	공사 착공 및 집행률	2026년 4월내 공사착공및 연간계획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청양군		대비 기금집행률 100%달성	
	사업 공정률	유부도 해상교통수단 계류시설(도교및 부잔교) 조성사업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유소년 탁구 캠프 수 •연간생활인구수 •유소년탁구캠프참여자가만족도 •지역스포츠도시이미지제고 	스포츠특화 생활거점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모델링 완료 주택의 실입주자 모집 •빈집소유자와사업참여대상만족도 조사실시결과90%이상확보 	빈집정비 활성화 및 주거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학습콘텐츠 누적 이용자 수 •신규콘텐츠개발건수 •이용자만족도90%이상 •교육효과체감비율80%이상 	초중고생 전용 온라인 학습콘텐츠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창업실험시제품개발 •비즈니스모델컨설팅 •청춘거리창업점포개설등 	청년 창업 (체험)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례보증 용자지원 규모 •특례보증용자지원받은중소기업만족도90점이상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추진정도(전체공정률)	스마트팜조성	
	월이용자수	청년스마트빌리지 활성화	
	만족도조사	청년만족도 증대	
	활동가양성인원	마을활동가 양성	
	조사마을파악	마을현황알기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횟수	공동체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이행 횟수	지역청년네트워크 구축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예산군	관광객통계	관광객 증대	
	설문조사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통계	관광객 증대	
	설문조사	관광객 만족도	
	공정률	설계 및 착공 공정률 30%	
	공정률, 이용자 만족도	연도내 준공 및 시험 운영, 이용자 만족도	
	고용인원수, 이용자 만족도	고용인원수, 세탁처리량 100,000kg, 수혜자만족도	
	교육참여자수,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참여자수, 이용자 만족도, 보도자료 성과확산	
	교육참여자수,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대 3,500명이상, 이용자 만족도 향상 조사	
	전	정읍시	대회 유치 건수
			33회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부	프로그램 운영 건수(대회 포함)	6회	
		이용아동수	300명/일
		산모건강지표	84점
		연간이용객수	20,000명
	남원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명)	500명('27)
		지리산 활력타운 분양률(%)	100%('28)
		인재학당 이용 학생수(누적, 명)	180명('26)
		외국인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28)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60명('28)
	김제시	거점공간 조성률	0.5
		창업지원 건수	5건
		참여자수	60명
		사업공정률	1
		사업공정률	20개소
		창업 컨설팅 및 교육건수	100회
		기반시설 조성 부지조성률	0.5
		참여자수	60명
		자전거길 정비개소	2개소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50명
		시설조성 준공률(리모델링)	1
		시설조성 공정률	0.5
		이용자 수	1,000명
		지원사업 대상자	1명
	교육참여자 수	80명	
	진안군	사업진척도(%)	100%('27)
		투숙객 수(명)	2,000명/년('27)
		만족도(%)	80%('27)
		일자리창출	매년 50명
		전문가 양성	매년 20명
		정주인구 증가(명)	27명('28)
		생활인구 증가(명)	54명('28)
	무주군	청년농업인 유입	2026년 스마트팜 단지 입주자 5명
시설이용 만족도		스마트팜 단지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시설 만족도 75%	
도로이용량 측정		사업 완료후 동절기 및 대형차량 통행 가능 여부	
여름딸기 유통량 증대		고랭지 스마트팜 생산량 기준 통행차량 10% 점유	
장수군	접근성 향상 인식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만족도 75%	
	트레일레이스 참가자수	10000명	
	누적 레드푸드육성기업수	35개	
	입주 세대 수(누적)	138세대	
	대학생 참여자 수 (중복)	100명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임실군	인구감소율	전년대비 -1%	
	생활인구 증가자 수	약10만(전년대비 0.5%)	
순창군	(정량) 치유연수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성)프로그램만족도	(정량) 참여자 수 연간 1,000명 이상 (정성)프로그램만족도조사	
	(정량) 동행순창 협약체결건수 및 행사지원건수	(정량) 협약체결건수 연 50개소/ 행사지원 연 100회	
	(정량) 생활인구 증대 (정성)프로그램만족도	(정량) 전년대비 5% 순유입 확대 (정성)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90%이상	
	(정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량) 공공임대주택 40세대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1식	
	(정량) 기숙사 공급 (정성)입주자만족도	(정량) 기숙사 40호 공급 (정성)입주자만족도조사	
	(정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량) 공공임대주택 20호 공급	
	(정량) 거주시설 조성 (정성)유학생만족도	(정량) 거주시설 조성 공정률 100% (정성)유학생만족도조사	
	(정량) -임산부.유아프로그램(월데이)교실참 여자수증가 -걷기챌린지참여자수증가 (정성)프로그램및사업만족도	(정량) -임산부.유아프로그램(월데이)교실참여 자수10명이상 -걷기챌린지참여자수증가300명이상 (정성)프로그램및사업만족도 85% 이상	
	(정량) 돌봄아동수 증가 (정성)프로그램및사업만족도	(정량) 월별 평균 돌봄 아동수 25명 이상 (정성)프로그램및사업만족도90%이상	
	고창군	사업공정률	사업별 상이(공정률 100%/행정절차 10% 이상)
체험프로그램 및 키트 개발 건수		1식	
창업자 및 방문객 만족도		90% 이상	
참석자 출석율 및 만족도		출석율 70% 이상 및 만족도 90% 이상	
부안군	생활인구 증가(명)	5만명('28)	
	청년유입자 수(명)	60('28)	
	청년정착률(%)	30%('28)	
	빈집 활용 이주자 증대(명)	50명('29)	
	교육생 중 정주인구수(명)	21명('26)	
	정주인구(근로자수)(명)	10명('27)	
	공사 적기 추진율(중점)	75%	
전남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1순위)	전년대비 5%증가
		청년농업인 증가(2순위)	12명
		청소년공간 이용 청소년 비율 증가(3순위)	10%
		프로그램 참여자(4순위)	600명
		프로그램 참여자(5순위)	560명
		프로그램 참여자(6순위)	140명
	곡성군	생활인구 증대	300만명이상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일자리창출	100명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	30명 이상
	빈집 정비 활성화	80동
	귀농귀촌 증가	160명
구례군	정주인구유치	조성완료 후 1차년도 분양률 70, 2차년도 100% 달성
	상가매출액(반경200m)	26년 52,232만원 이후 매년 6.6% 향상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이수자 매년 10명 이상
	워킹 촌스데이 참여자 수 연 180명	준공 후 120명 이후 4년차까지 180명
	거주민원 증가	준공 후 70명 이후 4년차까지 110명
	수요자 만족도	준공 후 1차년도 긍정평가 70%이상
	이용자수	준공 후 1차년도 14,000명 이상
고흥군	스마트농수축산밸리 기반조성	스마트농수축산밸리 조성 사업비 집행률 90%
	생활인구 확대 유치	생활인구유치 3,000명
	고령인구 생활서비스 만족도 제고	고령인구 이동식 빨래차량 구입(2대) 사업비 집행률 100%
보성군	공사진척률(울포청년 활력온, 그린느린마을, 청년자람터)	50%
	공사진척률(생활체육 인프라, 문화꿈나래 공유거점 조성)	70%
	꼬막 생존율	100%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개소 수	5
	기업 맞춤형 기술교육 교육생 수	10
	재직자 직무 및 기술교육 교육생 수	20
빈집 활용 및 정비 개소 수	2	
화순군	(정량) 제2산업단지 입주 업체 수 (정성) 산업연관분석	(정량) 제2산업단지 조성('27년 이후)으로 20개 기업 유치, 누적 고용인원 1,270명 (정성)지역경제활력제고(사업비대비경 제적파급효과2.54배)
	(정량) 입주(예정)자 수 (정성) 입주자 만족도 조사	(정량) 만원임대주택 연간 100호 공급, 총 400호 공급 (정성)입주자주거만족도4.0점이상
	(정량) 어린이집 이용자 수 (정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어린이집 연간 이용자 수 900명 이상 (정성)서비스이용자만족도3.7점이상
	(정량) 여객 이용객 수, 연간 노선 개설 수 (정성) 이용객 만족도 조사	(정량) 여객 이용객 일 평균 500명, 노선 개설 10개 (정성)주민및이용객만족도4.0점이상
장흥군	관광객 연간 500만명 유입	청정자원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강진군	제2산단 기반시설 조성	(2028년까지) 제2산단 기반시설 준공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빈집리모델링 임대주택 조성(개소)	(2026년) 10개소 리모델링 완료	
	다산청림연수원 생활관 조성	(2028년까지) 생활관(64실) 준공	
	강진반값여행 지원(명)	(2026년) 참가자수 117,100명 달성	
해남군	두륜산 권역 관광인구(만명)	39	
	전지훈련인원(만명)	3.6	
	일자리 창출(명)	8	
	캠핑카 시티투어 이용팀수(명)	500	
영암군	영암 원플러스원 여행(1+1)·농촌체험·서울농장·두 지역 살아보기 방문객 집계	月 생활인구 50만명	
함평군	로컬푸드 크리에이터 양성	청년창업자 연 8명 이상	
	청년상회 미미라운지 방문객 집계	미미라운지 방문객 120,000명 이상 방문 (2025 나비축제 인원의 50%)	
영광군	시설 이용자 수(명)	100,000	
	센터 이용자 만족도(%)	90	
	케어 서비스 지원(건)	5,500	
	통합돌봄 인력채용 일자리 창출(명)	15	
	케어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95	
	농촌유학마을거주지 조성 가구 수(호)	6	
장성군	건축사업 진행율	스마트 APC & 지원센터 건립 1식	
	창업자 수, 방문자 수	신규창업자 발굴 6명 및 청년상가 방문인원 2000명	
	교육 운영횟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아카데미 23회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500명	
	사업 참여자 수	산전 산후 건강관리 참여자 50명	
	관광객 수, 사업참여자, 구축율	관광객 15,000명, 숙소지원 참여자 100명, 구축 1식	
완도군	치유시설 이용객수 증대	치유시설 방문객 9만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 블루푸드 창업패키지 지원 16개소	
	청년 블루푸드 창업패키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만족 비율 80% 이상	
	청년 정주만족도 제고	만족 80% 이상	
	생활인구 유입증대	완도-소안 선박 이용객 수 56만명	
진도군	생활인구 수	15%	
	정원학교 수료자수	50명	
신안군	스마트팜인프라구축	2026년 2ha 조성	
	임대어선 척수	2026년 10척 목표	
	사회적공동체 참여인원 확대	2026년 참여인원 480명	
전북	안동시	연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수	500명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종 / 연 100명 이상
		지역 일자리 창출 수	3명 이상
		방문객 만족도	95% 이상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영주시	20~34세청년인구감소율(%)	지역정주여건 강화(청년인구 유출 감소)
	시설이용만족도	농업환경개선을통한지역영농경쟁력강화
영천시	전국단위 군인자녀 학생 모집, 청소년 커뮤니티시설 조성완료	경쟁력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
	천원주택 입주율, K-U시티 조성사업 착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기업지원 특례보증 참여기업 만족도, 지자체 용자추천규모 달성률	관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부담 완화
상주시	교육, 돌봄 인프라 개선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지원사업 실효성	
	청년 문화조성 만족도	
문경시	스포츠형 생활인구 유입	260,000명
	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4,860,000명
	정주만족도	전출률 10%이하
의성군	일자리 창출	창업 고용 직업훈련인구 연간 400명 양성
	정주인구 유입	정주인구 연간 150명 증가
	(정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유입	정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115% 증가
청송군	진보 어울림타운 조성 공정률 및 전입인구수	'27년까지 공정률 100% 달성, 전입인구 수 110명
	K-U시티 역노화사업 공정률 및 체류인구	'27년까지 공정률 100% 달성, 지역재생프로젝트 체류자 100명
영양군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 방문 생활인구 유입 수	연간 5,000명 이상 유입
	Light Out 3불 안전캠프 프로그램 참가자 수	연간 1,200명 이상 유입
	정주인구 증가 수(영양맞춤 공공인대형 주거타운)	정주인구 80명 이상 증가
영덕군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	'29년까지 체류형 생활인구 50만명 유치
	일자리 창출	'29년까지 일자리 150개 창출
	청년인구 유입	'29년까지 청년인구 150명 유입
청도군	생활인구 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등록인구 확대 (4만명 유지목표) -웰니스관광시설조성으로생활인구늘리기 (생활인구평균'25년33만명→'26년40만명)
고령군	청년창업자 수	10
	입주자 만족도 제고	90%↑
	교류형 생활인구 발굴	100명
성주군	정주인구 확대	+70호
	청년농업인 유입	7명
	대도심 성주군 방문객 증감	48.50%
봉화군	연간 봉화-베트남교류 거점 사업 방문객수	50,000명('28)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울진군	봉화-영양 웰니스 문화교류캠프 참가자수	640명('27)	
	생활인구 확대	20,000명('27)	
	정주환경 개선	'29년까지 지역남부권 복합복지관 이용객수 15,400명, 정주만족도 85%이상	
	일자리	'29년까지 청년일자리지원프로그램 참여자 290명, 청년창업자수 7명	
	관광객 유입	'29년까지 왕피천공원 방문객 수 33만	
	울릉군	의료환경 개선 및 봉직의 유입	봉직의 인력 7명 유입, 관사 15세대 입주, 의료환경 만족도 향상
경남	아리랑 엑스포 브랜딩 활성화	3만 명 방문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시설 건립 및 준공	1개소	
	마을 공가재생 및 리모델링 건수	6개소 리모델링	
	시스템 개발 건수	1식	
	평생학습관 건립 및 준공	1개소	
	청년 생활인구 유입	10명	
	청년 창업 및 활동 지원건수	10건	
	센터 건립 및 준공	1개소	
	커뮤니티 캠퍼스 개교	사업준공 및 개교	
	라이프스타일 중심지 인지도 및 매력도 5% 향상	만족도 조사 긍정 80%	
	의령군	생활인구 증가자 수	숙박객 수 (연간 숙박인원 30,000명)
		일자리창출	채용인원 20명
		이용객 만족도	이용객 만족도 조사 80% 달성
	함안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률	2028년 준공 및 입주 후 1년 내 입주율 90% 이상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 공정률	2027년 준공 및 귀농귀촌정착인원 20명
		응급의료시설 개선 완료율	2026년 개선 완료율 100%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조성 완료율	2026년 조성 완료율 100%, 운영 1년 내 입주율 100%
		서비스 이용자 수	일평균 200명 이상
		E-7비자전환인원, TOPIK취득인원, 외국인주민정착지원서비스이용인원	E-7비자전환 30명, TOPIK취득 20명, 외국인주민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500명
	창녕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노인일자리 3,000명 창출
		평생학습관 건립 조성률	26년 준공 목표
		소아청소년 검진 진료체계 구축 공정률	26년 완료 목표
		EQ 성장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참여기관 개소수	체험 프로그램 19개소 운영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고성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만족도 3.7 이상
	돌봄센터 운영 참여인원	참여인원 140명 이상
	귀농·귀촌 인구	연 1,000명 확보
	정주인구	48,000명 유지
	월 평균 생활인구 증가	279,000명(2024) → 300,000명(2026)
남해군	육성단지 입주인구 유지	34명(2027) → 34명(2029)
	청년,이주민 주거 공급	67세대
	청년 창업공간 제공	창업공간, 스마트임대온실 이용 만족도 90점 이상
하동군	면단위 거점 복합 정주여건 개선	복지관 등 공용시설 이용 만족도 80점 이상
	행복의료원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요양보호사, 안내도우미, 의료인력 159명 일자리창출, 건강코디네이터 15명 양성('29년)
	청년가족 맞춤형주택 입주율 및 청년인구 순유출율 감소	입주율 100%(24세대), 연간, 전년도 대비 청년인구 순유출율 감소 20% 이상
	빈집 재생 사업 완료 및 입주자 수	'26년 8개소, 8세대 입주 완료
산청군	지역유입 체류인구 수	'29년까지 4,600명 달성
	사업 공정률	'26년 공정률 100%
	전지훈련 유치	'28년까지 전지훈련 1만명 유치
	센터 스포츠 고용 창출	'28년까지 시설 운영관리 일자리 10명 달성
	생활체육대회 유치수	'28년까지 생활체육대회 4회 유치
	이용자 수	'28년 생초축구센터 이용자 수 700명 달성
	스포츠클럽 운영	'28년까지 스포츠클럽 운영 30회 달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28년까지 숙박 및 음식업 매출 등 지역경제 효과 20억원 달성
	체류형 관광객 비중	'28년까지 체류형 관광객 30% 달성
	이용자 및 주민생활 만족도	'28년까지 시설만족도 3.6점 달성
	청소년 자유공간 이용자 수	'28년까지 연간 이용자 수 700명 달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28년까지 프로그램 만족도 90% 달성
	프로그램 참여자 수	'28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수 1,200명 달성
	교육만족도	'28년까지 교육만족도 3.8점 달성
	청소년 자율성 및 주도성 향상(참여율)	'28년까지 청소년 참여율 70%까지 달성
	청소년 자율성 및 주도성 향상(자기및참여자평가)	'28년까지 청소년 평가 긍정도 90% 달성
자전거 힐링코스 이용객	자전거 힐링코스 이용객 500명/일 확보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27년까지'26년이용객대비3%증가	
	유림독립기념관 리모델링 공정률	'27년까지 리모델링 완료	
	유림독립기념관 방문객	'28년까지 1만명 달성	
	웰니스광역시티투어운영	'28년까지 투어 이용객 수 400명 달성	
	이용객 만족도	28년까지 투어 이용객 만족도 80%유지	
	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	'28년 경호강따라 ON산청 교육·체험 프로그램 1개 운영	
	판매수익	'28년까지 청년몰 판매수익 450백만원 달성	
	시설 이용객 만족도	'28년까지 청년몰 이용객 만족도 90% 달성	
	관광 팝업홍보관 운영 횟수	관광 팝업홍보관 '28년까지 3회 운영 지속	
	방문객 수	'28년까지 관광 팝업홍보관 방문객 수 2만명 유지	
	농특산물 판매장 현장 판매액	28년까지 농특산물 판매장 현장 판매액 '28년까지 2천만원 유지	
	SNS 방문자 누적	'28년까지 SNS 방문자 전년대비 누적 20% 추가 달성	
	재방문 의향	'28년까지 재방문 의향 60% 이상 유지	
	웰니스 광역시티투어 (체류형관광상품)연계홍보누적	'28년까지 주요 언론 및 SNS 노출빈도 전년대비 50% 추가 달성	
	연간 빈집 수리 동수	'28년까지 빈집수리 수혜자 9건 유지	
	임차인 만족도	'28년까지 임차인 만족도 80% 달성	
	연간 주택 수리 동수	'28년까지 주택수리비 수혜자 40명 유지	
	대상자 만족도	'28년까지 주택수리비 수혜자 만족도 80% 달성	
	함양군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 31개 -노인복지회관노인일자리11개,함양팬클럽자립형청년일자리20개
		정주인구 유입	인구 유입 : 234명 -환대하우스등귀농귀촌인144명,농공단지근로자기숙사40명, 함양팬클럽청년인구50명
생활인구 확대		생활인구 확대 : 100,500명 -오르GO함양100,000명,함양팬클럽청년500명	
거창군	공정률, 가동률, 만족도	공정률(100%), 가동률 70%, 만족도 85점 이상	
	청년드림주택 입주자 수, 만족도	'30년까지 100호 공급, 입주자 만족도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85점 이상
		공정률, 프로그램 운영수, 만족도	공정률(100%), 프로그램운영(5회), 만족도 85점이상
		프로그램 참여자수, 만족도	참여자수 100명, 만족도 85점 이상
	합천군	사업공정률	26년 청년활력타운 공정률 10%
		합천fc클럽 선수 유입 및 학부모 전입	26년 선수 유입 30명, 학부모 40명
		운석충돌구 콘텐츠 개발	26년 운석충돌구 콘텐츠개발 용역공정률 100%
		치매예방군 삶의질 향상	26년 사전사후 설문조사, 우울척도검사, 인지검사 75점 달성
		치매예방 프로그램 만족도	26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80점 달성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록 표 16] 관심지역별 주요 성과 지표 및 목표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부산	중구	E/S 운영 이용객 수	110,000명
		이차보전 금리지원액	60백만원
	금정구	성장유망 기업/브랜드 발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수	패션봉제기업/브랜드 신규고용 창출, 매출액 창출, 창업가 육성
		창업지원사 개수, 판매홍보전 방문자수, 사업참여자 만족도	금정 청년 로컬 창업가 정착 지원
		발효스쿨 수료율, 글로벌가게 창업지원 개소수, 페스티벌방문자수, 참여자 만족도	남산로 유동인구 증대
		보건인력 양성교육 수료자수, 참여자 만족도	신중년 맞춤형 보건인력 양성교육 일자리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건수, 판로개척 행사수, 소통플랫폼 상담수, 참여자 만족도, 및 축제 개최, 참여자 만족도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현장중심 기업지원 추진
		빛 축제 개최, 방문인구 증가율	부산대학로 일원 방문인구 증가
		공원조성 공정율	땅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
		인천	동구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연도별 예산집행률 연도별사업공정률		
광주	동구	빈집 청년 창업자 수 성장지원창업기업수 청년창업자만족도	빈집 청년 창업자 수 20명(2년간), 성장지원창업기업수30개소(3년간), 청년창업자만족도80%
		골목 인프라 및 안전 시설물 개선, 공공의디자인및환경	골목 재생사업을 통한 디자인 및 환경정비 추진 등(2개동), 주민만족도90%,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정비, 주민의참여증대를통 한신뢰및소통, 공동체활성화	로컬브랜딩인식제고70%이상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원업체 유지 100%
		사업 참가자 및 창업팀 수	참가자 400명 모집, 창업팀 22팀 발굴, 창업 정주 매력도 제고 70% 이상(4년간)
		참가자 수 및 기업 유치	참가자 400명 모집, 기업 22개사 유치, 지역 정주 매력도 제고 70% 이상(4년간)
		관광객 수	관광객 11,000명 확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70% 이상(4년간)
		이용자 수	이용자 9,000명 유치, 지역 체류 매력도 제고 70% 이상(4년간)
		총 매출액	총 매출액 18억원 달성, 가맹사 체감 만족도 70% 이상(4년간)
		어린이집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강화(공동체 활성화)	학부모 봉사 참여 횟수 102회(2년간)
		지역 상권 연계 효과	사업과 연계하는 서점(점포) 수 10개소
		독서활동을 통한 인문에 대한 효능감 증진	참여자 효능감 90%(2년간)
지역 정주 여건 만족도 기여(양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화)	만족도 90%(2년간)		
대전	동구	참여기업 수	100개사
		구매 건수	100건
		참여기업 만족도	95%
	중구	인프라 구축(건물 착공 및 공사 진행률)	2026년 공사 진행률 60%이상 달성
	대덕구	정주만족도	(꿈틀라운지조성) 사업 진행률 40% *시설조성기간 공정률 확인
		일자리 창출	(TASTECH프로젝트) 2027년 스마트 공유창고 사용기업수 20개
		삶의질 향상도	(대덕 팜스테이 & 위케이션) 참여인원 400명, 참여능가 10가구, 재참여율 20%, MOU체결 3건, 만족도 80%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영장례지원사업) 지원건수 25건
경기	포천시	시설 이용자 수	2만 명 이상
		돌봄 서비스 이용률	80% 이상
	동두천	사업 공정률	100%

구분		주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2026년 혹은 최종)
	시	예산집행률	100%
강원	강릉시	청년층 정주여건조성(청년 층 입주율)	청년층 80세대(100명) 입주
		MICE 아카데미 인력 육성	30명
		여행플랫폼 모객 관광객	2,000명
	동해시	사업 공정률	100%
		청년창업 수요조사	2회/30명
	속초시	시설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률	계획수립 연 1회, 계획 대비 이행률 90% 이상
		운영평가 만족도	(최종) 90점 이상
	인제군	생활인구 유입	천만명 이상
		귀농귀촌 정착률	20% 이상
		유학생 수	130명 이상
전북	익산시	청년 창업가(기업) 육성	우수 청년 청년창업가(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25명 (관외자8명 이상)
		정책이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80% 이상
		참여자 수, 사업 확산 성과,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수 : 240명 이상 / 언론보도 건수 50건 이상 / 참여자 만족도 80% 이상
		참여자 수, 사업 확산 성과,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수 : 120명 이상 / 언론보도 건수 30건 이상 / 참여자 만족도 80% 이상
경북	경주시	관련 농산업 창업	2개 업체
		이용객 투숙율	80%↑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참여자 수	20명
	김천시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경남	통영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30명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 5개소
		시설 이용자 조사	시설 이용자 연 4만 명
	사천시	정주환경 개선	이용자 비율 1차년 50%, 2차년 76%, 3차년 77%, 4차년 80%
		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 조사 1차년 95점, 2차년 96점, 3차년 97점, 4차년 98점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발간일 2026년 7월 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261-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7-002301-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